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100058-10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디자인 심사기준

Guidelines for Design Examination

2025. 6. 16.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개정 연혁 (주요내용 포함)

구분	일 자 [시행일자]	공고번호	주요내용
제정	1981. 9. 1.	특허청 예규 제81-3호	
일부개정	1986. 8. 23.	특허청 예규 제86-1호	
일부개정	1991. 5. 2.	특허청 예규 제91-1호	
일부개정	1995. 8. 1.	특허청 예규 제10호	
일부개정	1998. 2. 25.	특허청 예규 제16호	
일부개정	1999. 7. 27.	특허청 예규 제18호	
전부개정	2001. 12. 5.	특허청 예규 제21호	
일부개정	2003. 7. 1.	특허청 예규 제25호	
일부개정	2004. 12. 30.	특허청 예규 제28호	
전부개정	2005. 6. 30.	특허청 예규 제33호	
일부개정	2007. 6. 28.	특허청 예규 제39호	
일부개정	2009. 5. 15. [2009. 5. 15.]	특허청 예규 제48호	

● ● 개정 연혁 (주요개정내용 포함)

구분	일 자 [시행일자]	공고번호	주요내용
일부개정	2009. 7. 1. [2009. 7. 1.]	특허청 예규 제50호	
일부개정	2009. 8. 24. [2009. 8. 24.]	특허청 예규 제52호	
일부개정	2009. 12. 31 [2010. 1. 1.]	특허청 예규 제5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 도면 허용, 도면제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원 모델링(Modelling)형태의 파일 제출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 반영 - 도면 작성방법 및 제출개수의 전면 자유화에 따른 후속 기준 마련 ○ 한 벌 물품 및 무심사 물품 확대 등 시행규칙 개정관련 후속 조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벌 물품 및 디자인무심사물품 확대에 따른 후속 기준 마련 ○ 물품명칭 고시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반영 ○ 기타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 개선
일부개정	2011. 4. 29. [2011. 5. 1.]	특허청 예규 제5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시각성 판단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육안 관찰에서 확대경 관찰이 통상적인 경우 시각성 인정 -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시에도 예외적으로 확대 관찰 허용 ○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 참고도를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른 후속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 정의 규정 및 심사기준 마련 ○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되는 도면(3D 모델링 도면)에 대한 심사기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 모델링 도면의 화상 표현방식 예시 및 도면 심사기준 정비 ○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요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업자가 합리적인 선의의 해석으로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경우로 봄 - 사진인 경우 물품의 배경 등을 포함한 도면의 판단기준 마련 ○ 구체적이고 다양한 심·판결례 및 사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물품의 중간 생략 도면의 표현, 투명한 부분에 대한 표현 및 부분디자인의 표현방법에 대한 사례 등 합리적인 판단기준 마련
일부개정	2011. 12. 30. [2012. 1. 1.]	특허청 예규 제6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방출원 방지를 위한 창작성 적용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대한 판단기준 예시 - 용이창작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및 사례 예시 - 공지디자인과 주지의 형상·모양 등이 결합한 경우에도 용이창작

구분	일 자 [시행일자]	공고번호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판단 기준 및 신규성 적용기준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유사판단을 위한 용도, 기능 등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 완성품과 부품 간의 신규성 적용기준 명확화 -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경우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 ○ 공공기관 표장에 대한 부등록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자기의 명칭이나 주된 마크(심벌) 이외의 표장을 출원하는 경우 등록 가능 ○ 도면 작성방법 및 외국문자 사용의 합리적 완화(안 제3조제3호하목,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호마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확대도의 확대한 부분에 대한 필수도면 표시 완화 - 디자인의 설명, 물품명칭 등에 보통명칭화되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외국문자 사용 완화 ○ 출원의 유형에 따른 등록요건별 적용례 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성, 확대된 선출원, 유사디자인, 선출원주의 적용례 도해
일부개정	2012. 8. 22. [2012. 8. 22.]	특허청 예규 제6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일괄 개정
전부개정	2013. 1. 1. [2013. 1. 1.]	특허청 예규 제69호	
일부개정	2013. 11. 27. [2013. 11. 27.]	특허청 예규 제7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이창작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형상과 문자로 이루어진 디자인(라벨, 스티커, 표딱지 등)에 있어 형상 문자부분이 결합된 전체로서 창작성이 없는 경우 용이창작의 판단기준 적용 ○ 1디자인 1출원 위반의 판단에 관한 세부기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움직임을 통해 변화하는 물품에 있어서 변화과정이 생략되거나 일정성 및 통일성이 없는 경우를 추가 - 복수디자인출원의 도면에서 하나의 일련번호에 2 이상의 도면을 도시한 경우 1디자인 1출원 위반으로 판단 ○ 화상디자인 출원에 관한 물품의 명칭 인정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디자인이 표시되는 부품의 명칭으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의 주체적 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지된 디자인의 공지주체가 여럿인 경우, 그 중 출원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규성상실예외주장 공지주체와 출원인의 동일성을 인정함 ○ 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심사보류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기본디자인이 무효심판이나 이의신청에 계류 중이고 유사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 유사디자인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보류

● ● 개정 연혁 (주요개정내용 포함)

구분	일 자 [시행일자]	공고번호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심사 신청인의 자격요건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심사 신청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판단근거 제시 ○ 등록여부결정서가 발송된 후, 송달되기 전까지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직권취소 가능하도록 보완 ○ 분할출원 가능한 사항 및 색채도면의 일부 착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디자인의 설명란 기재방법 보완 ○ 참고도면의 경우 도면의 작성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 사항 보완
전부개정	2014. 6. 27. [2014. 7. 1.]	특허청 예규 제7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 판단기준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창작성 인정에 관한 판단요건 개정 - 용이창작 판단에 있어 거래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심사관행 개선 ○ 관련디자인의 출원시기 제한 등에 관한 처리방법 정비 ○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요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출원의 일부와 유사한 후출원에 대하여 출원인동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 ○ 복수디자인 출원대상 완화 등 처리방법 정비 ○ 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요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성 상실 예외의 주장시기와 증명서류 제출시기 확대 -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없음 ○ 디자인 물품의 구분을 ‘로카르노 분류’에 따르고 물품류 오기재에 대하여 거절이유 통지 ○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특례 요건 적용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국내 출원과 다르게 적용해야하는 판단요건을 구분 - 국제등록공개일에 따른 기준일자 설정, 국제등록부의 효력 등을 명확히 함 ○ 디자인의 구체성 요건에 관한 판단기준 정비, 재심사 청구 인정기준 변경, 직권보정의 기준 및 절차 변경, 선출원 규정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보완 등 심사관행 개선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
일부개정	2015. 9. 30. [2015. 10. 1.]	특허청 예규 제8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리사가 아닌 자의 대리업무 금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리사가 아닌 자는 업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함 ○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는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되고 디자인이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인정함

구분	일 자 [시행일자]	공고번호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하여 2 이상의 물품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의 수가 많은 쪽의 물품류를 기재하고, 심사·일부심사대상 물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심사물품으로 함 ○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인정기준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물품이라도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거래되는 물품이라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판단하도록 예시 보완 - 등록받고자 하는 물품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마네킹’, ‘옷걸이’ 등이 함께 도시되는 것을 1디자인으로 인정함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의 요지변경 판단기준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의 경우 요지변경여부 판단에 있어 제1국 출원디자인을 참작하여 판단하도록 함 ○ 디자인 도면의 인정요건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도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면이 다른 도면과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는 하나의 도면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일부 도면의 제출을 생략하고 그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 란에 기재하도록 함 - 평면적인 물품의 앞면만을 제출하고 나머지 도면에 대하여 디자인의 설명 란에 생략하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뒷면 부분은 모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디자인 도면의 부가도면과 참고도면 구분에 대한 예시를 명확히 하고 구분에 따르지 않은 도면은 참고도면으로 판단하도록 함 - 도면대용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단면도를 선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시 동일출원인 판단시점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확대된 선출원을 적용하는 경우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지 여부는 등록여부결정시에 판단하도록 함 ○ 화상디자인의 용이창작 및 유사여부 판단기준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은 표시부 내에서 등록받고자 하는 실선 부분을 고려하되, 필요한 경우 파선 부분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화상디자인은 디자인의 개발 및 사용의 특성상 크기의 확대·축소, 위치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위치 또는 크기는 고정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유사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부등록사유 판단기준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국기’ 등이 포함 되더라도 국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구분	일 자 [시행일자]	공고번호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승낙 없이 저명한 타인의 얼굴을 포함하여 출원된 디자인의 경우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으로 판단하도록 함 ○ 형태가 변화하는 물품에 관한 용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리고 닫히는 등 변화 전후의 상태가 구분되는 디자인 및 일련의 변화과정을 통해 형태가 바뀌는 디자인 등을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용어를 정비함 - 물품의 표시부 내에서 아이콘 뿐 아니라 모양 등이 형태적 관련성과 변화의 일정성을 가지고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을 ‘동적화상디자인’으로 함 ○ 우선심사 처리절차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0호에 따라 출원인이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에 첨부된 실물사진 등과 출원디자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보완을 지시하도록 함
일부개정	2016. 12. 15. [2017. 1. 1.]	특허청 예규 제9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등록요건 판단기준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디자인의 신규성 적용 예외 시점(~6개월) 명확화 - 용이창작으로 거절시 구체적인 증거(인용참증)제시 강화 -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보완 -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동일인이 출원하는 경우의 취급 명확화 - 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 동일인의 중복 출원임이 명백하고, 심사관이 인지 가능한 경우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출원인의 창작의도를 고려해 전체가 아닌 각 부분으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능적 일체성을 인정하도록 1디자인 인정요건 완화 -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표준화된 규격의 개념 구체화 ○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상물, 입상물이라 하더라도 정형화 또는 고정화되어 그 집합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에는 물품으로 인정 - 띠지, 고정틀 등 부가적인 물품이 ‘케익’에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 1디자인으로 인정 - 도면의 보정에 있어 요지변경이 아닌 경우 추가 ○ 출원공개의 예외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추가
일부개정	2017. 12. 19. [2018. 1. 1.]	특허청 예규 제9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디자인의 창작상의 일체성 인정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상의 일체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1디자인 여부는 출원인의 창작의도를 고려하도록 함

구분	일 자 [시행일자]	공고번호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등록 요건의 적용대상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에 포함된 국가의 명칭은 부등록 요건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 - 부분디자인은 물품 전체의 형태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참고도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토록 함 ○ 부분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기준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디자인에 있어 실선부분이 동일하고 파선부분의 형상 및 모양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양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동일이 아닌 유사로 보도록 함 ○ 화상디자인 심사기준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디자인의 시각성에 대해 화상디자인의 특이성을 반영한 판단기준과 예시를 신설하고 물품명칭 및 1디자인 1출원 예시 보완 ○ 심사실무 반영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반복되는 물품의 구체성 요건 보완, 우선권 주장의 보정기간 구체화, 용이창작관련 과거에 없었던 디자인 판단기준 보완 및 예시 신설 등
일부개정	2018. 12. 21. [2019. 1. 1.]	특허청 예규 제10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환경 반영을 위한 디자인 등록 요건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면도, 절단부 단면도의 절단면 표시의 다양화, 부분디자인의 표현 방식 완화 - 한 벌의 물품의 물품류 기재 기준 명확화, 알기 쉬운 물품명칭 기재기준 마련 - 기재불비가 있는 우선권주장의 동일성 인정 기준 신설 - 모양선으로서의 파선에 대한 인정요건 완화 ○ 심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등록요건 판단기준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디자인 1출원 인정 범위 명확화 및 예시 보완 - 등록된 비밀디자인의 공시시점에 대한 기준 마련 - 물품 명칭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디자인의 설명에 대한 처리 - 도면의 표현방법을 달리한 디자인의 동일성 인정기준 ○ 글자체 디자인·식품디자인 심사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체 디자인) 언어별 구체성 요건 및 새로운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 마련 - (식품 디자인) 성립요건 명확화 및 등록요건의 구체화 ○ 화상디자인 심사 실무 반영 및 미비점 보완 및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디자인 심사기준 내 일반원칙의 중복규정 삭제 등 보완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물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기준 정비 - 화상디자인에 고유한 유사범위 및 판단방법에 관한 기준 정비
일부개정	2019. 11. 15. [2019. 11. 15.]	특허청 예규 제10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도면 통합(기본도면, 참고도면)에 따른 '부가도면' 용어 삭제 ○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 도면제출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글자를 16자로 하고 희망하는 특수기호의 추가 기재 방법 ○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도면심사 요건 완화 등

구분	일 자 [시행일자]	공고번호	주요내용
일부개정	2020. 2. 25. [2020. 3. 1.]	특허청 예규 제11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만으로 구성된 단어라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 ○ 합성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짜, 트럼프, 화투 등 구체적 예시 기재 ○ 저명한 상표·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거절사유 예시들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저명한 상표·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 ○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디자인등록이 지연되지 않도록 직권보정범위 확대 ○ 반복 디자인의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모양이 1회 도시되었다 하더라도 「디자인의 설명」란에 반복(단위모양의 결합 및 배열)상태를 기재하였고, 반복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
전부개정	2021. 10. 20. [2021. 10. 21.]	특허청 예규 제12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의 대상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 ○ 디자인의 물품성에 관하여 물품과 디자인의 불가분성 보완 ○ 물품의 요건규정 신설 ○ 한 별의 물품에 관한 부분디자인 인정 ○ 글자체디자인, 한 별의 물품, 화상디자인에 관한 성립요건 신설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창작자, 공동창작자, 승계인에 관한 규정 신설 ○ 진정한 창작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통지 및 증명서류 제출 요구 관련 규정 신설 ○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 신설 ○ 두께가 얇은 입체물품(포장용 파우치 등), 평면적인 물품(라벨 등)인 경우 도면제출과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방법 신설 ○ 도면 불일치 부분의 구체성 판단에 관한 규정 개선 ○ 전개도를 도면으로 제출한 경우 완성된 상태의 도면은 사용상태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개도를 기본도면으로 인정 ○ 부분디자인의 도면 요건 완화 ○ 도면의 제출형식 완화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의 공지시기 추정에 관한 규정 신설 ○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 ○ 창작비용이성의 판단 주체에 관한 규정 신설 ○ 창작수준의 판단에 관한 규정 신설 ○ 주지형상 등에 의한 창작비용이성 보완 ○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도면 대상 보완

구분	일 자 [시행일자]	공고번호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하는 관련디자인과의 선출원 판단에 관한 규정 신설 ○ 선출원 적용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 ○ 군복 및 군용장구와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부등록사유 신설 ○ 일부심사등록출원 물품 확대 ○ 도면의 요지변경에 관한 내용 보완 ○ 부분디자인의 요지변경에 관한 내용 보완 ○ 비밀디자인에 관한 심사기준 신설 ○ 부분디자인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동일성에 관한 규정 보완 ○ 우선권 증명서류의 도면 중 참고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우선권 인정에 관한 규정 개선 ○ 제1국의 일부도면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우선권 주장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관한 규정 보완 ○ 일부심사등록디자인권이 소멸될 경우 이의신청 결정에 관한 규정 신설 ○ 물품의 부분, 한 별의 물품의 부분, 화상디자인의 부분에 관한 정의규정 및 성립요건 신설 ○ 국제디자인사심사기준의 특례 신설 ○ 화상디자인에 관한 심사기준 신설
일부개정	2022. 12. 30. [2023. 1. 1.]	특허청 예규 제12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디자인 ‘정의 및 성립요건’ 판단부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기조작, 기능발휘 요건 완화 ○ ‘물품류 구분 및 명칭’ 부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저작물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인 명칭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 ○ ‘유사성’, ‘창작성’ 판단부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디자인vs물품디자인, 화상디자인vs화면디자인 간 신규성, 창작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하여 他물품 디자인과의 법리적 정합성 일치 ○ ‘화상에 관한 디자인’으로 장(章)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 재배치
일부개정	2023. 12. 21. [2023. 12. 21.]	특허청 예규 제13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관련 절차변경내용 구체화 ○ 부등록사유 판단 기준 보완 및 구체화 ○ 우선권주장 관련 절차 변경내용 구체화 ○ 직권재심사 관련 절차 신설 ○ 협의/선택 불성립으로 인한 공개 절차 명확화 ○ 한 별 물품의 디자인 심사기준 사례 구체화 ○ 디자인의 구체성 결여 판단기준 구체화 ○ 보정 관련 규정 보완 및 구체화 ○ 우선심사 관련 심사절차 보완

●● 개정 연혁 (주요개정내용 포함)

구분	일 자 [시행일자]	공고번호	주요내용
일부개정	2025.6.16. [2025.6.16.]	특허청 예규 제14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부분디자인 간 유사판단 기준 완화 ○ 자동차의 내부디자인의 조합에 대한 기준 마련 ○ 디자인의 기재설명 간소화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관련 불인정 통지 ○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및 국제디자인심사기준 특례의 정비

CONTENTS

목 차



제 1 부

총 칙	1
제1장 목 적	3
1. 심사기준의 목적	3
2. 디자인심사의 기본원칙	3
제2장 디자인의 정의 및 성립요건	4
1. 디자인의 정의	5
2. 디자인의 성립요건	6
제3장 디자인등록출원인	20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1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	23
3. 무권리자(無權利者)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24
4. 무권리자(無權利者)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25
제4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26
1. 권리능력	28
2. 행위능력	30
제5장 대리인	32
1. 대리인의 구분 및 대리권의 범위	34
2. 대리인의 선임절차	36
제6장 기 간	37
1. 기간의 구분	38
2. 기간의 계산방법	39

CONTENTS 목 차

3. 기간의 연장 및 단축	40
4. 적용사례	41
제7장 절차의 무효, 보완 및 보정	42
1. 절차의 무효	44
2. 절차의 보완	45
3. 절차의 보정	46
제8장 절차의 중단 및 중지	47
1. 절차의 중단	49
2. 절차의 중지	49
3. 절차의 중단 및 중지의 효과	49
제9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50
1.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53
2. 서류의 송달	54
제10장 서류의 반려	56
1. 반려의 대상이 되는 서류	59
2. 서류의 반려절차	60

제 2 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61

제1장 공업상 이용가능성	63
1. 취지	64
2.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요건	64



제2장 신규성	83
1. 취지	84
2. 적용요건	84
3. 판단방법	88
4. 적용사례	89
제3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91
1. 취지	92
2. 적용요건	93
3. 증명서류 제출	96
4.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불인정	97
5. 인정의 효과	97
6. 적용사례	98
제4장 창작비용이성	100
1. 취지	102
2. 적용요건	102
3.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유형	104
4. 판단방법	112
5. 증거의 제시	115
6. 적용사례	116
제5장 확대된 선출원	117
1. 취지	118
2. 적용요건	118
3.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형	119

CONTENTS

목 차

4. 판단방법	121
5. 적용사례	124
제6장 관련디자인	125
1. 취지	127
2. 관련디자인의 정의	127
3. 적용요건	129
4. 판단방법	130
5. 적용사례	132
제7장 선출원	133
1. 취지	134
2. 적용요건	134
3. 적용유형 및 선출원의 지위	135
4. 판단방법	137
5. 적용사례	141
제8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42
1. 취지	143
2. 적용요건	143
3. 판단시점	150
4. 판단방법	150
제9장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152
1. 취지	153
2. 디자인 물품	153
3. 물품의 명칭 기재방법	155



제10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159
1. 취지	160
2. 적용요건	160
3. 판단방법	161
4.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의 예외	170

제 3 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75

제1장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177
1. 취지	177
2. 판단기준	177
3. 판단방법	178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80
1. 취지	182
2. 판단대상	182
3. 판단방법	183

제 4 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191

제1장 출원의 보정	193
1. 취지	195
2. 보정의 주체	195

CONTENTS 목 차

3. 보정의 대상	195
4. 보정의 범위	196
5. 보정의 시기	196
6. 보정의 방법	196
7. 보정의 효과	197
제2장 직권보정 및 직권재심사	198
1. 취지	199
2. 직권보정 및 직권재심사의 시기	199
3. 직권보정 및 직권재심사의 대상	200
4. 직권보정 및 직권재심사의 절차	201
제3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203
1. 취지	205
2. 요지변경의 판단기준	205
3. 요지변경의 판단방법	206
4. 부분디자인의 요지변경	210
5. 보정의 각하	212
제4장 출원의 분할	213
1. 취지	214
2. 분할출원의 요건	215
3. 분할출원의 시기	216
4. 분할출원의 방법	216
5. 분할출원의 불인정	218
6. 분할출원의 효과	218



제5장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219
1. 취지	219
2.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요건	220
3.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시기	220
4.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방법	221
5. 정당한 권리자 출원 소급효의 불인정	221
6.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효과	221

제 5 부

심사일반

223

제1장 디자인등록출원 서류	225
1. 취지	230
2. 출원서의 기재사항	230
3. 디자인 도면	231
4. 출원서 및 도면의 지위	232
제2장 심사절차	234
1. 심사절차도	239
2. 심사의 일반원칙	240
3. 출원디자인 인정	240
4. 선행디자인 조사	241
5. 등록요건 검토	243
6. 거절이유 통지	243
7. 의견서 및 보정서 검토	244

CONTENTS 목 차

8. 등록여부 결정	244
9. 위법한 처분의 직권취소	245
10. 국제등록부의 경정이 통지된 경우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처리방법	246
제3장 비밀디자인	247
1. 취지	251
2. 비밀디자인 청구의 요건	252
3. 비밀디자인의 열람	253
4. 비밀디자인 청구의 효과	253
5. 비밀디자인 관련 심사 시 참고사항	254
제4장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57
1. 취지	262
2. 우선권주장의 요건	262
3. 우선권 주장의 기간 및 절차	263
4. 우선권 주장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의 동일성 판단	266
5.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271
6.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 절차	271
7. 우선권 주장 인정의 효과	272
제5장 출원공개	273
1. 취지	275
2. 출원공개 구분	275
3. 출원공개 승인	276
4. 공개디자인공보	276



5. 출원공개예의 예외	276
6. 출원공개의 효과	276
제6장 정보제공	278
1. 취지	279
2. 정보제공의 요건	280
3. 정보가 제공된 출원에 대한 심사	280
4.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 통보	281
제7장 우선심사	282
1. 취지	289
2. 우선심사의 요건	289
3. 우선심사 신청의 보정 및 보완	291
4. 우선심사 신청의 각하	292
5. 우선심사 결정	293
6. 우선심사 결정 후의 심사 착수 기한	293
제8장 재심사	294
1. 취지	295
2. 재심사 청구 대상	295
3. 청구절차 및 효과	296
4. 재심사 신청된 출원의 심사	297
제9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298
1. 취지	304
2. 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	304
3. 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304

CONTENTS 목 차

제10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308
1. 취지	310
2. 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310
3. 이의신청의 심사 절차	312
4. 이의신청의 효과	314
제11장 부분디자인	315
1. 취지	317
2. 정의	317
3. 성립요건	318
4. 공업상 이용가능성	321
5. 신규성	323
6. 창작비용이성	324
7. 확대된 선출원	325
8. 선출원	326
9.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326
10.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327
11. 유사여부 판단	330
12. 요지변경	330
제12장 한 벌 물품의 디자인	333
1. 취지	336
2. 성립요건	337
3. 공업상 이용가능성	339
4. 신규성	339
5. 확대된 선출원	340
6. 선출원	341



7. 물품의 구분	341
8. 유사여부 판단	342
제13장 국제디자인심사기준의 특례	343
1. 개요	345
2. 연혁 및 주요 개념	345
3. 출원의 주요 절차	350
4. 등록요건 관련 심사특례	355

제 6 부

특유물품심사

359

제1장 화상에 관한 디자인	361
I. 화상디자인	
1. 정의 및 성립요건	366
2.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	371
3. 유사여부 판단	373
4. 창작비용이성	376
5. 물품류 구분 및 명칭	380
6.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381
7.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384
II.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畫面)디자인	
1. 정의 및 성립요건	387
2. 공업상 이용가능성	389
3. 유사여부 판단	393

CONTENTS 목 차

4. 창작비용이성	395
5. 대상이 되는 물품	403
6.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	405
7.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408
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409
제2장 글자체 디자인의 심사	412
1. 취지	419
2. 정의 및 성립요건	419
3. 물품류 구분 및 물품 명칭 기재방법	420
4.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	421
5. 공업상 이용가능성	422
6. 유사여부 판단	425
7. 요지변경 판단	426
제3장 식품디자인의 심사	428
1. 취지	429
2. 정의 및 성립요건	429
3. 물품류 구분 및 명칭	430
4.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430
5.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식품디자인의 요건	432
6. 창작비용이성	436
7. 유사여부 판단	438



Design

디자인심사기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제 1 부

총 칙



제1장 목적	3
제2장 디자인의 정의 및 성립요건	4
제3장 디자인등록출원인	20
제4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26
제5장 대리인	32
제6장 기 간	37
제7장 절차의 무효, 보완 및 보정	42
제8장 절차의 중단 및 중지	47
제9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50
제10장 서류의 반려	56

제1장

목적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심사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디자인심사에 있어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조약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데에 지침이 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적법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 디자인심사의 기본원칙

- 2.1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이나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획일적·형식적 심사를 지양하고 개별·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적법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2.2 심사관은 디자인보호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 및 직무상 양심을 바탕으로 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 2.3 심사관은 출원인 및 대리인과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기울여 효율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 2.4 심사관은 디자인에 관한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제2장

디자인의 정의 및 성립요건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 2021. 10. 21.] 제2조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 등록출원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9. 9. 24.>
-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 9. 24., 2020. 8. 28.>
-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별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1 디자인의 정의

- 1.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1.2 디자인의 대상은 물품, 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이다.
- 1.2.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 함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말한다.

* 대법원 98후2900(2001. 4. 27.선고), 2003후274(2004. 7. 9. 선고)
판결 참조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1.2.2 “물품의 부분”이란 물품의 전체 중에 일정한 범위를 점하는 부분의 형태로서 당해 물품에 있어서 다른 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1.2.3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별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4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화상 관련 디자인의 정의는 제6부 특유물품심사 제1장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참조한다.

1.3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본문(공업상 이용가능성)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디자인의 성립요건

2.1 일반적 성립요건

디자인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1.1 디자인의 물품성

(1)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모티브만으로는 부족하고, 물품에 창작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물품의 요건

(가)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독립적 거래대상이 되어야 하고, 부품인 경우에도 독립된 교환가치 및 호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3후274(2004. 7. 9.선고) 판결 참조**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 “온열치료기용 롤러”가 롤러형 온구기에만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독립성을 갖춘 물품으로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하여,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되어 거래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거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디자인 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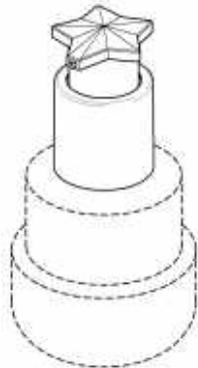
[사시도]

❖ 예 1) 화장품 포장용기 토출부, 양말의 뒷굽, 찻잔의 손잡이 등

[주의]

☞ 다만,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일지라도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는 등록 가능하다.

등록번호 30-0745139



[사시도]

[물품명칭] 화장품 포장용기
 [디자인설명] 1. 본 디자인은 에멀전 타입의 내용물을 담는 화장품 포장용기임

 10. 본 디자인은 부분디자인으로서 실선으로 도시한 누름부(뚜껑 및 토출부)가 디자인등록 대상임

※ 설명의 편의상 이외의 도면은 생략함

❖ 예 2) 합성물의 구성각편. “합성물”이란 장기짜, 트럼프, 화투, 완성형태가 단일한 조립완구 등과 같이 수 개의 구성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물품성(독립적 거래대상)이 결여되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p>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각편</p>	<p>물품성이 인정되는 합성물</p>
	 <p data-bbox="1003 866 1090 895">[표면도]</p> <p data-bbox="919 921 1176 950">등록번호 30-0337418</p>

[주의]

☞ 다만,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구성 각편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물품성(독립적 거래대상)을 갖춘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등록번호 30-0917478



[사시도]

[물품명칭] 조립완구용블록
[디자인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다른 완구와 결합되어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이하생략)

☞ 또한,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합성물의 부분디자인으로는 등록 가능하다.

(예) 장기짜, 트럼프 등을 물품명으로 하는 개별 장기짜, 개별 트럼프 카드 등을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유체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발광현상에 의하여 특정 형태가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제6부 특유물품심사 제1장 화상에 관한 디자인 참조)

✕ 예) 기체, 액체, 전기, 빛, 열, 음향 및 전파 등은 유체물이 아니다.



“불꽃”



“액상음식”

(다)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일정한 정형적인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예 1) 시멘트, 설탕 등 분상물(粉狀物) 또는 입상물(粒狀物)의 집합으로 된 것



“분상·입상 음식”

[주의]

☞ 다만, 각설탕, 고형시멘트 등과 같이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은 그 집합단위로서 그 형태를 갖춘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등록번호 30-0665419



[사시도]

[물품명칭] 고형화장분
[디자인설명] 1. 재질은 화장용 고형분재임. 2. 본 디자인 물품은 색조화장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고형화장분에 관한 것임. (이하생략)

등록번호 30-0563004



[사시도]

[물품명칭] 각설탕

[디자인설명] 1. 재질은 설탕임. 2. 본 디자인은 몸체 저면의 수직방향으로 결합홈이 형성되어 이 결합홈을 통해 각설탕을 음료용 컵이나 커피잔의 상단에 고정시킨 상태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하생략)

✕ 예 2)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모양과 같이 물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디자인으로서 그 물품 자체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



판매대에 진열하기 위하여 변형한 “스카프”

(라)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 동산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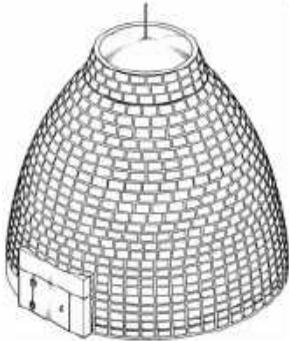
✕ 예) 물품의 재질, 구조 및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으로서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양산되고 운반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

* 특허법원 2007허5260(2007. 10. 4. 선고)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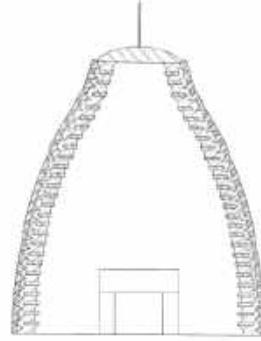
대법원 2007후4311(2008. 2. 14. 선고)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한증막의 형상과 모양을 결합한 것으로서, 디자인등록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의하면 그 재질은 석재와 황토이고, 내부층은 축열 및 원적외선 방사성이 우수한 석재와 황토를 적층하며, 외부층은 화강암으로 적층 구성하여, 내부 공간이 장시간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원적외선으로 한증효과가 높다고 되어 있는 사실, 한증막은 일반적으로 담을 둘러막아 굴처럼 만들고 밑에서 불을 때어 한증을

하기 위하여 갖춘 시설을 일컫는 것인바, 별지 도면에 표현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의 형상과 모양을 보면, 외부층에는 축대를 쌓는 돌과 유사한 화강암을 27단의 높이로 종(鐘)과 같이 적층하되 그 하부 양측의 대향된 위치에 화강암 4단의 높이로 2개의 출입문을 설치하며, 내부층에는 황토와 석판을 교대로 적층하되 전체적으로 상당한 두께의 벽체를 형성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은 그 재질과 구조 및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사시도]



[단면도]

[주의]

☞ 다만, 최종적으로 토지에 정착하여 부동산이 되는 것이라도 공업적으로 양산되고 운반 가능하며 유통과정에서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된다.(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법초소, 승차대, 교량,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

등록번호 30-0877851



[사시도]

[물품명칭] 방갈로

[디자인설명] 1. 재질은 목재, 금속, 유리 및 합성수지임.
2. 본 디자인은 아치형으로 된 방갈로를 형상화한 것임.
3. 주거, 캠핑, 놀이방,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동이 가능한 방갈로임.(이하생략)

2.1.2 디자인의 형태성

“형상(shape)·모양(pattern)·색채(color)”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 및

화상 외에는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채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 (1)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며, 글자체 및 화상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은 형상을 수반한다.
- (2) “모양”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말한다.
 - (가) “선도”란 선으로 그린 도형을 말한다.
 - (나) “색구분”이란 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다) “색흐림”이란 색과 색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색이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것같이 보이게 하는 것(그라데이션, gradation)을 말한다.
- (3) “색채”란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로서, 법상 색채에는 투명색 및 금속색 등을 포함한다.

2.1.3 디자인의 시각성

“시각을 통하여”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 시각 외의 감각을 주로 하여 파악되는 것
- (2) 분상물(粉狀物) 또는 입상물(粒狀物)의 하나의 단위
- (3)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곳. 즉,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곳. 다만,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

※ **㊟ 불인정** 내부에 프레임(뼈대)이 존재하고 프레임 외곽에 반투명재질의 외피를 씌워 결합함으로써 완성되는 구조의 조명기구의 경우 프레임은 물품을 분해해야만 볼 수 있으므로 디자인의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98후2689(’99.7.23)).

* 대법원 98후2689(1999. 7. 23. 선고)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조명기구용 틀이 완성품인 기구의 외피를 제거 내지 훼손하지 않는 한 틀 그 자체의 완성된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임

(4) 확대경 등에 의해 확대하여야 물품의 형상 등이 파악되는 것.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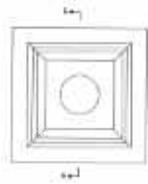
인정 다만,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확대경 등에 의해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예: 성형수술용 리프팅실, 성형수술용 수술실 등)에는 시각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 시각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록번호 30-0387557



[사시도]



[평면도]

[물품명칭] 발광다이오드

[디자인설명]

1. 재질은 금속재 및 합성수지재임.
2. 발광 다이오드칩 및 에피층은 투명하고 봉지수지도 투명수지이나 전극은 불투명함.
3. 평면도에서 한 변이 0.4~4mm임.

※ 설명의 편의상 이외의 도면은 생략함

2.1.4 디자인의 심미성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란 미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 즉, 해당 물품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미감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1) 기능·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
- (2) 디자인으로서 짜임새가 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

2.2 물품의 부분(부분디자인)의 성립요건

2.2.1 부분디자인에서 물품의 부분은 물품성이 인정되는 물품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부분디자인이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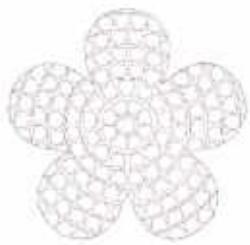
- (1)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통상의 물품에 해당할 것
 - (가) 독립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유체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나)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어느 하나의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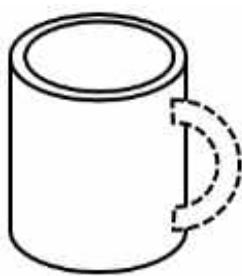
(2) 물품의 부분의 형태라고 인정될 것

(가)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은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만을 표현한 것이 아닐 것

✖ 예)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고 물품의 부분만을 표현한 누비이불의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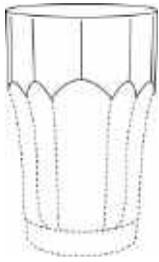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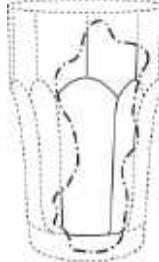
[물품명칭] 누비이불 [출원번호] 30-2014-0036473 [공개번호] 30-2014-0001114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은 표현” (등록불가)	“물품의 형상을 수반한 표현” (등록가능)
	

(나) 물품 형태의 실루엣만을 표현한 것이 아닐 것

[물품명칭] 머그컵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하는 부분의 형태를 실루엣만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물품의 형태로 인정불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등록가능
	

- (3)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

✕ 예) 대비가능한 물품의 창작단위 개념

[사례] “물 컵”		
창작단위로 인정	창작단위로 인정	창작단위로 불인정
		

-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 또는 수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을 것

2.3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

2.3.1 글자체 디자인이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1)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가) 글자체는 단순히 미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고,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나)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창작된 서예나, 회사 또는 상품의 이름 등을 표상하기 위한 조립문자인 로고타입 등은 성립요건의 위반으로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 (2)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란 개개의 글자꼴이 지니는 형태, 규모, 색채, 질감 등이 서로 비슷하여 시각적으로 서로 닮아있거나 같은 그룹으로 보이는 형태로 글자들 간에도 통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주의]

☞ 잘못된 글자체의 예 : 글자체의 일부는 신명조체로, 나머지는 궁서체로 구성된 한글 글자체

(3) 한 별의 글자꼴일 것

(가) “한 별의 글자꼴”이란 개개의 글자꼴이 모인 그 전체로서의 조합을 의미하므로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란 글자꼴 하나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개 글자꼴들 간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한 별의 글자꼴을 말한다.

[주의]

☞ 글자체 디자인의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은 디자인의 성립요건(제2장, 2.1 디자인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참조한다.

2.4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요건

2.4.1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1) 둘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을 포함한다)이 한 별로 동시에 사용될 것

※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한 별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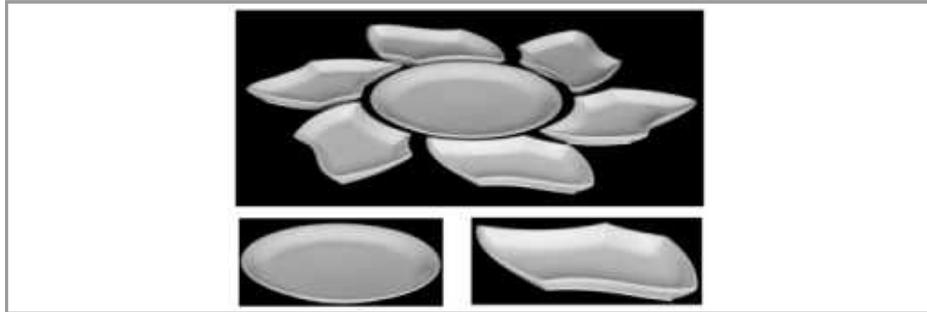
(가) 각 구성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되어 한 별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 예) “한 별의 접시 세트”에서 각 구성물품의 표현방법이 동일한 것



(나) 각 구성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이나 모양 등을 표현함으로써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 예) “한 벌의 접시세트”에서 각각의 접시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꽃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



(다) 각 구성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하여 관념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상을 줌으로써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 예)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를 그림으로 각 구성물품에 통일되게 표현한 것 등



(3) 규칙 [별표 5](한 벌의 물품의 구분)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할 것

(4)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이 적합할 것

(가) 한 벌의 물품별 구성물품은 [별표 5](한 벌의 물품별 구성물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위 (1), (2)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나) 한 벌의 물품은 [별표 5](한 벌의 물품별 구성물품) 또는 위 (1), (2)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 중 2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상거래 관행상 당 업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에는 정당한 한 벌의 물품으로 본다. 다만,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와 같은 전문운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는 모자, 양말, 신발, 보호장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동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끼리 된 경우(예: 태권도복 상의와 등산복 하의를 출원한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4.2 부분디자인에서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으로서 인정되는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을 말하는 것인바, 부분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제5부 제12장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참조).

2.5 화상 관련 디자인의 성립요건

2.5.1 “화상디자인”이란 화상(畫像)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으로부터 독립되어 표현되는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말한다.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의2에서의 “화상”에 해당되지 않는 화면에 관한 디자인을 말함. 이하에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함)”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해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2.5.2 “화상”은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을 성립요건 중의 하나로 하며, 그 외의 시각성 및 심미성 부분은 제2장의 “2.1 일반적 성립요건”을 참조한다.

(1)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는 화상’은 기기를 제어하기 위해 지시, 명령 등을 입력하는데 사용되는 도형, 기호 등을 의미하며, 조작의 대상인 기기가 반드시 물리적인 물품일 필요는 없다. 흔히, 조작용 입력 버튼, 막대(Bar), 다이얼, 노브(knob)등을 예로 들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제6부 제1장 화상에 관한 디자인 참조).

(2) ‘기기의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은 기기가 발휘하는 기능을 표현하기 위한

도형, 기호 등을 의미하며 각종 그래프, 상태표시 등, 경고등, 인디케이터(indicator)등이 대표적이다(자세한 내용은 제6부 제1장 화상에 관한 디자인 참조).

- 2.5.3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의 성립요건은 물품에 구현될 것을 전제로 하는 “부분디자인”의 태양으로서 제2장의 “2.1 일반적 성립요건”을 참조한다.
- 2.5.4 부분디자인에서 화상의 부분은 화상디자인으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부분을 말하는 것인바, 부분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3장

디자인등록출원인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제39조(공동출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1 창작자

1.1.1 “디자인을 창작한 자”란 법 제2조 제1호의 “디자인” 창작 행위를 한 사람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창작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1.1.2 디자인 창작행위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률행위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미성년자도 디자인의 창작자가 될 수 있다.

1.2 공동창작자

1.2.1 “공동창작”이란 복수인이 디자인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협력하여 완성한 디자인을 말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고 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 특허에서의 “공동발명자”에 관한 대법원 2009다75178(2011. 7. 28. 선고) 판결 참조**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 해당하려면 디자인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며, 단순히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디자인 개발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디자인 개발자의 지시로 디자인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거나 도면 작성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로는 부족하고,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관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새로운 착상을 단순한 도면화를 넘어서 디자인적으로 구체화하거나,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디자인적 요소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게 한 경우 등과 같이 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1.3 승계인

1.3.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창작자 이외의 법률상 권리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승계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참고]

☞ “직무디자인”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디자인을 창작한 것이 그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디자인의 창작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1.4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판단(일부심사등록 출원 포함)

1.4.1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거나,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공동으로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디자인

거절이유(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무효사유(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 1.4.2 심사관은 출원서에 창작자로 기재된 자가 진정한 창작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른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으며, 법 제213조에 따른 기타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심 사례 예시]

☞ 만6세 미만 단독 창작자, 창작자 연령에 비하여 그 디자인 창작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 법인이 창작자로 기재된 경우, 기타 언론보도/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진정한 창작자임이 의심되는 때 등

- 1.4.3 출원인이 착오로 창작자 중 일부 창작자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규칙 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 제1항에 따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 1.4.4 출원서에 출원인으로 기재된 자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

- 2.1 특허청 직원이나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법 제3조제1항 단서 위반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거절결정 한다.
- 2.2 특허청 직원이나 특허심판원 직원이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거절이유(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무효사유(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주의]

☞ 만약, 특허청 직원이 재직 중 디자인등록출원하고 퇴직 후 해당 출원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부 선행디자인조사 의뢰 후 심사관 3인 협의심사를 통해 디자인등록여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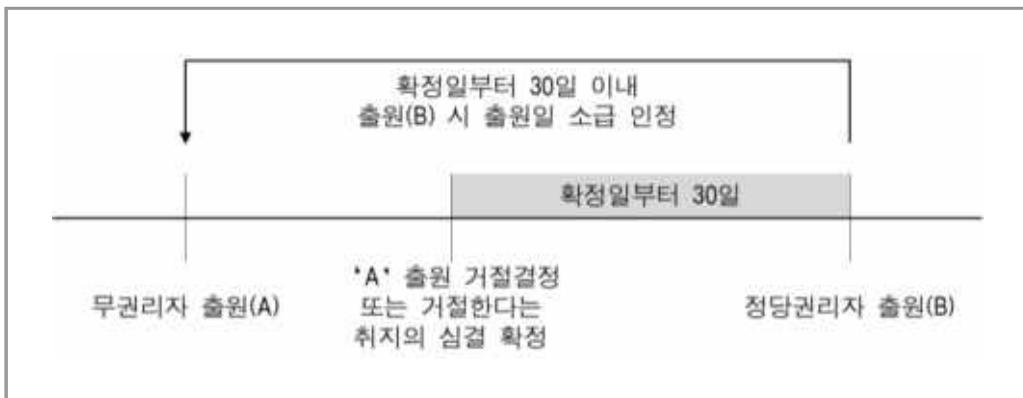
3 무권리자(無權利者)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3.1 정당한 권리자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하는 경우,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무단으로 출원인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공동창작자가 출원인 명에서 제외된 경우 등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법 제46조 제4항), 그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법 제6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법 제3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며, 그 등록 후에는 무효사유(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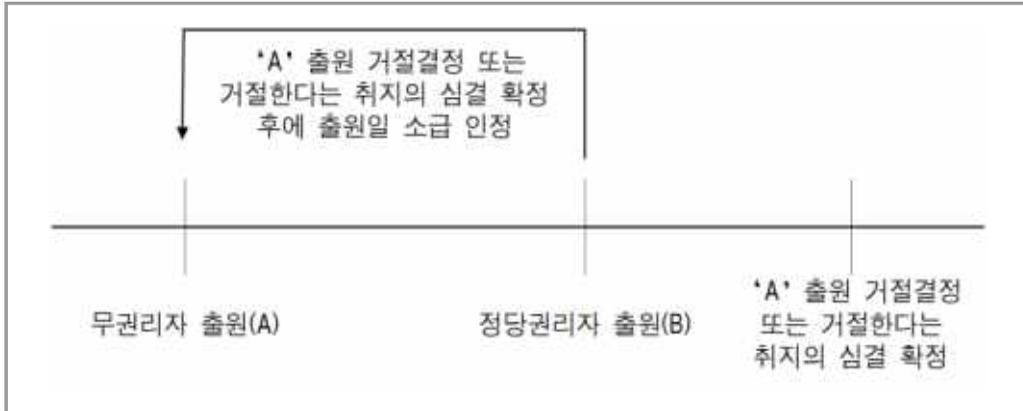
3.2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례 〉

☞ 예 1) 거절결정 또는 심결확정 후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 예 2) 거절결정 또는 심결확정 전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4 무권리자(無權利者)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4.1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법 제46조 제4항), 또한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설사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 취소 및 무효사유(법 제73조 제3항,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 4.2 무권리자의 출원이 디자인등록된 때에는 그 디자인 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출원일로 소급된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1 권리능력

1.1 자연인의 권리능력

1.1.1 자연인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당연히 법적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디자인에 관하여도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1.2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2 법인의 권리능력

1.2.1 법인은 법률에 의해 법인격을 얻은 주체로서 설립등기를 한 때부터 해산 등기를 할 때까지 법적 인격을 가지므로 디자인에 관하여도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2.2 법인의 권리능력은 「민법」에서 규정한 법인의 권리능력과 같다.

<참고>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1.2.3 법인은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될 수 있다.

1.3 국가의 권리능력

- 1.3.1 국가는 주권을 가진 주체로서 법인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디자인에 관하여도 대한민국 명의로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1.3.2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이나 국립대학교 등은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96후825 판결 참고). 다만, 서울대학교와 같이 특별법에 의해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격이 인정된다.

행정기관이 출원하는 경우의 예

☞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소속기관인 국립종자원이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 출원서의 「출원인 성명」란에 “대한민국(국립종자원장)”이라고 기재한다.

1.4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능력

- 1.4.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에 의해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디자인에 관하여도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1.4.2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로 구분된다.
- 1.4.3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에 있는 자치구만이 해당되므로 일반 시에 있는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1.5 외국인의 권리능력

- 1.5.1 외국인 가운데 재외자(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자)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이거나

조약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에 관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 1.5.2 외국인 가운데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는 법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재내자로서 디자인에 관한 권리능력이 당연하게 인정된다.

2 행위능력

2.1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2.1.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2.1.2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스스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예) 미성년자가 혼인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된 다음에 절차를 밟는 행위

- 2.1.3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이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1.4 행위능력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법 제18조(절차의 무효)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2.2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행위능력

- 2.2.1 종친회, 학회 등의 단체가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모습을 띠고 있을지라도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에 관하여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 2.2.2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원칙적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자기의 이름으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및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2.3 재외자의 행위능력

- 2.3.1 “재외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일지라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재외자에 해당한다.
- 2.3.2 재외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디자인관리인)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기(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만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2.3.3 재외자가 디자인관리인이 없이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채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규칙 제24조(부적법한 출원 서류 등의 반려) 제1항제15호에 따라 반려의 대상이 된다.

제5장

대리인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

제8조(대리권의 증명)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제11조(개별대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제132조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인이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
 5.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변리사법 ▼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1 대리인의 구분 및 대리권의 범위

1.1 법정대리인

1.1.1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자를 말한다.

1.1.2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 (1) 친권자 등과 같이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
- (2) 상속재산관리인 등과 같이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
- (3) 지정후견인 등과 같이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

1.1.3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 동의를 얻지 않고 특별수권사항인 출원의 포기·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신청·청구의 취하, 보정각하결정·거절결정·등록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있다.

1.1.4 법정대리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이의신청·심판·재심에 대한 절차를 후견 감독인 동의 없이 밟을 수 있다.

1.2 임의대리인

1.2.1 “임의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말한다.

1.2.2 일반적으로는 변리사로서 등록한 자가 임의대리인으로 선임되며, 변리사가 아닌 자는 업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8조의 준용에 따라 출원인과 친족관계, 고용계약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대리가 가능하다. 여기서, “친족관계”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고용계약”은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심사관 참고]

☞ 대리인 코드의 첫 번째 숫자가 9인지 확인하여 변리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 9-2015-123456-7)

1.2.3 임의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출원의 포기·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신청·청구의 취하, 보정각하결정·거절결정·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있다.

1.3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1.3.1 디자인관리인은 재외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2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법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1.3.3 디자인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만 출원의 포기·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신청·청구의 취하, 보정각하결정·거절결정·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선임절차

- 2.1 선임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2 출원인 명의변경이 있는 경우에 종전의 대리인이 절차를 계속 밟으려면 승계인의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3 대리권 증명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정을 통하여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대리인선임 절차 및 대리인이 밟은 절차는 무효로 된다.

제6장

기 간



I

Part

총

칙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제58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① 법 제38조제2항, 제47조, 제128조제1항, 제177조제2항 또는 제178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단축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법 제16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 기간의 구분

1.1 법정기간

1.1.1 “법정기간”이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당연히 발생한다.

1.1.2 법정기간에는 법 제51조에 규정된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서류 등의 제출(3개월), 법 제120조에 규정된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기간(3개월) 등이 있다.

1.2 지정기간

- 1.2.1 “지정기간”이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법에 근거하여 지정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에 근거하여 지정한 기간을 말한다.
- 1.2.2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이나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이다.
- 1.2.3 지정기간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등록출원이 하자 있는 경우 보완을 명하는 기간(1개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지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2개월) 등이 있다.

2 기간의 계산방법

- 2.1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 계산법이 있다. 자연적 계산법은 일정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인위적으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순간에서 순간까지 계산하며, 역법적 계산법은 기간을 역법적 단위인 일(日), 주(週), 월(月), 연(年)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다.
- 2.2 기간의 계산에는 법 제16조(기간의 계산)가 규정하는 아래의 계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2.2.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도 산입한다.
- 2.2.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법적으로 계산한다.
- 2.2.3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기간이 끝난다. 다만,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에 기간이 끝난다.

- 2.2.4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끝난다. 그러나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공휴일부터 시작한다.
- 2.2.5 절차에 관한 기간이 아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등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날까지 연장되지 않는다.

3 기간의 연장 및 단축

3.1 기간의 연장

- 3.1.1 법정기간 가운데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이유 등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120조에 따른 심판 청구기간을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위원장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3.1.2 지정기간에 대하여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이나 심사관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절차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1.3 지정기일에 대하여는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3.2 기간의 단축

- 3.2.1 출원인은 지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등록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신청으로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3.2.2 출원인이 지정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서에 기간단축을 원한다는 취지를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나 보정서를 제출한 날에 지정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4 적용사례

4.1 디자인 A가 2020.1.3. 공지되었으나, 2021.1.4. 디자인등록출원하면서 공지된 디자인 A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한 경우 기간산정은 이하와 같다.

☞ 이 경우 디자인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지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계산을 할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7장

절차의 무효, 보완 및 보정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에 따른 보정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0.19〉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 2.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21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도면·사진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47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1 절차의 무효

1.1 무효처분

- 1.1.1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 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지정기간 이내에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흠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1.1.2 무효처분을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절차를 밟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는 안내문을 적을 수 있다.
- 1.1.3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무효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2 무효처분의 취소

- 1.2.1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1.2.2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2 절차의 보완

2.1 보완명령

2.1.1 특허청장은 디자인출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한다.

- (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않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3) 도면·사진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4) 한글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

2.2 절차보완서 제출 및 출원일 인정

2.2.1 디자인출원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내에 절차보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2 지정기간 내에 디자인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본다.

2.2.3 복수디자인출원 가운데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2.3 반려처분

2.3.1 특허청장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디자인출원을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2.3.2 복수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일부디자인을 보완하지 않은 때에도 출원 전체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3 절차의 보정

3.1 보정명령

3.1.1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다.

- (1)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밟은 경우
- (2) 대리권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 (4)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1.2 보정요구서에는 보정할 서류 및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적고 필요한 경우 보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3.1.3 절차에 있어 보정대상은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의 형식적인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것 등의 실질적인 사항은 일단 서류를 수리한 다음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 한다.(대법원 80누414 판결 참고)

제8장

절차의 중단 및 중지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22조(절차의 중단)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 6. 제22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제24조(수계신청)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특허청장 또는 제130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⑥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② 당사자에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1 절차의 중단

- 1.1 절차의 중단은 특허청이나 절차를 밟는 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사망 등과 같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
- 1.2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있더라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 1.3 중단된 절차는 상속인 등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 자가 수계하여 밟아야 하며 수계신청은 절차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

2 절차의 중지

- 2.1 특허청장이나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 2.2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장애사유의 예) 당사자의 거주지에 천재사변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3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절차의 중단 및 중지의 효과

- 3.1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 3.2 절차에 대한 수계통지를 하거나 절차를 속행하면 그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제9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디자인 등록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7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0조(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11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디자인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디자인보호법시행령 ▼

제9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제209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이나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2.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裁定) 및 디자인등록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 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 ⑦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소장에게 송달한다.
- ⑧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 ⑨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 장소(국내로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⑩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⑪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⑫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여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1 직접 제출한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2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1.2.1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통신날짜도장”이란 우체국에 비치해 두고 우편물의 접수의 확인 및 우표의 소인(消印)으로 사용하는 도장(圖章)이다.

1.2.2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불분명하면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접수일)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1.2.3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적용되지 않고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3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서류의 송달

2.1 우편을 통한 송달

2.1.1 우편으로 송달하는 서류는 우편물의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2.1.2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배달일)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2.2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

2.2.1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2.2.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한 서류는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2.2.3 서류를 받아야 할 자가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자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파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우편으로 발송한다.

2.3 재외자에 대한 송달

- 2.3.1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디자인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2.3.2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재외자에게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2.3.3 디자인관리인이 없는 재외자에게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서류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2.4 공시송달

- 2.4.1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 2.4.2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2.4.3 같은 당사자에 대한 2회째부터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장

서류의 반려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6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어로 적은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7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른 디자인 등록출원, 재심사의 청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가. 법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 나. 법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 다.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5. 제3조를 위반하여 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 같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9.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10. 한글로 적지 아니한 경우
11.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나 그 밖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12.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출한 도면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방법 제8호바목,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8호아목부터 차목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방법 제4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방법 제9호사목에 따른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경우
1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1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16. 해당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7.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그 밖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 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8.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디자인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9.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 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으면 즉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려의 대상이 되는 서류

-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적법한 출원서류 등으로 보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 1.1.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 1.1.2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 1.1.3 한글로 적지 않은 경우
 - 1.1.4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복수디자인출원에 있어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를 포함)
 - 1.1.5 제출한 도면이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경우
 - 1.1.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1.1.7 재외자가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제출한 출원서류 등인 경우
 - 1.1.8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 1.1.9 기간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1.1.10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1.1.11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포괄위임등록철회서,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서,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1.1.12 정보통신망이나 이동식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 1.1.13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1.1.14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한 경우에 지정기간까지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1.15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정당한 소명이 없이 해당 증명서류를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1.16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절차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 1.1.17 해당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제출한 서류인 경우
- 1.1.18 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고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1.1.19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서류의 반려절차

- 2.1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는 서류에 대하여는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 등을 적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 2.2 반려이유 통지에 대하여는 소명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반려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서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 2.3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소명한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경과한 후 즉시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 2.4 반려처분통지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적을 수 있다.

제 2 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1장 공업상 이용가능성	63
제2장 신규성	83
제3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91
제4장 창작비용이성	100
제5장 확대된 선출원	117
제6장 관련디자인	125
제7장 선출원	133
제8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42
제9장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152
제10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159



제1장

공업상 이용가능성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 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Part

디자인보호법의 요건 및 부여에 사유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과 같다.
-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적고, 같은 도면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은 별표 3의 기재방법에 따라 적는다.

1 취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디자인 등록요건으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동일한 물품의 양산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은 양산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요건

2.1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을 것

2.1.1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이 불가능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1)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 대법원 93후1247(1994.9.9. 선고) 판결 참조**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의 하나라 할 것인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하는 것이다.

- (2)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에 의한 생산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도 포함한다.
- (3)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같은 물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을 가진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2.1.2 부분디자인에 있어서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계에 의한 생산 방법 또는 수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어야 한다.

2.1.3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면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2.1.4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의2에 근거하여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디자인”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동일한 형태의 화상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하는 경우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2.1.5 회화, 조소 등과 같이 순수미술 분야에 속하는 창작물들이나 동물박제, 수석(水石) 등과 같이 자연물 그 자체를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들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순수미술 분야에 속하거나, 자연물 그 자체를 구성주체로 하는지 여부는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

✕ 예) ⊗ 불인정 동물박제, 꽃꽂이, 수석

(2) 순수미술의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 예) ⊗ 불인정 그림, 유리공예작품, 도자기작품, 설치미술작품

(3) 물품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디자인

✕ 예) ⊗ 불인정 상품의 진열, 배열, 배치방법 또는 이에 관한 아이디어 등

[심사관 참고]

☞ **인정** 현행 디자인물품류별 물품목록('24.1.1 기준)에 의하면 '장식용 곤충표본집', '액자용 그림', '그림엽서', '소형장식품', '장식용 공예품', '도자기', '광고용 조형물', '옥외용 조형물', '교량용 조형물' 등의 명칭은 인정되고 있다.

2.2 디자인의 표현에 구체성이 있을 것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2.1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기초로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 경우에도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2.2 재질 또는 크기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심사관 참고]

☞ **인정** 재질, 크기, 사용목적, 용도 등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도, 심사관이 도면을 보고 출원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2.2.3 신발, 이어폰, 귀걸이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좌우 대칭 형태로 디자인, 제조, 이용되는 것이 자명한 물품의 디자인이 아님에도 디자인의 설명을 생략한 경우

예) **인정** 블루투스 이어폰 등과 같은 경우, 도면에 좌, 우 중 한 쪽 이어폰의 형태만 도시되어 있고, 다른 쪽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어도 구체성이 결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2.2.4 교량이나 가옥 등 토목 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반복생산 가능성이나 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임에도,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2.2.5 「디자인의 설명」란에 디자인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혼용가능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예) **⊗ 불인정** “자동차”로 출원하면서 「디자인의 설명」란에 “본원 디자인은 자동차 모형으로 제작 가능함”으로 기재한 경우

✕ 예) **⊗ 불인정** “라벨”로 출원하면서 「디자인의 설명」란에 “본원 디자인은 화상디자인으로 사용가능함”으로 기재한 경우

✕ 예) **인정** 다음과 같은 형태의 “휴대폰 케이스”의 경우 “지갑”과의 혼용 가능성이 인정된다.



2.2.6 물품의 부분으로서 표현되는 화면디자인 출원 시 화면이 도시되는 부분의 도면만(예: 정면에서 바라본 상태를 표현한 도면)을 제출하되,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단,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정보통신기기에 표시되는 화면디자인과 같이 통상적으로 하나의 도면만으로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구체성이 결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2.7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의2에 근거하여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디자인”인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화상디자인이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관한 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2.2.8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형태를 완전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마네킹 등의 보조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2.2.9 도면에서 생략된 부분으로 인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이 명확하지 않아 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부 도면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해당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 [별표 2](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 참고} 이 경우 평면적인 물품을 표현하여 뒷면부분의 모양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부분은 모양 없음”이라 기재할 수 있으며 뒷면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설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예) **인정** ‘의류’ 디자인을 바닥면에 납작하게 펼친 상태로 표현한 경우 의류의 형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좌, 우측 등에서 바라본 도면이 생략되어도 표현의 구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예) 일부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와 「디자인의 설명」란 기재방법

구 분	제출도면	기재방법
(1) 앞면부분과 뒷면부분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	앞면부분 또는 뒷면부분	“뒷면부분은 앞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또는 “앞면부분은 뒷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2) 왼쪽면부분과 오른쪽면부분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	왼쪽면부분 또는 오른쪽면부분	“오른쪽면부분은 왼쪽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또는 “왼쪽면부분은 오른쪽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구 분	제출도면	기재방법
(3) 윗면부분과 아랫면부분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	윗면부분 또는 아랫면부분	“아랫면부분은 윗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또는 “윗면부분은 아랫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4) (1), (2), (3) 외에 도면 중 같은 부분이 여러 개인 경우	같은 부분들 중 한 개의 부분	해당 이유를 설명
(5) 항상 설치 또는 고정되어 있어서 특정 부분을 볼 수 없는 경우	특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해당 이유를 설명
(6) 두께가 얇은 입체물품 (예: 포장용 파우치 등)	주요 부분	해당 이유를 설명
(7) 평면적인 물품(포장지, 라벨, 직물지 등)인 경우	표면도, 이면도 ※ 이면부분에 모양이 없을 경우 이면도생략 가능	해당 이유를 설명
(8)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의 경우	화면디자인이 도시되는 부분	해당 이유를 설명

2.2.10 도면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물품의 뒷면부분에서 바라본 도면(뒷면 사시도) 및 아랫면 부분에서 바라본 도면(아래면 사시도)을 포함한다]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어떤 부분이 추측상태로 남아 있어 디자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2.11 도면이 서로 불일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도 디자인의 요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대법원 2004후2123(2005.9.15.선고) 판결 참조**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분이 사시도와 6면도의 원근법 등 표현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또는 보는 이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으로서 디자인 창작의 요점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에 불과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디자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2.12 도면(도면대용으로 제출하는 사진을 포함한다), 견본 등이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디자인의 표현 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볼 때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여 당업자가 그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도면, 견본 등이 지나치게 작거나 또는 선명하지 않아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2) 사진인 경우 물품의 배경, 음영, 타 물품의 형태 등이 촬영되어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것

2.2.13 출원서 또는 도면 중에 문자나 부호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형상, 모양 및 색채를 추상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디자인의 요지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2.2.14 색채도면의 일부에 착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다만,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무착색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아래 (1),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면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1) 백색, 회색 또는 흑색이라고 색채를 적은 것
- (2) 투명 부분이라고 적은 것
- (3) 뚫린 부분이라고 적은 것

2.2.15 정·배면도, 평·저면도, 좌·우측면도, 사시도 등의 제출 도면만으로는 디자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디자인 도면)의 기재요령 참고)

- (1) 단면도, 확대도, 절단부 단면도 또는 사용상태도 등이 없는 경우

[심사관 참고]

☞ 단면도 등의 도면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되 해당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어야 하며, 아래의 구분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도면은 참고도면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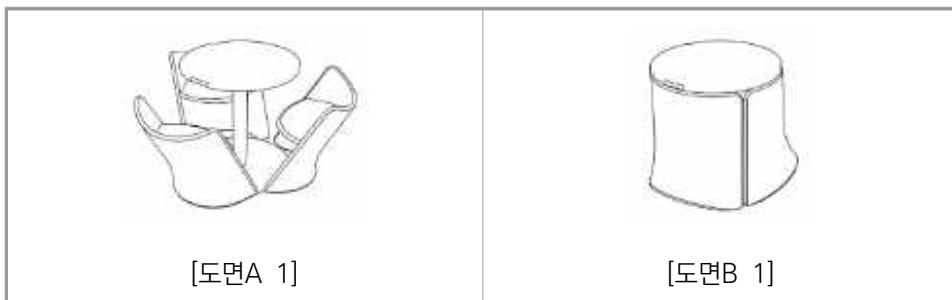
구 분		비 고
도면	(절단부)단면도	아래 (☞ 2.2.16)에 따라 작성
	(부분)확대도	아래 (☞ 2.2.17)에 따라 작성
	분해사시도	사용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은 제외함
	전개도	전개도를 본도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완성된 상태의 도면은 사용상태도로 판단
참고도면	사용상태도	그 밖에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

(2) 조립완구 등과 같은 합성물의 경우

- (가) 구성하는 각 편의 도면만으로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으나 그 만들어지는 상태 또는 보관되는 상태를 표시하는 도면이 없는 경우
- (나) 조립된 상태의 도면만으로는 분해된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으나 구성하는 각 편의 도면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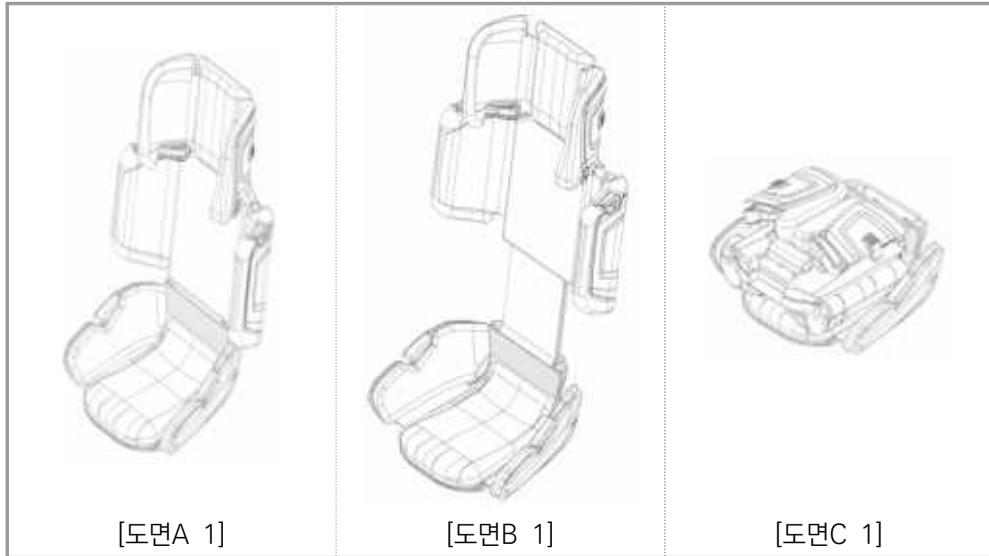
(3) 열리고 닫히거나 펼쳐지고 접히는 등 형태가 변화하는 물품의 디자인(동적(動的) 디자인)으로서 변화하기 전후의 상태를 도시하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으나 변화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각각의 도면이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됨에도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경우

☞ 예) 인정 “탁자가 부설된 의자”의 펼쳐진 상태의 도면 및 접힌 상태의 도면



(4)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형태가 변화하는 물품의 디자인으로서 그 움직이는 상태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으나 정지상태의 도면과 그 동작 상태를 알 수 있는 도면(동작 중의 기본적인 자세, 동작내용을 나타내는 궤적 등)이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경우

✕예) 인정 “접이식 어린이용 카시트”의 형태가 변화하는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일련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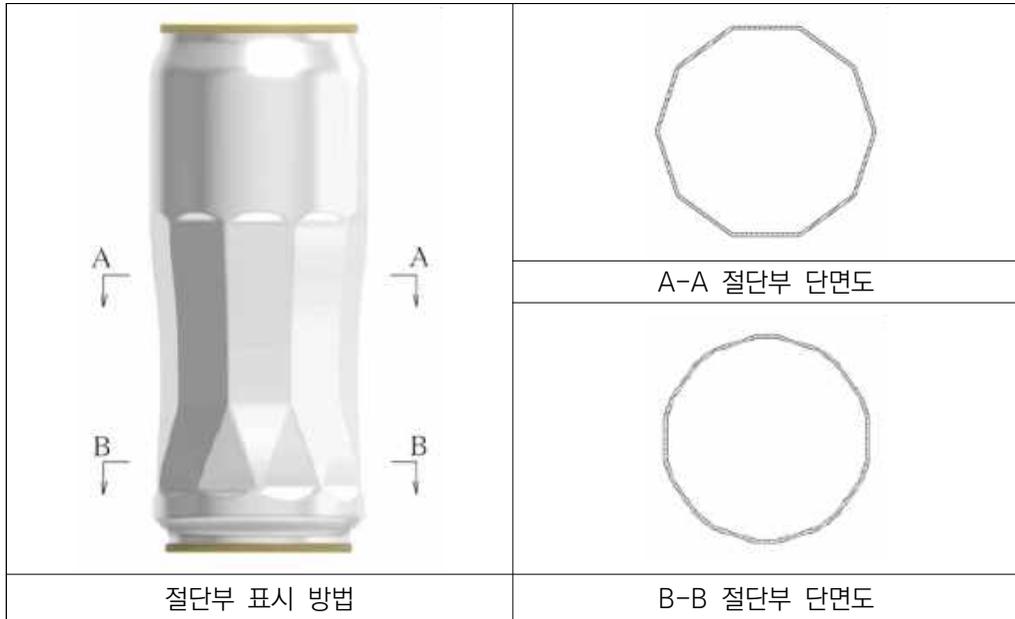
2.2.16 단면도 등의 절단면 및 절단한 곳의 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절단면에 평행사선(해칭:Hatching)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의 절단면의 표현이 불완전하게 표시되었거나 표시가 없는 것

✕예) 인정 다음과 같이 단면도를 3D 그래픽 또는 사진으로 표현된 경우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



- (2) 절단된 부분을 원래의 도면에서 쇄선 등으로 표시(절단쇄선, 부호 및 화살표)하지 않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 다만, 일정한 도면을 지정하고 그 도면의 “중앙 종단면도”, “중앙 횡단면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은 것은 예외로 한다.



2.2.17 부분확대도의 원래의 도면에 확대한 부분을 쇄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 다만, 확대한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도면에 그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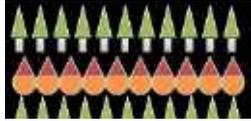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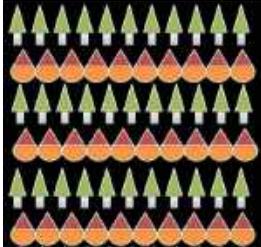
2.2.18 덮개와 본체로 구성된 물품과 같이 분리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결합된 상태만으로는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그 결합된 상태의 도면과 구성물품 각각의 도면이 없는 경우

2.2.19 입체적인 물품으로서 형상이 연속하는 디자인 또는 평면적인 물품으로서 모양이 연속 또는 반복하는 디자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

- (1) 도면이 그 연속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도시(단위모양이 1.5회 이상 반복되어야 한다)되지 않은 경우. 다만, 단위모양이 1회 도시되었더라도 「디자인의 설명」란에 반복(단위모양의 결합 및 배열)상태를 기재하였고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이 일치하며 반복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 “직물지” 디자인의 도면에서 모양이 상·하 및(또는) 좌·우로 연속·반복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도시

올바르지 않은 도시	올바른 도시
	<p data-bbox="616 578 1274 643">〈단위모양이 1회 도시되었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반복상태를 기재하였으며 반복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예시〉</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margin-right: 20px;">  </div> <div> <p data-bbox="911 662 1082 727">(물품) 직물지 (디자인의 설명)</p> <p data-bbox="911 731 1274 797">출원된 도면을 단위모양으로 하여 상하좌우 방향으로 반복되는 것임</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div>

(2) 「디자인의 설명」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1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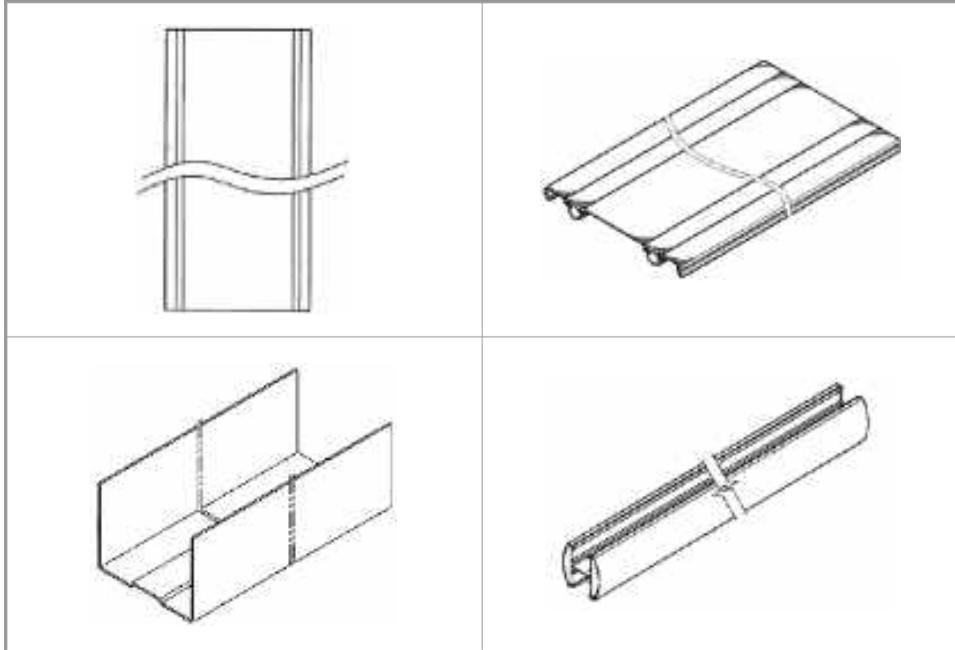
〈 디자인 설명란 기재방법 예시 〉

구 분	기재방법(예시)
모양이 연속 또는 반복하는 평면 디자인	“본 디자인의 모양은 상하좌우 방향으로 연속 반복되는 것임” 또는 “좌우로 연속 반복되고, 상하는 전폭임”
형상이 연속하는 입체디자인	“본 디자인은 길이방향으로 연속되는 것임” 또는 “본 디자인은 좌우로 연속되는 것임”

2.2.20 길이가 한정된 물품의 중간을 생략한 도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생략한 부분을 두 줄의 평행한 1점쇄선으로 절단하여 표시하지 않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여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없는 도면

※예) **인정** 두 줄의 굵은 곡선, 2점쇄선 및 지그재그선 등으로 절단하여도 공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2)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이 명확하지 않아 생략한 길이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실제품의 크기 기준으로 몇 mm 또는 몇 cm 생략되었다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선, 끈, 줄 등과 같이 물품의 구성주체가 아닌 부수적인 구성물의 길이를 도면상 생략하는 경우에는 도면상 생략한 길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절단하여 사용되는 물품은 이를 설명란에 기재할 수 있음
(예 : 창틀용 프레임, 건축용 프로파일 등)

2.2.21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외주면에 색채가 없고 모양이 없다면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다만, 물품의 특성상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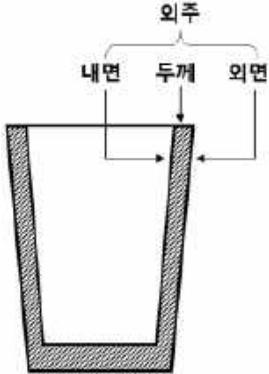
[심사관 참고]

☞ **인정** 「디자인의 설명」란에 투명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아래와 같이 자명한 경우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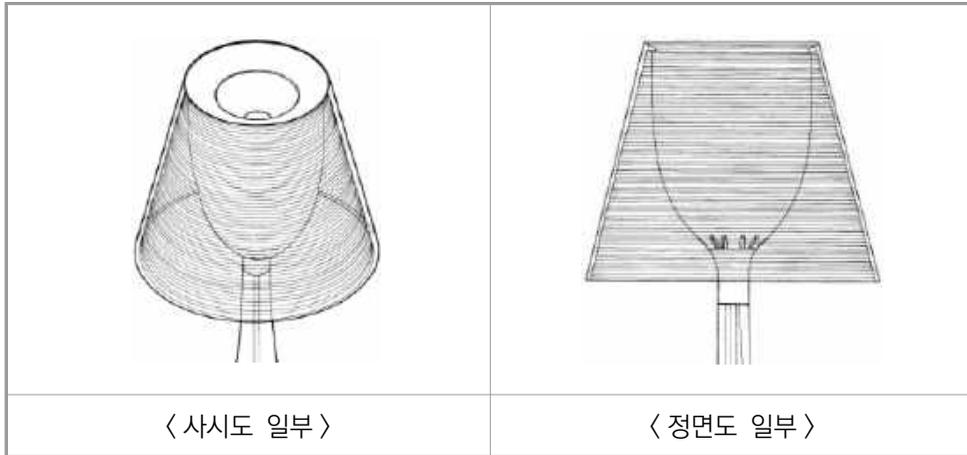
		
<p>“안경”</p>	<p>“전구”</p>	<p>“손목시계 본체”</p>

(2) 외주의 외면·내면·두께 속의 어느 한 곳에 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다면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도면을 제출하고, 모양 또는 색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도면(뒷면의 모양이나 색채가 투영되지 않은 앞면, 밑면의 모양이나 색채가 투영되지 않은 윗면 또는 모양부분의 전개도 등)을 첨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다만, 도면만으로도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예 1) 투명의 입체물품에서 외주, 내면, 두께, 외면의 위치

	
<p>〈사시도〉</p>	<p>〈수직 단면도〉</p>

✕예 2) **인정** 다음과 같이 투명재질의 전등갓의 내측면에만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전기스탠드’ 디자인의 경우 재질에 대한 설명과 도면만으로도 디자인이 충분히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외주의 외면·내면·두께 속이나 외주에 둘러싸인 내부의 어느 곳에 돌이상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다면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도면을 제출하고 그 형상·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각 면별(외주의 외면, 내면 또는 그 두께 속, 외주에 둘러싸인 내부)로 도시한 도면을 첨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다만, 도면만으로도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예) 외주의 외면과 내면에 모양이 있는 컵 등

(4) 투명입체로서 그 일면에만 모양 또는 색채가 있는 경우에 그 면에만 모양 또는 색채를 표현(다른 면에서 투영되어 보이더라도 표현하지 아니한다)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거나 「디자인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됨에도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다만, 도면만으로도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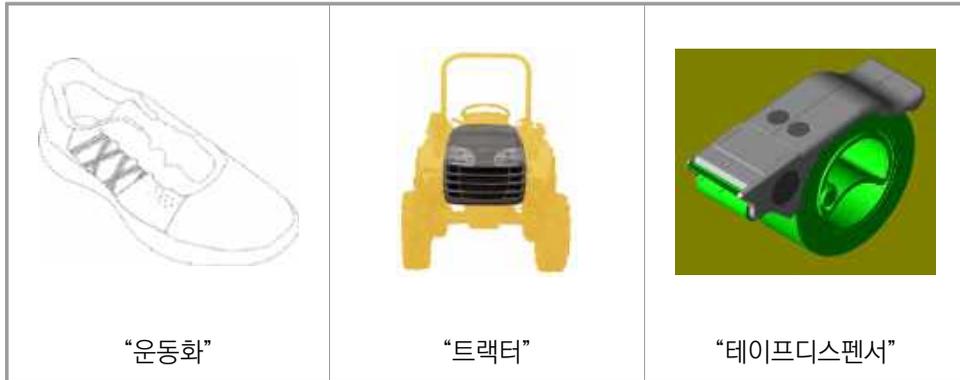
(5) 투명한 부분의 두께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음에도 투명부분의 두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단면도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절단된 부분은 해칭(연속된 빗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2.22 부분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경우

(가)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을 파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르지 않았거나 이와 상응하는 표현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예) **인정** 채색(coloring) 또는 경계선(boundary) 등을 통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운동화”디자인의 경우 1점쇄선으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간의 경계를 표시했고, “트랙터” 디자인과 “테이프 디스펜서” 디자인의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착색하였다.

(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됨에도 그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다)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간의 경계가 불명확함에도 그 경계를 1점쇄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도시하지 않았거나, 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나 그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2)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전체형태가 도면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단, 부분디자인의 도면 중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지 않으려는 부분의 일부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구체성이 결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예시) **인정** 다음과 같이 손목시계 부분디자인의 경우 시계 ‘밴드’ 부분의 도시가 완전하지 않지만 통상의 지식수준의 디자이너 관점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하는 시계 ‘무브먼트’ 부분이 손목시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크기, 범위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구체성이 결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도면 1]

2.2.23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1) 각 구성물품마다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1조의 도면을 도시하지 않은 경우
- (2) 구성물품들이 조합되어 통일된 형상, 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의 1조의 도면을 도시하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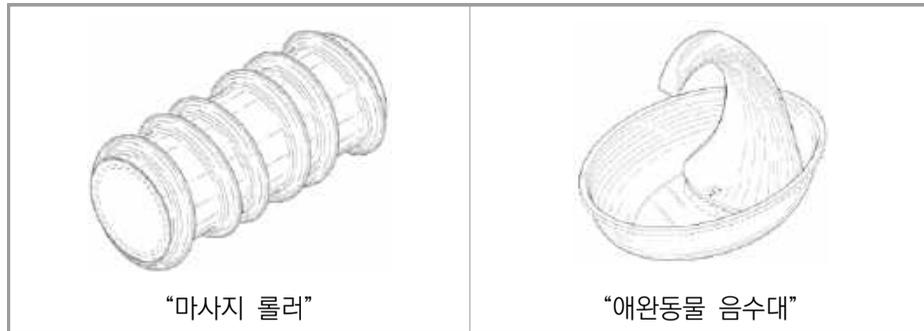
2.2.24 3D 모델링 파일을 도면 대신 제출한 경우

- (1) 3D 모델링 도면이 셰이딩(shading) 상태가 아닌 와이어프레임(wire frame) 상태로만 표현되거나 3차원의 돌려보기가 불가능한 2차원 상태로 도면이 표현된 경우

- (2) 3D 모델링 도면으로 물품의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하게 도시되지 않아 형태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 (3) 3D 모델링 도면을 실행하였을 경우 도면이 깨지거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생성된 면이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해당 물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2.2.25 도면 내의 도형 안에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중심선, 기선(基線), 수평선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細線), 내용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부호 또는 문자가 있는 경우, 다만, 도면(3D 모델링 도면을 포함하며 제출된 모든 도면을 말한다)에 평면, 굴곡, 오목 및 볼록 등을 음영으로 표현하기 위한 모양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濃淡)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모양과 혼동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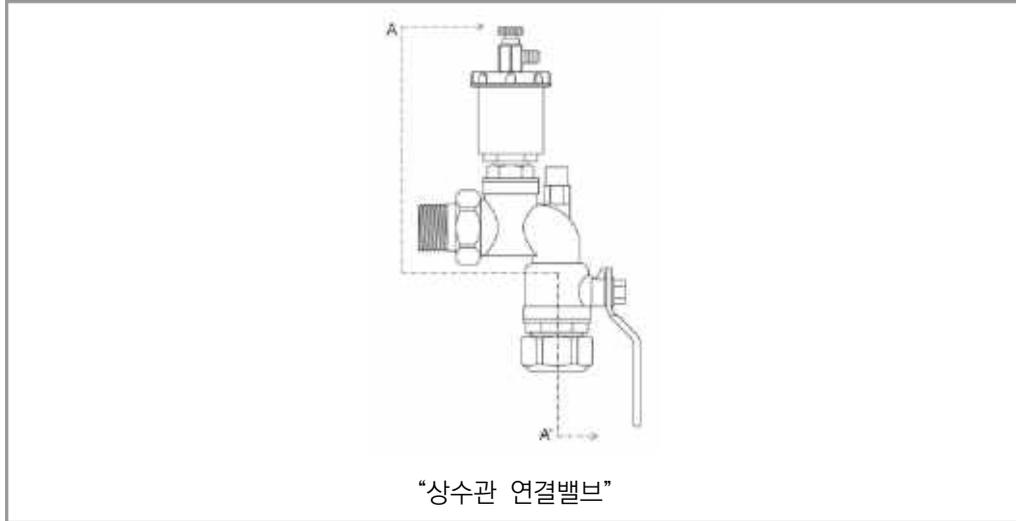
✳ 예 1) **인정** 다음은 도면 내에 곡면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음영선을 사용한 경우로서 모양과 혼동되지 않는 정도로 볼 수 있다.



✳ 예 2) **인정** 도면 내 도형 안에 확대부분을 표시한 것으로서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



✕ 예3) **인정** 도면 내에 (복합)단면부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



[심사관 참고]

- ☞ 다음의 경우에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음영선으로 판단할 수 있다.
 - (1) 디자인을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선보다 가는 세선(細線)을 겹쳐 사용한 경우
 - (2) 형상 또는 모양선과 연결되지 않은 가는 선을 사용한 경우
- ☞ 파선을 부분디자인이 아닌 모양선을 나타내기 위해 도시할 때, 그 취지가 불분명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 챙부분의 파선은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며, 본체부의 파선은 재봉선을 나타냄



- ☞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 (1)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모양으로 보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 ㉠ 상당한 정도로 도형화되어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
 - ㉡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과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을 함께 하는 것

(2)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모양으로 보지 않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물품에 표현되어 있어도 삭제를 요하지 않는다.

㉓ 신문·서적의 문장부분

㉔ (예) **인정** 성분표시, 사용설명, 인증표지 등을 보통의 형태로 나타낸 문자·표지

	
<p>문자가 표시된 “휴대전화기”</p>	<p>인증마크가 표시된 “포장지”</p>

제2장

신규성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대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 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Part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속예 사유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시행 2021. 1. 1.] [특허청고시 제2020-39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지디자인”이라 함은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는 일반 공중에 공개되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진 디자인을 말한다.
2. “공지기관”이라 함은 창작디자인의 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지신청인”이라 함은 공지기관에 창작디자인의 공지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서 공지디자인을 전자화 파일로 가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취지

디자인보호제도는 창작한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하지 않고 등록받아 공개한 자에게 그 공개의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디자인 실시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되어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면 디자인보호법의 본래의 목적(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2 적용요건

2.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1.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된 디자인은 공지디자인으로 본다.

*** 대법원 2000후3012(2000.12.22. 선고) 판결 참조**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

- (2) 디자인이 공지된 날과 출원일이 같고 시·분·초의 선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공지를 이유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 (3) 등록디자인은 그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전까지는 공지디자인으로 본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은 그 국제등록된 디자인이 공고된 날 공개된 것으로 보며,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공지기관에 의하여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공지일을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그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그 디자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일반공중에게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날을 공지일로 본다. 등록된 비밀디자인은 비밀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공지디자인으로 본다.
- (4)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실시된 디자인은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으로 본다.

*** 대법원 2002후2969(2004. 12. 23. 선고) 판결 참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

- (5) 공개되지 않은 선출원 디자인의 도면을 후출원에 대한 거절이유의 근거로 첨부하여 의견제출통지를 한 경우 선출원 디자인은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에게 알려진 것이므로 공지디자인에 해당한다.

2.1.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1)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 (가) “간행물”이란 기계적 또는 전기적 인쇄·복제수단에 의하여 제작되어 반포된 문서, 도화 및 사진 등을 말한다.

✕ 예) 공보, 서적, 잡지, 신문, 카탈로그, 팸플릿, 사용설명서, CD-ROM, 마이크로필름

*** 대법원 89후2120(1990. 8. 28. 선고) 판결 참조**

사용설명서의 경우에도 제품의 판매시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배부·반포되는 것인 점에서는 카달로그와 마찬가지로 할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반포”란 그 간행물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 (다) 간행물에 게재된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전체적인 형태를 쉽게 알 수 있게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 대법원 94후1206(1994.10.14. 선고) 판결, 98후706(1999. 11. 26. 선고) 판결 참조**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206 판결 참조),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

- (라) 출원공개된 디자인 및 등록공개된 디자인은 그 공개일 또는 등록공개일 부터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99후2020(2001. 7. 27. 선고) 판결 참조**

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디자인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마) 카탈로그의 경우에 일단 제작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포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98후508(1998. 9. 4. 선고) 판결 참조**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제작된 카탈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행물이 국외에서 반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그 간행물이 국내에 반포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바) 간행물의 반포시기 추정

- ① 발행년도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말일
- ② 발행년월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

- (사) 선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된 경우에 그 선출원은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 (가) “전기통신회선”이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기·자기적 방식으로 쌍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전송로를 의미한다.

✕ 예) 인터넷, 쌍방향 전송 케이블텔레비전

(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

✕ 예) 인터넷에 링크가 개설되고 검색엔진에 등록되어 공중이 제한 없이 접속할 수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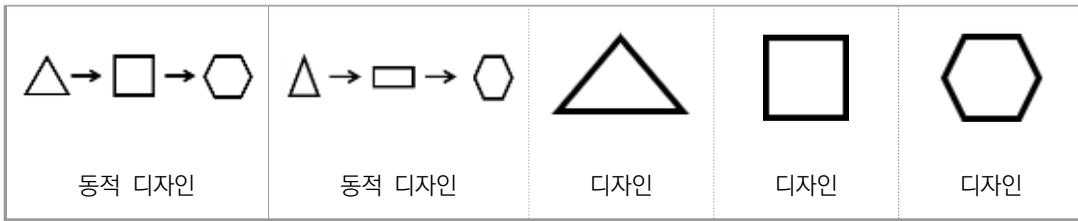
(다)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의 공지시기 추정

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의 공지시기의 추정은 위 “(1)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의 “(㉞) 간행물의 반포시기 추정 규정”을 참조한다.

3 판단방법

3.1 신규성이 상실되는 구체적인 유형

공지디자인	출원디자인			
 완성품 디자인	 완성품 디자인	 완성품 부분 디자인	 부품 디자인	- -
 완성품 부분디자인	 부품 디자인	 부품 디자인	 완성품 디자인	 완성품 부분 디자인
 한 별의 물품디자인	 한 별의 물품디자인	 구성품 디자인	 구성품 디자인	 구성품 디자인



3.2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방법은 제3부 디자인의 유사여부의 “제1장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부분을 참조한다.

3.3 부분디자인의 신규성 요건 판단

3.3.1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있기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공용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디자인의 출원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1) 해당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 (2) 해당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디자인

3.4 한 별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한 별 전체로서만 신규성 요건을 판단한다.

3.5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 제1항 각 호를 근거로 하여 거절결정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55조(정보 제공)에 따라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를 근거로 하여 법 제62조(디자인 등록거절결정) 제4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4 적용사례

4.1 인터넷 상에서 공지된 타인의 디자인으로서 과거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그 공지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판단방법

☞ 과거에 인터넷에 링크가 개설되고 검색엔진에 등록되어 공중이 제한 없이 접속이 가능했던 공지디자인은 그 증빙서류에 의해 신규성 판단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4.2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A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도 있고 공지디자인 A와 유사하기도 한 경우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관련규정 적용방법

☞ 이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괄호 속 내용(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1항 각 호(신규성)만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제1항의 신규성에 관한 거절이유가 해소될 경우 제2항에 따른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거절이유를 병합하여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 번에 통지할 수 있다.

4.3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A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또한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B를 기초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도 있는 경우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관련규정 적용방법

☞ 이 경우 출원 전 공지디자인 A에 대하여는 신규성을 적용하고,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 B에 대하여는 창작비용이성을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함

제3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2023.6.20.>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23조(서류의 원용)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II

Part

디자인제도의 연건 및 부제에 사유

2. 제8조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제3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답변서 또는 소명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또는 절차보완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1 취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공지·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디자인 개발 후 사업준비 등으로 미처 출원하지 못한 진정한 창작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 대법원 2014후1341(2017. 1. 12. 선고) 판결 참조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규정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2 적용요건

- 2.1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에 그 공지디자인이 최초에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면 그 출원디자인의 심사에 있어 그 공지디자인을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2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공지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이 각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양 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심사관 참고]

☞ 2007년 법 개정 이전에는 출원한 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예외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1.3. 법률 제8187호로 디자인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양 디자인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공지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이 각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공지디자인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원디자인이 A+B이고 자신이 앞서 공지한 디자인이 A와 B일 경우, A, B를 각각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 디자인 A+B는 신규성은 물론 A와 B를 결합한 용이창작으로도 거절되지 않는다.

2.3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자

2.3.1 디자인이 공지(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공지한 경우 포함)될 당시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

(가) 출원하거나, 또는 공지된 이후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출원하여야 한다.

※ 출원전에 그 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제3자에 의하여 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또는 리뷰 된 경우 출원인은 해당 영상 또는 기사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제시 등을 통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

2.3.2 디자인의 공지주체가 여럿일 경우 그 중 1인 이상의 출원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출원인이 공지디자인에 대한 창작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대상

2.4.1 디자인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2.4.2 디자인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도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 자신의 출원디자인이 미공개 상태임에도 후출원의 거절참증으로 거절이유 통지서에 첨부되어 공지된 경우, 이 출원디자인을 재출원하려 한다면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만 신규성 상실로 거절되지 않는다.

2.4.3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번 공지된 경우 가장 처음 공지된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도 가장 처음 공지된 것만 주장하면 된다.

2.4.4 출원디자인이 증명서류의 공지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2.4.5 디자인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 공고가 된 경우(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에는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

* 특허법원 2019허2653(2019. 10. 25. 선고) 판결 참조

본 사건은 ‘휴대용 미니선풍기’ 디자인이 출원 전 중국 디자인(외관설계 전리)공보에 기재되어 공지된 것이 쟁점이었던 사건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디자인 개발 후 사업준비 등으로 미처 출원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의 기회를 부여하는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의 취지상 이미 출원되어 공개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2.5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시기 및 절차

☞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와 절차는 심사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심판, 소송절차 중에도 가능하다. 다만 심사 절차에서는 출원 시뿐만 아니라 출원 중, 등록결정이전, 의견서 제출 시, 일부심사디자인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시에도 가능하다 ('23.12.21 시행)

2.5.1 출원할 때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적어 주장하여야 한다. 즉, 출원서에 「신규성 주장」 항목을 만들어 디자인의 공지형태 및 공지일자 등을 적어야 한다.

2.5.2 출원 중에는 보정서를 통하여 그 취지를 주장하거나 그 공지디자인을 거절이유로 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여 제출하는 의견서 등을 통해서도 그 취지를 주장할 수 있다.

[심사관 참고]

☞ 출원인이 법 제36조에 따라 의견서 또는 답변서를 통해 신규성 상실 예외의 취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심사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디자인심사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함. 이후 절차는 법 제36조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한 때와 같음

2.5.3 그 공지디자인을 신청이유로 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서는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 등을 통하여 그 취지를 주장할 수도 있다.

2.5.4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번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공지에 대하여 주장하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14후1341(2017. 1. 12. 선고) 판결 참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 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게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증명서류 제출

3.1 출원 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3.1.1 증명서류는 등록여부결정시까지 제출가능하며 미제출 시에는 별도의 불인정 예고통지 없이 신규성상실예외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심사한다. 다만 출원인·대리인의 실수 등으로 증명서류를 미제출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불인정 예고통지를 할 수 있다.

✕ 예) 출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란 아래에 인터넷 주소(URL 링크), 디자인의 형태, 공개일 등을 기재한 경우

3.1.2 증명서류에는 공지형태, 공지일자, 공지주체 및 디자인도면 등 객관적인 증거사실을 제시하여야 한다.

3.1.3 디자인이 공지될 당시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와 해당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인이 다른 경우에는 공지 이후 그 권리가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서류에 명시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2 보정서(의견서 포함) 등을 통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3.2.1 증명서류는 등록여부결정시까지 제출가능하다.

3.2.2 보정서를 통해 신규성상실예외를 주장했으나 증명서류가 미제출되면 별도의 불인정 예고통지 없이 신규성상실예외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심사한다. 다만 출원인·대리인의 실수 등으로 증명서류를 미제출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불인정 예고통지를 할 수 있다. 위 3.1.1에서 예를 든 것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3.3 다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증명서류가 제출된 경우 규칙 제23조(서류의 원용)에 따라 해당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 란에 원용의 취지를 기재하여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4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불인정

4.1 다음의 예와 같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 예고통지를 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예) 공지주체, 공지형태, 공지디자인 도면 등이 불명확한 경우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출원디자인이 공지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4.2 불인정 예고통지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외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불인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4.3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위한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의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4.4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지디자인을 출원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및 용이창작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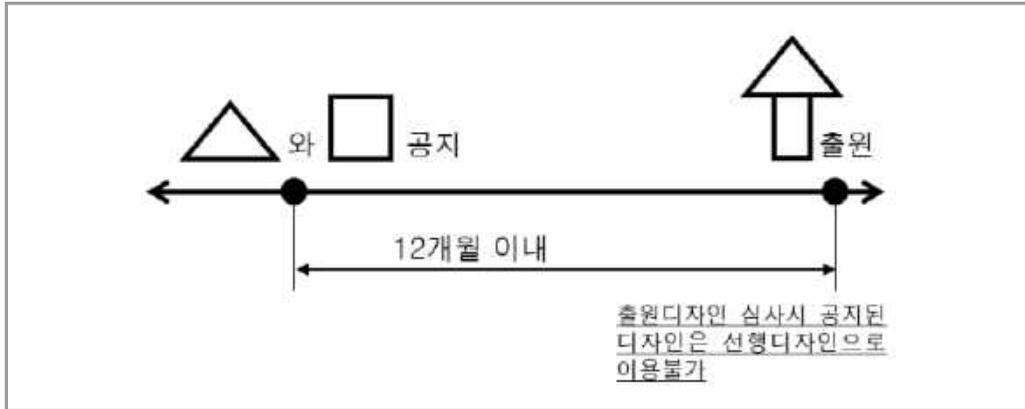
5 인정의 효과

5.1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면 그 공지디자인은 자기가 출원한 디자인의 제33조 제1항(신규성) 및 제2항(창작비용이성) 판단 시 선행디자인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 예 1) 법 제33조제1항 신규성 판단 시



✕ 예 2) 법 제33조제2항 창작비용이성 판단 시



6 적용사례

6.1 서로 유사한 디자인 A 와 디자인 A"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나,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또는 보정서 등을 통하여 디자인 A에 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한 경우, 공지디자인에 A와 A"에 대한 신규성 판단방법

☞ 이 경우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A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에 따라 그 출원 디자인에 대하여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나, 디자인 A"는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번 공지된 것(2014후1341 판결 참고)이 아니므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A"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이 없었으므로 선행디자인으로 이용 가능

6.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A에 대하여 출원 시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을 하였으나, 디자인 A를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출원시에는 공지디자인 A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신규성 판단방법

☞ 이 경우, 관련디자인등록출원시 공지된 디자인A에 대하여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이 없었으므로 선행디자인으로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시 공지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했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은 불가능하다.

6.3 창작자가 창작한 디자인을 인터넷 상에서 2019.1.17. 공지한 후, 미국특허청에 디자인 출원(2020.1.3.) 하였고, 미국의 출원디자인을 기초로 조약우선권 주장하여 2020.4.29. 우리나라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 인터넷상에 공지된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판단기준일에 대한 검토

☞ 이 경우 법 제36조 제1항 본문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 공지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어 우리나라에 디자인등록출원하였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음. 즉 조약우선권 주장을 포함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36조 제1항의 12개월 판단기준은 최초 출원인 미국의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음.

6.4 동물을 의인화한 캐릭터 그림을 디자인출원 전 공지했는데, 디자인출원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이 가능한지 여부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은 출원인이 자기의 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 시 출원 전 공지된 사실을 예외로 간주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지된 대상이 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함. 다만, 캐릭터 그림이 단지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패널 등을 통해 표현되었거나 화상디자인으로 공지된 것이라면 화상디자인출원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가능함.

제4장

창작비용이성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 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1 취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디자인의 신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디자이너)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또는 공용된 디자인을 기초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등록받을 수 없다. 이러한 창작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디자인 보호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법 제33조 제2항에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이 개발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2 적용요건

2.1 공지디자인(법 제3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13후2613(2016. 3. 10. 선고) 판결 참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 한다)이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1.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란 간행물, TV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형상·모양 등을 말한다.

✖ 예) 만화영화나 게임 등의 등장 캐릭터가 TV나 인터넷 등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그러한 캐릭터는 널리 알려져 있는 형상·모양으로 볼 수 있다.

2.1.2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 사용 등 실시하는 업계(이하 “당업계”라 한다)에서 그 디자인에 관한 평균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당업자”라 한다)을 말한다.

2.1.3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주지의 형상·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거나 그 가하여진 변화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말한다.

(1)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란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이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제조단가 등과 같은 경제적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수준의 ‘단순한 설계변경’을 의미하며 기존과 다른 미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을 예로 들 수 있다.

✖ 예 1) ⊖ 불인정 물품의 모서리 처리를 단순히 모각기(fillet)에서 모따기(chamfer)로 변형한 것으로서 특별한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정도인 경우

✖ 예 2) ⊖ 불인정 주지의 계란형(卵形)을 뚜껑과 몸체로 분리하여 과자 용기로 만드는 것

✖ 예 3) ⊖ 불인정 유명캐릭터를 거의 그대로 인형으로 변형하여 만드는 것

주지의 캐릭터	출원디자인 1	출원디자인 2
	 < 피규어 >	 < 마우스 패드 >

(2)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

(가)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란 해당 물품분야에서 다수의 디자인이 채택하고 있는 흔한 형태적 표현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단지 구성요소의 수, 배치, 비율, 곡률 등을 일부 단순히 변형하는 것과 같이 창작의 난이도가 낮은 것을 말한다.

(나)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예로는 배치의 변경, 구성비율의 변경이나 구성단위 수의 증감, 일부 구성요소의 단순한 삭제, 치환, 구성요소의 조합 등이 있다.

3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유형

3.1 공지디자인 등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3.1.1 공지디자인 등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한 디자인이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디자인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1)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배치변경

✕ 예) 공지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배치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전화기”



(2) 디자인의 구성요소 비율의 변경이나 구성단위 수의 증감

✕ 예) 공지디자인의 구성단위 수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 “벤치”



(3)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유지한 상태로 크기를 확대·축소하거나, 종횡비 등의 비율을 변경

(4)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를 단순히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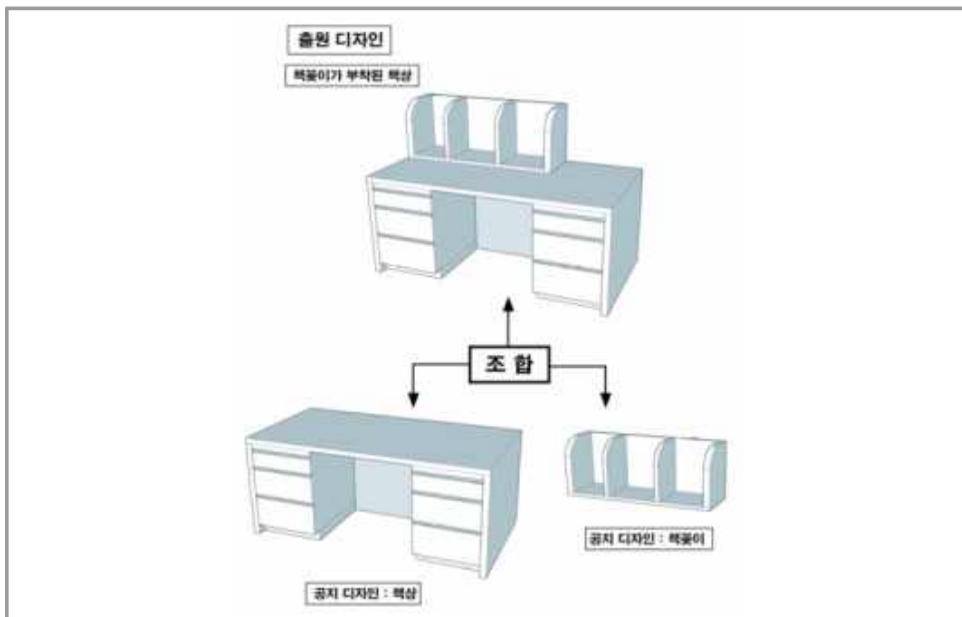
(5)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

✘ 예) 공지의 시계가 부착된 라디오의 시계부분을 단순히 다른 시계의 형상 등으로 치환한 “시계가 부착된 라디오”



(6) 복수의 디자인을 그대로 조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

✘ 예) 공지의 책상 형상에 공지의 책꽂이 형상을 부착하여 이루어진 “책꽂이가 부착된 책상”



3.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이하 “주지의 형상 등”이라 함)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3.2.1 주지의 형상 등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한 것 등과 같은 단순모방 디자인 또는 주지의 형상 등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주지의 형상 등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2.2 주지의 형상, 주지의 모양 등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주지의 평면적 형상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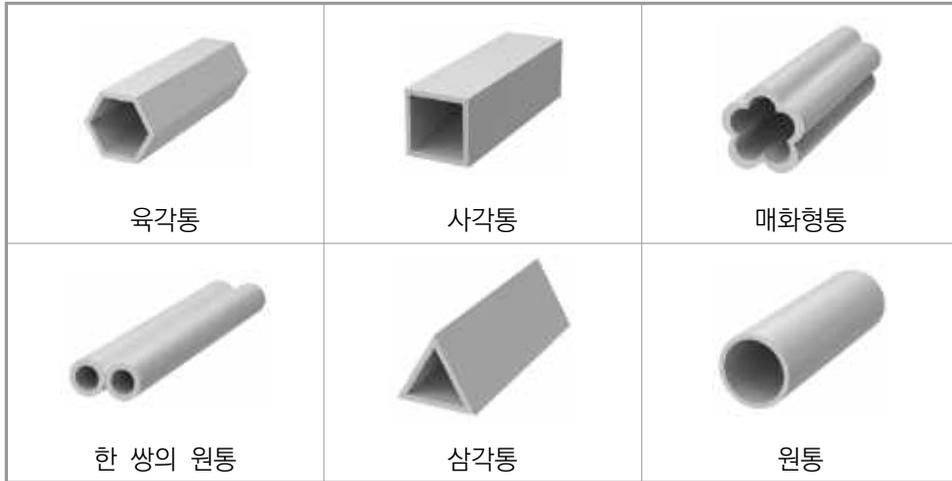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원형	매화형	누에고치형	반지형	별형

(2) 주지의 입체적 형상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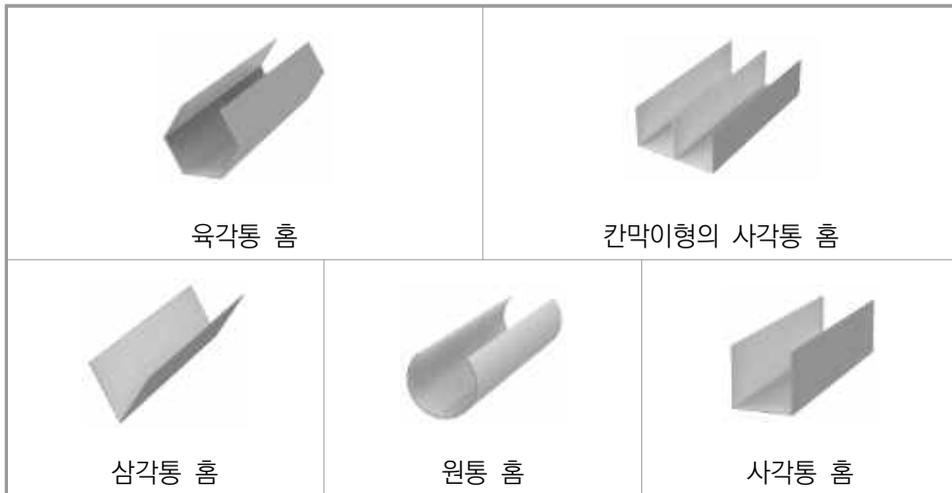
㉞ 기둥

		
삼각기둥	사각기둥	육각기둥
		
매화형기둥	한 쌍의 원기둥	원기둥

㉔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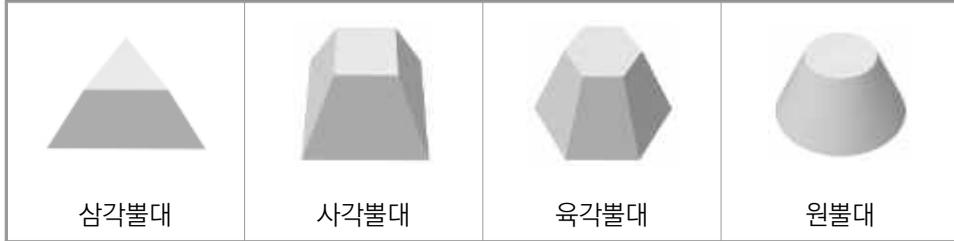
㉕ 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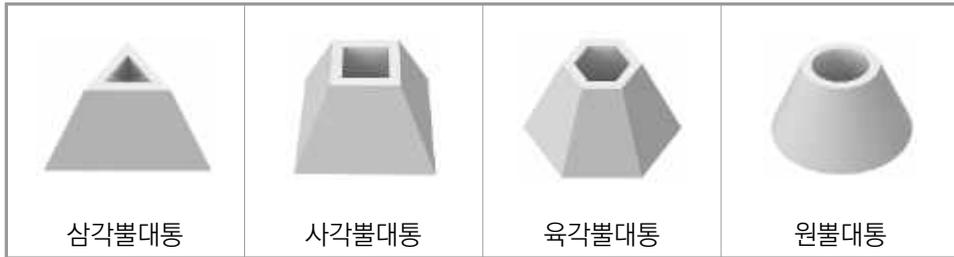
㉖ 볼



㉓ 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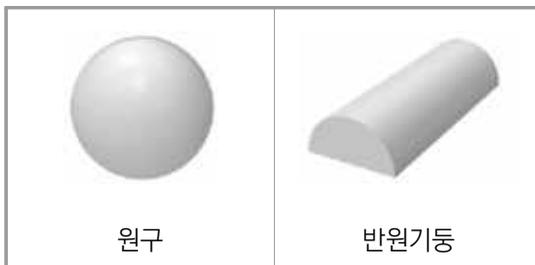
㉔ 뿔대통



㉕ 정다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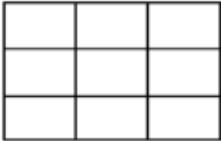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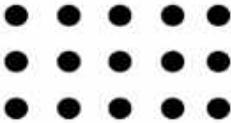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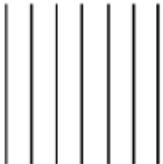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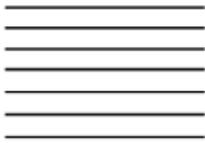


㉖ 기타



II Part 디자인예제의 연구 및 분석에 사유

(3) 주지의 모양(무늬)의 예

<p>모눈패턴(gird)</p> 		<p>도트패턴</p> 
<p>스트라이프(세로)</p> 	<p>스트라이프(가로)</p> 	<p>스트라이프(사선)</p> 
<p>모자이크패턴</p> 	<p>삼각형패턴</p> 	<p>도비패턴</p> 

(4) 물품의 전형적인 형상의 예 : 비행기, 자동차, 기차 등의 전형적인 형상

(5) 흔한 모양의 예 : 봉황무늬, 거북등무늬, 바둑판무늬, 물방울무늬, 끈무늬 등

(6)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조형물, 유명한 경치 등

※ **인정** 다음과 같이 흔한 조형물(예: 돌하르방)이나 경치일지라도 보는 각도에 의하여 특징을 지니도록 표현하거나 원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인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변형을 가했다면「주지의 형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지의 조형물	출원 디자인 1	출원 디자인 2
	 <p>< 과자 ></p>	 <p>< 지압기 ></p>

- ㉔ ㉔ 불인정 새, 물고기, 소, 대나무잎, 꽃잎, 소나무, 나무결, 돌, 바위 등의 자연물
- ※ 자연물이더라도 그 표현방법이 특이한 것은 「주지의 형상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 ㉕ 예) 인정 꽃잎, 곤충의 발 등 자연물의 일부를 특이한 각도에서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본 확대사진 등
- ㉕ ㉔ 불인정 김홍도의 풍속도, 모나리자 등 널리 알려진 그림, 조각, 만화, 영화 등의 저작물
- ㉕ ㉔ 불인정 남대문, 남산타워,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 불국사, 올림픽주경기장 등 널리 알려진 건축물 또는 조형물
- ㉕ ㉔ 불인정 백두산천지, 금강산, 한라산 백록담, 후지산, 나이아가라폭포 등 유명한 경치
- ㉕ ㉔ 불인정 삼일절 행사장면, 올림픽경기 개최장면, 축구경기, 배구경기 등 각종 행사장면이나 경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3.3 공지디자인 등을 주지의 형상·모양 등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3.3.1 공지디자인 등을 주지의 형상·모양 등과 결합한 경우에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3후2613(2016. 3. 10. 선고) 판결 참조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 보아야 한다.

4 판단방법

4.1 창작비용이성의 판단주체

4.1.1 출원된 디자인의 창작 비용이성에 대하여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4.2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등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그 디자인의 결합이 당업계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4.3 디자인의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에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디자인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4.4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해당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3.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유형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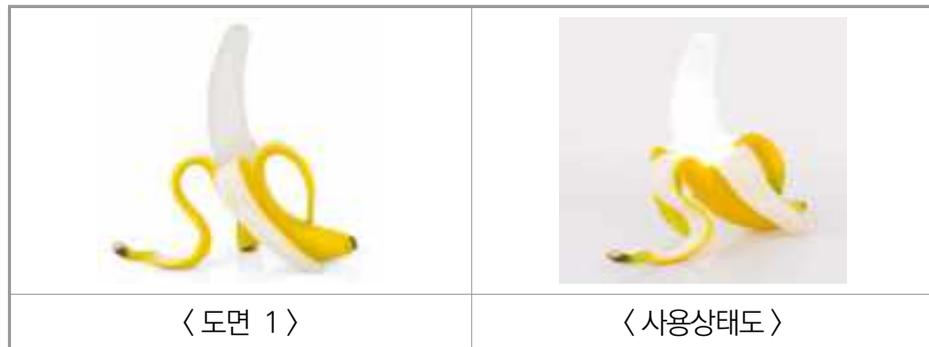
4.5 색채는 색채가 모양을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판단요소로 하고 단일색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창작성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

4.6 출원된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주지 또는 공지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부수적이거나 창작성이 낮아 전체적인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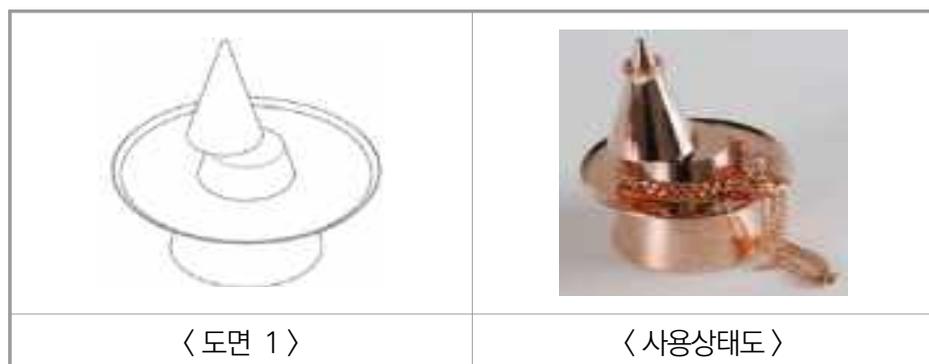
4.7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디자인의 결합이 아닌 하나의 공지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성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대비해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나 창작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8 공지디자인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한 것 등과 같은 단순모방이 아니라 이들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한 것으로서 그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예 1) **인정** 다음과 같은 ‘탁상용 조명’ 디자인은 주지의 바나나 형상을 탁상용 조명으로 전용한 것인데 이를 전용함에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가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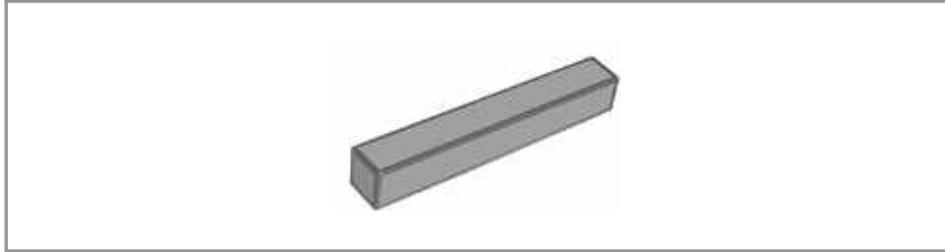


- ✕ 예 2) **인정** 다음과 같은 ‘악세사리용 진열대’ 디자인의 경우 원, 원뿔, 원뿔대 등 주지의 형상을 결합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결합을 해당물품에 전용함에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가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9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기본적 형상·모양 등을 이용하여 물품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창작비용이성 판단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예)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지 않아 등록된 “손거울”



- 4.10 부분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판단기준은 전체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전체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기능 및 용도, 위치, 크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4.11 동적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판단기준은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동적디자인을 이루는 정지상태의 형상 및 모양뿐만 아니라 동적변화의 특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4.1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출원에 앞서 공지된 자신의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 출원된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판단 시 자신의 공지디자인으로 인해 거절되지 않는다.

✕ 예) 전화기의 본체 및 수화기의 디자인이 각각 먼저 공지된 이후 이들을 결합한 전화기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서 전화기 본체와 수화기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 공지디자인은 창작비용이성의 판단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자신의 출원디자인이 미공개 상태임에도 후출원의 거절참증(법제46조)으로 거절이유 통지서에 첨부되어 공지되었다면 공지된 디자인을 결합하거나

이를 기초로 창작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할 때 공지된 디자인을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하면 그 공지디자인은 창작비용이성의 판단근거에서 제외된다.

- 4.1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 중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즉, 위의 “3.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여부]만을 심사한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55조(정보 제공)에 따라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4항에 따라 심사한다.

5 증거의 제시

5.1 창작비용이성에 대한 증거

5.1.1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공지디자인 등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판단기초 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지디자인 등이 게재된 간행물의 서지사항·디자인 또는 해당 디자인이 게재된 웹사이트의 주소·화면 등을 의견제출통지서에 첨부하여 해당 공지디자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1.2 명백한 주지의 형상·모양 등 또는 주지의 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판단기초 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5.1.3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증거는 원칙적으로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를 통하여 출원인에게 제시한다. 다만, 그 형상·모양 등에 의해 물품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 통상 행해지는 형태의 구성이고, 당업자에게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는 사실이 심사관에게 현저한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 예) 완구업계에 실제 자동차를 전부 그대로 자동차 장난감으로 전용하는 방법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6 적용사례

6.1 창작비용이성 판단 시 인용이 가능한 공지디자인의 범위

☞ 창작비용이성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하는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 간에 적용 가능하다.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즉,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예) ㉔ 불인정 창작비용이성 여부 판단 시 출원디자인과 이와 대비되는 디자인이 반드시 동일·유사한 물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대비되는 디자인에 의하여 출원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면 그 출원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디자인은 '화이트보드'에 관한 디자인이고 대비되는 디자인은 책자를 수납하는 '책장'에 관한 디자인이라면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다르나, 두 물품 모두 다 같이 실내에서 설치되고 사용자도 유사하며 모두 가구 업자나 실내장식품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될 것이므로 출원디자인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책장의 디자인을 화이트보드 디자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가능하다.

선공지 디자인	출원 디자인
	
〈 책장 〉	〈 화이트보드 〉

제5장

확대된 선출원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 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특허청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지

선출원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 디자인은 선출원 디자인의 창작자가 이미 창작한 디자인의 일부에 불과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창작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디자인 보호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선출원 디자인의 출원서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까지 선출원의 원칙을 적용하여 후출원을 거절하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두고 있다.

2 적용요건

2.1 선출원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디자인이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다르면 법 제33조(디자인 등록의 요건) 제3항(확대된 선출원)을 적용한다. 다만, 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출원인이 같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 특허법원 2019허7177(2020. 3. 26. 선고) 판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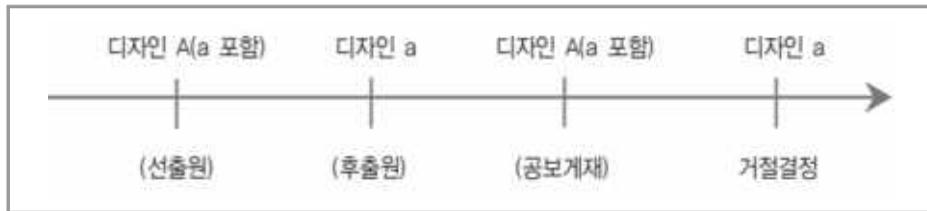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 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출원디자인이 그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보에 게재된 선출원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1.1 선출원 디자인 중 후출원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이 후출원 디자인과 기능 및 용도에 공통성이 있고,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2.1.2 선출원 디자인 중에 후출원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이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

2.1.3 선출원 디자인이 후출원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출원공개[법 제46조(선출원)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불성립(협의불능 포함)으로 거절 결정된 출원의 법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에 의한 공개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등록공고가 된 경우

※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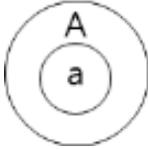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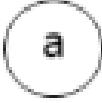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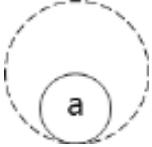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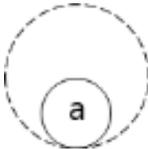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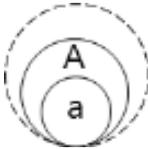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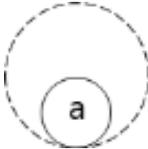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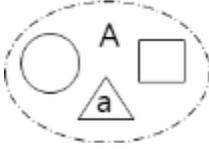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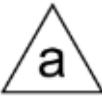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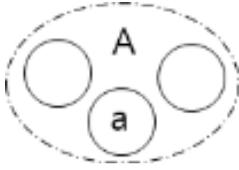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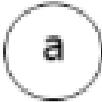


3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형

유형	선출원 디자인 (a를 포함하는 A)	후출원 디자인 (a, a')
1	완성품	부품
2	완성품	부분디자인
3	부품	부분디자인
4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5	한 벌의 물품	구성물품
6	합성물	구성각편

※ 선출원 디자인(a를 포함하는 A)이 디자인등록출원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되거나 협의불성립(협의불능 포함)으로 거절결정되어 공보에 게재된 경우, 선출원 디자인이 출원공개 등이 되기 이전에 출원된 후출원 디자인(a, a')은 확대된 선출원으로 거절결정한다.

※ A>a, a≐a'의 관계임

선출원 디자인(A)	후출원 디자인(a,a')	
 <p data-bbox="417 564 498 594">완성품A</p>	 <p data-bbox="757 564 854 594">부품 a,a'</p>	 <p data-bbox="1059 564 1206 594">부분디자인a,a'</p>
 <p data-bbox="368 835 545 897">부품A (a를 포함하는 A)</p>	 <p data-bbox="731 850 878 880">부분디자인a,a'</p>	
 <p data-bbox="368 1138 545 1199">부분디자인A (a를 포함하는 A)</p>	 <p data-bbox="731 1152 878 1183">부분디자인a,a'</p>	
 <p data-bbox="368 1416 545 1477">한 벌의 물품A (a를 포함하는 A)</p>	 <p data-bbox="752 1426 861 1457">구성품a,a'</p>	
 <p data-bbox="374 1731 553 1792">합성물A (a를 포함하는 A)</p>	 <p data-bbox="742 1741 870 1772">구성각편a,a'</p>	

4 판단방법

4.1 선출원 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한 판단은 출원 및 보정 시 제출된 다음의 도면을 기초로 한다.

4.1.1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 글자체디자인의 경우에는 지정 글자도면, 보기문장도면 및 대표글자도면

4.1.2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디자인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 단면도, 확대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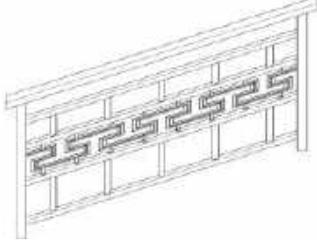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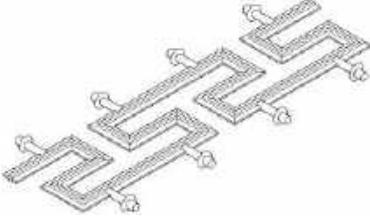
4.1.3 부분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파선으로 표현된 부분 등을 포함한 전체디자인 중에 후출원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이 대비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전체를 표현하는 정·배면도, 평·저면도, 좌·우측면도, 사시도 등의 필수도면과 디자인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및 사용상태도 등은 후출원된 부분디자인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갖는다.

4.1.4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구성물품에 관련되는 디자인에 대한 각각의 도면, 구성물품을 조합한 1조의 도면

4.1.5 선출원이 전체디자인이며 후출원이 부분디자인일 때 부분디자인과 충분히 대비가능한 정도로 표현된 전체디자인의 정·배면도, 평·저면도, 좌·우측면도, 사시도 그리고 전개도, 단면도, 세부확대도 및 사용상태도 등

4.2 선출원 디자인의 물품과 후출원 디자인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출원 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선출원 디자인【법 제46조(선출원)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불성립(협의불능 포함)으로 거절결정된 출원의 법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계제)에 의한 공개를 포함한다】의 일부와 대비되는 후출원 디자인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한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디자인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 예) 다음 사례와 같이 선출원은 ‘계단난간’에 관한 디자인이고 후출원은 ‘난간 편’으로 서로 동일한 물품이 아니나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적용했다.

선출원 디자인(출원공개)	출원 디자인
 <p data-bbox="465 629 586 660">“계단 난간”</p>	 <p data-bbox="984 629 1085 660">“난간 편”</p>

4.3 후출원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 확정【출원공개 또는 법 제56조(거절 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에 따른 공보게재 전에 무효·취하·포기된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등록결정이 있는 후 법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1항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항(확대된 선출원)을 적용하지 않고 등록여부결정을 한다.

4.4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법 제33조 제3항)의 출원일은 법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1항(법 제33조 및 46조를 적용할 때 제1국에 출원한 날을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로 인정)에 따라 우선권 주장에 기재된 제1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5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법 제33조 제3항)의 출원일은 국제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6 확대된 선출원 규정(법 제33조 제3항)의 적용을 위한 선출원 디자인과 후출원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은 제3부 디자인의 유사여부의 “제1장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부분을 참조한다.

4.7 법 제33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은 선출원 디자인의 출원일 다음날부터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공개디자인공보[법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에 따른 디자인공보를 포함한다] 또는 등록디자인공보의 발행일까지 출원된 디자인 등록출원(등록공보의 발행일에 출원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비밀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공보의 발행일은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을 말한다.

다만,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공보의 발행시간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이 분명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 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한다.

- 4.8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항을 적용할 때에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공개디자인공보 또는 등록디자인공보의 발행일[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가 발행된 날을 말한다] 이전에는 후출원에 대하여 심사보류통지를 하되, 다음 예와 같이 필요시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통지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거절이유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한다.

✕ 예) 선출원이 공개 등이 되지 않아 심사보류통지를 하는 경우의 기재

☞ “타인의 선출원(제30-2011-0000000호) 디자인은 공개되지 아니한(또는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출원인 관계로 자료 첨부가 불가하오니, 필요시 열람을 청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열람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4.9 위 4.8에 따라 심사보류된 후출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한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후출원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공개디자인공보 또는 등록디자인공보의 발행일[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가 발행된 날을 말한다] 이후에 거절이유통지를 한다.

- 4.10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55조(정보 제공)에 따라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5 적용사례

5.1 먼저 출원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인의 디자인이 동일자의 출원인 경우 확대된 선출원 규정(법 제33조 제3항)의 적용기준

☞ 확대된 선출원 규정(법 제33조 제3항)의 적용은 당해 출원일 전에 타 출원이 있고 당해 출원 후에 타 출원의 출원공개 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동일자 출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제6장

관련디자인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 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20.>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II

Part

디자인제도의 연건 및 부속제 사유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1 취지

디자인은 모방이나 변형을 통해 비교적 쉽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디자인을 별도의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모방과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침해에 신속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디자인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관련디자인제도는 디자인 등록출원 이후에 개량·변형한 유사디자인을 별도 권리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 관련디자인의 정의

2.1 “관련디자인”이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동일자 출원을 포함하며, 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말한다.

2.2 법 제35조(관련디자인)에 따른 관련디자인이란 다음의 경우와 같다.

✕ 예)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

유 형	기본디자인(A)	관련디자인(A')
	등록	후출원
	선출원	후출원
	동일자 출원	동일자 출원
1	완성품	완성품
2	부품	부품
3	한 벌의 물품	한 벌의 물품
4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 등록된 A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선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 A디자인이 등록되는 경우 이와 유사한 자기의 후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 A'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A≐A'의 관계임).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은 원칙적으로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

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면 자기의 후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 ✕ 예) 다음 사례와 같이 기본디자인은 피부마사지기의 전체디자인이고 자기의 후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은 피부마사지기의 부분디자인으로,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문자부분으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하므로 관련디자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기본디자인이 부분디자인이고 관련디자인이 전체디자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 ※ 선출원된 복수디자인출원 중 하나의 일련번호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또는 복수디자인출원 중 하나의 일련번호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정할 수 있다.

- (1) 선출원 복수디자인출원 중 하나의 일련번호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정하는 경우

선출원 복수디자인	후출원 복수디자인
001. 기본디자인A 002. 기본디자인B	001. 관련디자인A' 002. 관련디자인B'

- (2) 복수디자인출원 중 하나의 일련번호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정하는 경우

복수디자인
001. 기본디자인A 002. 관련디자인A' 003. 관련디자인A" 004. 기본디자인B 005. 관련디자인B' 006. 디자인C

3 적용요건

- 3.1 관련디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을 전제로 하므로 그 기본디자인은 관련디자인 등록출원 전 또는 동일자에 존재해야 하고,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하며 그 출원일보다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출원디자인, 등록디자인, 공지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

※ 기본디자인이 등록결정 전이거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은 등록결정할 수 없다.

- 3.2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23년 12월21이후 출원된 디자인은 3년)이 경과하여 출원된 것이라면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 다만, 관련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보정했고 기본디자인과 유사하다면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6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거절할 수 있다.

3.3 기본디자인이 2014년 6월 30일 이전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인 경우에, 관련디자인이 2015년 7월 1일 이후 출원된 것이라면 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

※ 법 개정(법률 제11848, 2014. 7. 1. 시행)에 따라 관련디자인은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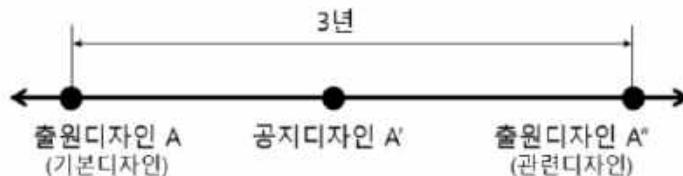
3.4 자기의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2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 즉 자기의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3.5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

4 판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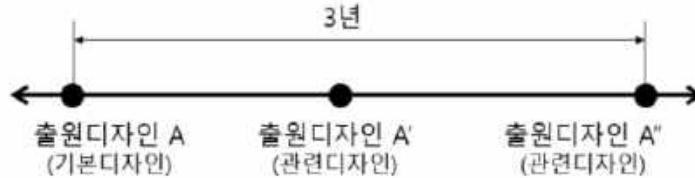
4.1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기본디자인등록출원일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일 사이에 공지된 자기의 기본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해 거절(법 제33조 제1항 신규성 요건)되지 않는다.

✕ 예) 관련 디자인 A"는 기본디자인 A와 동일·유사한 자기의 공지디자인 A'로 인해 거절되지 않는다. 단, 동일·유사한 타인의 공지된 디자인이 존재할 경우 거절될 수 있다.



4.2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기본디자인등록출원일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일 사이에 출원된 자기의 또 다른 관련디자인으로 인해 거절(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선출원 요건)되지 않는다.

✳ 예) 관련디자인 A"는 기본디자인 A와 유사한 자기의 또 다른 관련디자인 A'로 인해 거절되지 않는다.



4.3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기본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다.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물품 또는 용도가 다르더라도 혼용가능성이 있는 물품이다.

※ 기본디자인에 관한 물품과 관련디자인에 관한 물품이 반드시 동일한 분류에 속할 필요는 없으며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물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4.4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4.4.1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이 정당할 경우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일치되도록 한다.

4.4.2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보다 정당하거나 적합할 경우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4.5 무효심판 또는 이의신청에 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가거절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

4.6 기본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보류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가거절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

4.7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법 제35조(관련디자인)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3항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다만, 법 제55조(정보 제공)에 따라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5 적용사례

5.1 관련디자인등록출원 후에 기본디자인권이 소멸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관련디자인의 등록 가능 여부

☞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 결정 시에 기본디자인이 설정등록되었거나 등록결정되어야만 관련디자인으로 등록 가능하다. 따라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 후에 기본디자인권이 소멸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관련디자인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 제2항에 따라 단독디자인으로 보정을 권할 수 있다.

※ 등록된 관련디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이 무효, 취하, 포기(등록료 미납 등)되어도 존속한다.

5.2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한 경우 거절이유 통지시 디자인심사출원과 달리 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62조 제3항을 적용한다.

☞ 디자인일부심사의 경우 관련디자인표시란에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재한 경우(관련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기재), 기재한 기본디자인이 무효, 취하,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제7장

선출원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46조(선출원)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특허청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II

Part

디자인제도의 연구 및 부속예사유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43조(협의 결과의 신고)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등록 출원인을 정하여 신고하려는 자 또는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 출원인을 정하여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경합(競合)하는 자 모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변경 신고에 대하여 협의 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

제54조(동일출원의 심사)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1 취지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2 이상의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출원되어 경합하는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이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디자인권의 중복을 배제하고자 함이다.

2 적용요건

2.1 동일하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디자인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경우에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출원인[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법 제46조(선출원)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2 동일하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디자인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경우에 출원인이 협의(시행규칙 제43조 참조)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인[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법 제46조(선출원)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협의(동일 출원인인 경우 선택) 불성립시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모두 거절결정되며 공개된다.

2.2.1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출원 중 어느 한 출원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2.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2항에 따라 등록결정 전에 이를 심사하지 않지만, 법 제55조(정보 제공)에 따라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4항에 의해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3 적용유형 및 선출원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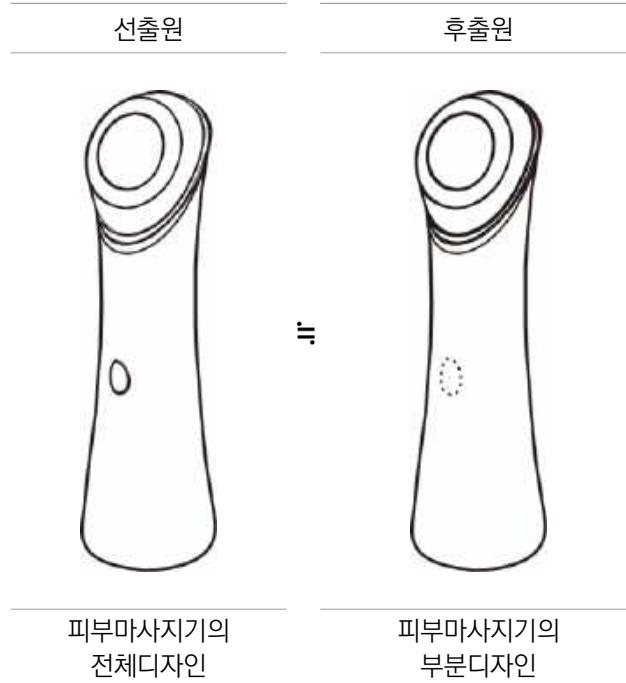
3.1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는 유형

유형	선출원 디자인(A)	후출원 디자인(A, A')
1	완성품	완성품
2	부품	부품
3	한 별의 물품	한 별의 물품
4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은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에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 **선출원주의 적용** 예)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피부마사지기 중간에 위치한 버튼으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하므로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피부마사지기의 부분디자인을 출원한 후 피부마사지기의 전체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 동적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동적디자인과만 선출원을 적용한다. 그러나 동적디자인과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디자인 간의 경우에는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및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디자인과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다만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A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A, A'디자인은 A디자인이 3.2에서 규정한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선출원 규정을 적용한다.

3.2. 선출원의 지위가 있는 출원

3.2.1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선출원

3.2.2 법 제46조(선출원) 제2항 후단에 의해 협의불성립(협의불능 포함)으로 거절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선출원

※ 법 제46조(선출원)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불성립 또는 협의 불능에 해당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출원에 대하여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동일인에 의한 재출원 또는 제3자의 후출원이 등록될 수 있어 선출원자와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함.

3.2.3 2007년 6월 30일 이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출원을 포기하거나 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선출원

4 판단방법

4.1 선출원 디자인과 후출원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은 제3부 디자인의 유사여부의 “제1장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부분을 참조한다.

4.2 하나의 디자인을 각각 사진(컴퓨터 렌더링 포함), 선도(線圖), 셰이딩(shading, 무채색 음영구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경우, 디자인의 동일·유사판단에서 상호간 유사로 판단한다(다음 그림 참조).



4.3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이전이나, 법 제46조(선출원) 제2항 후단의 협의불성립(협의불능 포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한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필요시 선출원을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후출원에 대하여 심사보류통지를 한다. 다만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거절이유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통지를 한다.

※ 예) 설정등록이나, 협의불성립(협의불능 포함)에 의한 거절결정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심사 보류통지를 하는 경우의 기재

“타인의 선출원(제30-2011-0000000호)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또는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것이므로) 자료첨부가 불가하오니, 필요시 열람을 청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열람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타인의 공개되지 않은 선출원 디자인이 후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에 거절이유의 근거로 첨부되어 통지된 경우에 그 선출원 디자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에게 알려진 것이므로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 제1호의 공지디자인에 해당한다.

※ 후출원의 거절참증으로 인용된 타인의 미공개 선출원디자인이 거절이유 통지서에 첨부되어 공지되면서 신규성을 상실한 후에 다시 출원된 경우,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 각 호를 적용할 때에는 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따라 처리한다.

4.4 위 4.3에 따라 심사보류된 후출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이 설정등록[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이 되거나, 협의불성립(협의불능 포함)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선출원 디자인이 2007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경우에는 포기,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 후출원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한다.

4.5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전까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법 제46조(선출원) 제1항을 적용한다.

4.6 선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 되기 전에 법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된 경우에 그 선출원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 제2호의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 4.7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나, 등록결정이 있는 후 법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1항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 및 법 제83조(등록료의 보전) 제2항에 따른 등록료의 보전기간이 지난 후에도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법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법 제46조(선출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후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한다.
- 4.8 선출원에 의한 등록디자인이 법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에 따른 무효심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후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와 함께 심사보류통지를 한 다음 무효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한다.
- 4.9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다른 날에 동일인이 출원하면 후출원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 통지한다. 다만, 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으로 보정하면 등록될 수 있다는 취지를 거절이유와 함께 통지한다. 또한 유사한 디자인을 다른 날에 동일인이 출원했으나 먼저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이 협의불성립(협의불능 포함)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이 디자인의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그 후의 유사한 디자인등록출원은 법 제46조(선출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모두 거절된다.
- 4.10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6조(선출원) 제2항(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같은 날 출원)을 적용에 관한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4.10.1 둘 이상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타인이 출원한 경우
- (1) 특허청장 명의로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협의결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한 후 협의에 따라 정해진 하나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고 나머지 출원은 거절이유를 통지한 다음에 거절결정을 한다.
 - (2) 출원인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한 다음에 거절결정을 한다.
 - (3) 기간 내에 협의결과를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한 다음에 거절결정을 한다.
 - (4) 지정기간 내에 복수의 협의결과를 신고가 있었으나, 그 신고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4.10.2 둘 이상의 동일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 (1) 특허청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하나의 출원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 (2) 지정기간 내에 선택결과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 (3) 지정기간 내에 복수의 선택결과의 신고가 있었으나, 그 신고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 (4)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사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법제56조에 따라 공보발행을 의뢰한다.
- (5) 거절결정이나 거절결정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되 법 제34조제2호(공서양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10.3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 (1) 특허청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하나의 출원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다만, 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취지를 거절이유와 함께 통지한다.
- (2) 지정기간 내에 선택결과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 (3) 지정기간 내에 복수의 선택결과의 신고가 있었으나, 그 신고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 (4)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심사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법 제57조에 따른 공보발행을 의뢰한다.
- (5) 거절결정이나 거절결정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되 법제 34조제2호(공서양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적용사례

5.1 파리조약에 따른 조약 우선권주장을 동반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및 분할출원의 법 제46조(선출원)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기준일의 판단방법

☞ 우선권 주장을 동반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일 경우 법 제46조(선출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적용 시에는 제1국에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5.2 甲의 디자인 A는 출원(2020.10.1) 후 디자인의 형태를 일부 변경하는 보정서를 제출(2020.12.1.)하여 그 보정내용이 요지변경에 해당함에도 디자인 A'로 등록(2021. 2. 1.)되었다. 그러나 乙이 甲의 등록디자인 A'와 유사한 디자인 A''를 2020.11.1. 출원한 경우 乙의 디자인 A'' 대하여 법 제46조(선출원)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음

☞ 甲의 등록디자인 A'는 출원디자인 A와 대비하여 요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착오로 등록되었으므로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보정서 제출일인 2020.12.1.을 출원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甲의 등록디자인 A'는 乙의 출원일인 2020.11.1.보다 앞서 출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乙의 출원디자인 A''에 대하여는 甲의 출원디자인 A를 이유로 법 제46조를 적용할 수 없다.



제8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군기령 ▼

제3조(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합참기·각군기·부대기·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1. 합참기 : 합동참모본부기를 말한다.
2. 각군기 : 육군기·해군기 및 공군기를 말한다.
3. 부대기 : 육군의 연대급(독립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이상의 부대, 해군의 전대급 이상의 부대, 공군의 전대급(전투비행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를 말한다.
4. 병과기 : 군인사법 제21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각군의 병과별 기를 말한다.
5. 소부대기 : 제2호의 부대기를 사용하는 부대 외의 부대의 기를 말한다.

상훈법 ▼

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12. 과학기술훈장

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12. 과학기술포장

1 취지

① 국기 등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② 타인의 업무에 관련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부정경쟁을 유발하고 경업질서를 해칠 수 있으며, ③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시각을 통한 미감을 보호하는 법 목적에 반하므로, 다른 등록요건을 구비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적용요건

2.1 국기, 국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1.1 국기, 국장(國章), 군기, 훈장, 포장(褒章),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또는 이들을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은 법 제34조(등록을 받을 없는 디자인) 제1호를 적용한다.

- (1) “국장(國章)”은 국가의 권위를 나타내는 휘장을 일컫는 용어로서 「나라문장 규정」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문서,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을 규정하고 있다.
- (2) “군기(軍旗)”는 국군이 사용하는 기(국군조직법 제5조)로서, 합참기, 각군기, 부대기, 병과기, 소부대기를 말한다.(군기령 제3조)
- (3)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서훈(敍勳)을 말한다.(상훈법 제2조)
- (4) “기장(紀章)”이란 어떤 일을 기념하거나 어떤 집단을 포상하기 위해 주는 휘장이나 표상을 말한다.(상이기장령, 군인유족기장령)
- (5) “표장”은 공공기관 등의 주된 마크(심벌)를 말하고, “문자” 나 “표지”는 국제기관 등의 명칭(로고타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그 밖에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관 등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이하 “공익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6) 공공기관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중앙 또는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법상의 영조물법인과 그 대표기관 및 산하기관을 말하며, 국제기관이라 함은 어떤 국제적인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 두 나라 이상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7) “공법상의 영조물법인”이란 공적 목적의 행정을 영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인적, 물적 결합체인 공법상 영조물로서 권리능력이 있는 행정의 단일체를 말하며, 한국방송공사, 국립의료원이 이에 해당한다.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의 예시〉

국기	국장	군기	보국훈장	건국포장
				

〈 기장의 예시 〉

대한민국 군인유족기장	6.25 참전용사 호국영웅기장
	

〈 국제기관의 표장 예시 〉

				
세계보건기구	WTO 세계무역기구	OPEC 세계석유수출국기구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IAEA 국제원자력기구

〈 공공기관의 표장 예시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8)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관 등이 자기의 표장, 문자, 표지 또는 자기의 공익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출원하거나 자기의 출원디자인의 일부 구성 요소로 포함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9) 타인이 공공기관의 표장, 국제기관의 문자나 표지 또는 공익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출원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출원한 경우에 적용한다.
- (10) 다음 사례와 같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국기(외국의 국기를 포함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당한 변화를 가해 국가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기에 아무런 변화를 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II Part 디자인예제의 연구 및 분석에 사유

※예) 인정 태극기를 모티브로 창작한 디자인



- (11) 국가는 국제기관 등이 아니므로 국가의 명칭은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2.2.1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은 법 제34조 (등록을 받을 없는 디자인) 제2호를 적용한다.

- (1) 인륜, 사회정의 또는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
- (2)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3) 저속·혐오 또는 외설스러운 것
- (4)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하는 것
- (5) 저명한 타인의 초상.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저명”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지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널리 알려진 연예인, 스포츠선수 또는 국내외 유명인사 등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그와 관련된 물품의 규격이나 품질 등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를 전체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 공공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2.3.1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다음의 디자인은 법 제34조(등록을 받을 없는 디자인) 제3호를 적용한다.

(1)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경우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주지·저명하지 않은 타인의 상표·단체표장·증명표장이 디자인에 표현되어 있으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의 우려가 없다면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특허법원 2012허3916(2012. 8. 16. 선고) 판결 등 참조**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디자인은 그 자체로는 상품의 식별표지는 아니지만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출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가 그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을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으로 그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으며, 특히 그 타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상품 및 이에 사용된 디자인이나 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인 경우에는 타인의 업무상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등록된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상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저명한 상표, 저명한 서비스표, 기타의 마크나 상표적 기능을 발휘하는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물론, 타인의 상표나 디자인의 모티브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이 타인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도 본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3. 10. 9. 선고 2003허2836 판결, 특허법원 2004. 4. 23. 선고 2004허134 판결, 특허법원 2012. 8. 16. 선고 2012허3916 판결 등 참조).

✧ 예 1)

출원 디자인



타인의 저명한 입체상표



✦ 예 2)



- (2)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경우(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3) 상표적인 성격을 갖춘 타인의 저명한 디자인(널리 알려진 캐릭터를 포함한다)을 일부 구성요소로 하는 것
-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그와 관련된 물품의 규격이나 품질 등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를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라 인증에 관한 정보전달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5) 군복 및 군용장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그와 관련된 물품의 디자인으로 표현한 경우
 -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군복 및 군용장구(배낭, 모포, 수통, 침낭 등)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물품의 디자인으로 표현하여 군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2.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2.4.1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법 제34조 (등록을 받을 없는 디자인) 제4호를 적용한다.

2.4.2 물품의 기술적 작용,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대체할 수 있는 형상이 존재한다면 기능적으로 필수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 (2) 기능적 형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새로운 심미감이 도출된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예) **㉠ 불인정** ‘자동차용 윈드 쉴드 글래스’디자인의 경우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디자인등록이 무효됨



〈사시도〉

*** 대법원 2004허4976(2005. 2. 24. 선고)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인 “자동차용 윈드 쉴드 글래스”는 자동차의 앞 유리로서 특정한 자동차의 내·외부 환경을 유리로 차단하고, 운전자의 시야 및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실, 통상적으로 자동차용 앞 유리는 자동차의 프레임에 장착할 때에 유리의 하단은 차체의 후드 패널부와 연결되고, 측면은 프런트 필러, 상단은 루프 패널부와 결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을 디자인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프레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당 차종의 프레임 치수, 형상, 휘어짐, 두께, 높이, 넓이, 끝단의 형상 등 다른 물리적 특성까지도 그대로 복제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접속이 가능하더라도 불량하게 되어 안전을 위협하는 등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자동차 앞 유리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가 자동차 앞 유리의 창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 2.4.3 물품의 호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표준규격 등에서 규정한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으로 판단한다. 단, 규격을 정한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예) 규격봉투, USB 규격포트 등

※ 「표준화된 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한 한국산업표준(KS), 국제표준화기구의 ISO규격 등 법률과 공적인 표준화 기관에 의해 확정된

“공적인 표준 규격”과 공적인 규격은 아니나 그 규격이 당해 물품분야에 있어서 업계 표준으로서 인지되고 있고, 당해 표준규격에 기초한 제품이 그 물품의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규격으로서의 명칭, 번호 등에 따라 표준이 되어 있는 형상, 척도 등의 상세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표준 규격”을 말한다.

※ 표준규격 등과 관련된 형상, 모양 등은 기능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형상인지여부는 물론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여부도 판단되어야 한다.

3 판단시점

3.1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해당여부 판단시점

3.1.1 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한다.

3.1.2 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한다.

4 판단방법

4.1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해당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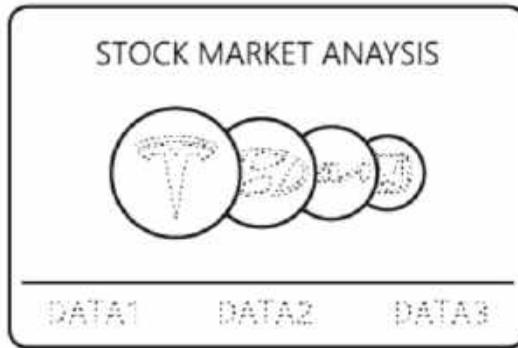
4.1.1 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출원디자인의 전체뿐만 아니라 1부분, 1부품 또는 1구성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1.2 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4호는 출원디자인의 전체 형상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4.1.3 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 적용에 있어 부분디자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분디자인의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포함하여 물품 전체의 형태를 판단 대상으로 한다.

4.1.4 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 적용에 있어 도면은 원칙적으로 참고도면을 포함하여 판단대상으로 한다.

☞ **인정** 다음과 같은 화상디자인출원의 경우 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하는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법 제34조제3호에 해당하는 형태(예: 타사의 표장)가 표현되어 있으나 주식거래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정보표시용 화상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예시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므로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없으므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보표시용 화상〉

제9장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 등록출원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 9. 24., 2020. 8. 28.>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1 취지

디자인등록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이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명확히 하여 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함이며, 물품의 명칭은 물품의 용도 및 기능 파악, 1디자인 1물품 여부, 동일·유사물품 여부, 디자인의 권리범위 판단 등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2 디자인 물품

2.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1.1 물품류 및 물품의 구분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에 근거하여 용도와 기능 등을 기준으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 목록」에 따른다.

[심사관 참고]

☞ 위의 2.1.1은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2.1.2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되어 그 구성하는 물품의 물품류 구분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1) 심사·일부심사대상이 함께 구성된 경우에는 심사대상물품류 구분을 기재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물품류가 2 이상인 경우 아래 (가), (나)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 (가) 구성 물품의 수가 많은 물품으로 물품류 구분을 기재한다.
 - (나) 구성 물품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하나의 물품류 구분을 기재한다.
- (2) 심사대상 또는 일부심사대상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위 (1)의 (가), (나)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 예) 2 이상의 물품류가 포함된 한 벌의 물품의 물품류 기재 예

물품류 구분	물품의 명칭	구성물품 (물품류 구분)
26 또는 06	한 벌의 전기스탠드 및 테이블 세트	전기스탠드 (26-05) 테이블 (06-03)

2.1.3 물품류 및 물품의 구분은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된 물품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품 간의 유사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3후1901 판결(2004. 11. 12. 선고) 참조**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디자인 보호법시행규칙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류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류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2.1.4 물품류 또는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 등록출원) 제2항에 위반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2.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

2.2.1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다음의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다.[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규칙 제38조(물품류 구분 등)제3항]

- (1) 제1류(식품)
- (2)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 (3) 제3류(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 (4)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 (5) 제9류(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 (6) 제11류(장식용품)
- (7)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2.2.2 일부심사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류에 속하지 않는 물품이 일부심사출원된 경우에는 법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제4항 전단에 위반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2.2.3 일부심사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이 심사출원된 경우에는 법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제4항 후단에 위반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물품의 명칭 기재방법

3.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기재방법

- 3.1.1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에서 하나의 물품을 지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 3.1.2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에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디자인을 인식하는 데 적합한 명칭을 적되,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어야 한다.
- 3.1.3 실제 거래계에서 물품의 일반화된 명칭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용도를 최소한도로 규정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용 부재” 등의 명칭도 가능하다. 다만,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없이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은 등록받을 수 없다.

✖ 예) **인정** 창틀용 부재, **⊗ 불인정** 건축용 부재

- 3.1.4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 벌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이 없는 때에는 각 구성 물품의 명칭을 나열하여 기재한다.

✖ 예) **인정** 한 벌의 우비, 장화 및 우산세트

- 3.2 물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2항에 위반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3.2.1 물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예 1) 경첩(부적합), 안경용 경첩(적합)

✖ 예 2) 입력장치(부적합), 휴대용 문자입력장치(적합), 자동차 내부차체(적합)

✖ 예 3) **㉔ 불인정** 도면에는 ‘물병’이 도시되었으나 물품명칭을 ‘스탠드’로 기재

✖ 예 4) **㉔ 불인정** 도면에는 ‘문짝’이 도시되었으나 물품명칭이 ‘건축용품’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출원서 및 도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도 디자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3.2.2 상표명 또는 ○○식 ○○ 등과 같이 고유명사를 붙인 경우

✖ 예) 홍길동식 타자기(×).

[심사관 참고]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

자동식○○, 접철식○○, 접이식○○, 독립형○○, 회전식○○, 조립식○○, 이동식○○와 같이 보통명칭화된 경우

3.2.3 출원서 및 도면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물품의 효능 또는 작용 효과를 명칭으로 기재한 경우

✖ 예) **㉔ 불인정** 최첨단 전화기, 건강 안마기 등

[심사관 참고]

☞ 물품 명칭에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물품”, “사용주체”, “사용방법” 등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물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물품명 기재방법 〉

구 분	물품의 명칭
적용 대상물품에 따른 용도의 기재	“안경용 경첩” “문짝용 경첩” “가구용 도어 손잡이”
사용주체에 따른 용도의 기재	“동물용 신발” “환자용 신발” “유아용 모자”
사용방법에 따른 용도의 기재	“케이블 고정용 브라켓” “프레임 연결용 브라켓” “6인용 게임기” “5G 통신용 안테나 지지장치”

3.2.4 물품명의 일부분이 생략된 경우

✕ 예) ⊕ 불인정 16밀리(부적합), 인정 16밀리 영화촬영기(적합)

3.2.5 외국문자를 사용한 경우

✕ 예) ⊕ 불인정 Oral Irrigator(부적합), ⊕ 불인정 Vehicle(부적합)

[심사관 참고]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

- (1) 물품명에 외국문자를 괄호로 함께 적는 경우
(예) 디스펜서용 병(Dispensing Bottle), 골프 클럽 헤드(Golf Club Head)
- (2) 보통명칭화 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예) LED 전구, LCD 모니터, AI셋톱박스 거치대, Smart Watch, MP3 Player, Cellular Phone

3.2.6 보통명칭화 되지 않은 외국어를 한글로 기재한 경우

✕ 예 1) ⊕ 불인정 미러: 거울(mirror)로 적어야 적합

✕ 예 2) ⊕ 불인정 퍼펫: 인형(puppet)으로 적어야 적합

✕ 예 3) ⊕ 불인정 스페큘룸: 거울(speculum)로 적어야 적합

[심사관 참고]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

- (1)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에 따른 물품의 명칭과 이에 상응하는 물품의 명칭
- (2) 규칙 [별표 5](한 별의 물품의 구분)에 따른 한 별의 물품의 명칭

3.2.7 한 별(한별의 물품이 아닌 것), 한 세트, 유닛(치과용 유닛 제외), 한 짝, 한 켤레, 1족(足)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심사관 참고]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

- (예) 규칙 [별표 5](한 별의 물품의 구분)에 따른 한 별의 물품의 명칭인 경우
- (예) 치과용 유닛

3.2.8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경우

✕ 예) ⊗ 불인정 우체통 형상의 저금통, 무궁화 꽃이 그려진 연필꽂이, 노란색의 전화기

[심사관 참고]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
(예) 명칭에 기재한 형상, 모양, 색채가 도면 등 출원서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

3.2.9 재질명을 붙인 경우

✕ 예) ⊗ 불인정 목재 책상, 왕골방석, 플라스틱 컵

[심사관 참고]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
(예) 명칭에 기재한 재질이 도면 등 출원서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

3.2.10 부분디자인에 관한 출원에서 “○○의 부분”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예) “전화기의 버튼부분”(부적합)→“전화기(적합)“

제10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 등록출원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 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II

Part

디자인보호법의 연건 및 부속법률 사유

-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여행/신변용품), 제5류(섬유제품), 제9류(포장용기), 제11류(장식용품) 및 제19류(문구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1 취지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의 간편성, 디자인권의 파악 및 권리이전의 명확화, 분류의 용이성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적용요건

2.1.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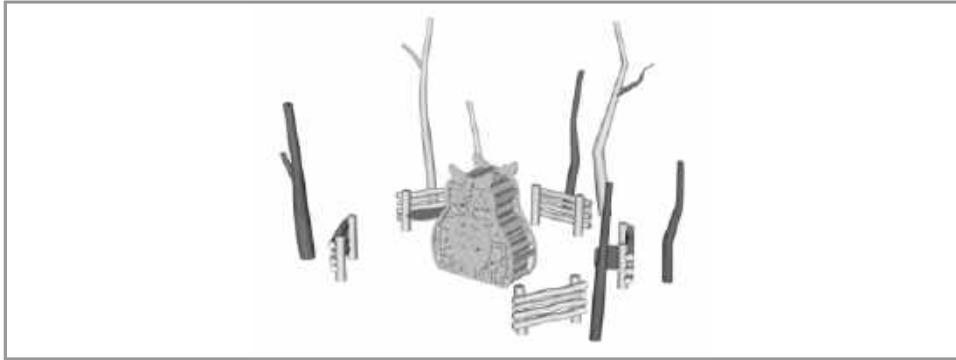
2.1.1. “1디자인”이란 1물품에 대한 1형태를 말한다.

* 대법원 93후1247 판결(1994. 9. 9. 선고) 참조

1디자인이란 특정한 1물품에 대한 특정한 1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1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 구성, 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며, 1디자인 1출원의 원칙에 위배된 디자인 등록출원은 거절의 이유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원칙에 위배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잘못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1.2.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 예) **인정** 다음과 같은 ‘옥외용 조형물’ 디자인의 경우 구성요소들이 물리적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거래관행상 하나로 조합되어 거래 및 실시되므로 1물품 디자인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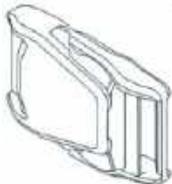


3 판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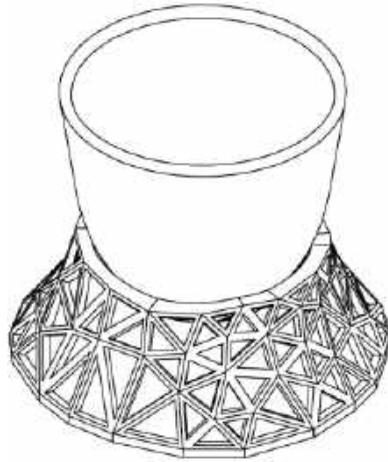
3.1.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예

3.1.1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자명한 경우 구성물의 도면만으로는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예시와 같이 결합된 완성품상태를 도시하여야 한다.

✘ 예) 신사복(상, 하), 투피스(상, 하), 찻잔과 받침접시, 찬합, 장기짚, 트럼프, 화투, 마작패, 너트와 볼트, 합단추 자웅, 걸착구 자웅, 유·무선 전화기, 리미트 스위치 자웅, 뚜껑이 있는 화장품 용기 등

〈리미트 스위치 디자인〉	〈가방용 버클 디자인〉
 <p>도면A 1</p>	 <p>도면A 1</p>
 <p>도면B 1</p>	 <p>도면B 1</p>
 <p>도면C 1</p>	 <p>도면C 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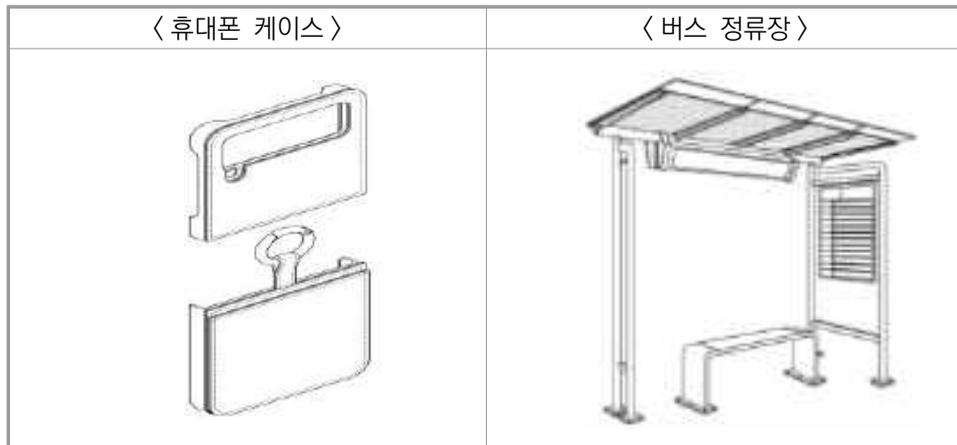
☞ 다음의 ‘차잔과 받침접시’ 사례와 같이 물품의 용도, 형태적,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개별 구성물의 도면 없이 결합된 완성품 상태의 도면만으로도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 차잔과 받침접시에 대한 각각의 도면(예: 차잔은 도면A, 받침접시는 도면B)은 생략할 수 있다.



[도면 1]

3.1.2 물리적으로 분리된 각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형상·모양을 이루는 경우 1 디자인 1물품으로 인정한다.

☒ 예) **인정** 다음 ‘휴대폰 케이스’와 ‘버스 정류장’ 사례와 같이 구성요소들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부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1디자인 1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3.1.3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의 형상·모양을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 보조적인 물품(예: 마네킹)을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보조적인 물품이 적용된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 인정 마네킹과 함께 표현된 '덧신' 디자인

디자인		- 디자인의 설명 : 덧신 물품을 완전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마네킹에 씌운 것이며 마네킹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부분임
물품명	덧신	

3.1.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를 표현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일체화된 상태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1디자인 1물품으로 인정한다.

✕ 예) 인정 부가물품과 일체화된 상태로 실시되는 디자인

양초	케이크	세제용 캡슐
		
양초와 용기가 결합되어 실시	케이크 테두리에 띠가 결합되어 실시	캡슐 안에 세제가 삽입된 상태로 실시

3.1.5 형태가 변화하는 물품의 디자인(동적 디자인)으로서 변화 전·후 상태 또는 일련의 변화과정을 도시하여 출원하는 경우

✖ 예) 인정 변화 전·후의 상태가 도시된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덮개가 열리고 닫히는 “장난감 노트북컴퓨터”
		접어서 보관하고 펼쳐서 사용하는 “의자”
		방향전환에 따라 직접등과 간접등으로 쓰이는 “벽등”

3.2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의 예

3.2.1. 2이상의 단일물로 구성된 집합물

✖ 예) 1조의 탁구용구, 1조의 배드민턴용구,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 물품의 용기와 그 내용물(카메라와 카메라케이스, 라디오와 라디오케이스, 안경과 안경집, 화장품 보관함과 화장품 용기), 한글 글자체와 영문자 글자체, 한글 글자체와 특수기호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와 숫자 글자체 등

※ 집합물을 구성하는 단일물들이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을 가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등록받을 수 있다.

3.2.2.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변화 과정이 없거나 또는 변화과정에 일정성 및 통일성이 없는 경우

✘ 예) 다음 ‘로봇완구’ 사례와 같이 형태변화 과정의 구체적인 표현 여하에 따라 형태변화과정의 일정성과 통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

	
[도면A 1]	[도면B 1]
<p>⊗ 불인정 변화과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변화의 일정성 및 통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p>	

		
[도면A 1]	[도면B 1]	[도면C 1]
<p>⊕ 인정 변화과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변화의 일정성 및 통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p>		

3.3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볼 수 없는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

3.3.1 둘 이상의 물품명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병렬하여 적은 것

✘ 예) 병과 병마개, 라디오 겸용 시계 등. 다만, “시계가 부설된 라디오”와 같이 하나의 물품에 다른 물품이 덧붙여진[부설(附設), 부가(附加) 또는 부착(附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덧붙여진 물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볼펜 등이 부설된 라이터”와 같은 방법으로 적는다.

3.3.2 하나의 물품에 관하여 둘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거나, 둘 이상의 물품에 관하여 각각의 디자인을 하나의 도면에 도시한 것

✕ 예) “스티커”, “전사지”에 관한 디자인출원시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구성요소를 하나의 도면에 각각 도시한 경우 1디자인 1출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2 이상의 구성요소를 외곽선 등으로 한정하여 표현하면 인정할 수 있다.

올바르지 않은 도시



올바른 도시



3.4 둘 이상의 물품을 결합한 출원된 물품의 1물품 인정여부

3.4.1 결합상태로 보아 각 물품의 기능·용도가 상실되고 새로운 하나의 기능·용도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 3.1 및 3.2에서 예로 든 물품에 준하여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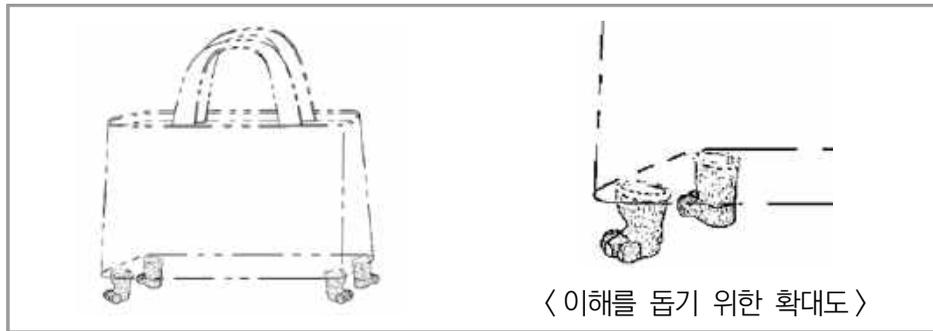
3.5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 표현된 경우의 1디자인에 대한 판단방법

3.5.1 1디자인인지 여부는 출원서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에 기재된 출원인의 창작의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하와 같이 전체 또는 각 부분으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1)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

(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이지만 대칭이 되거나 한 쌍이 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 예) 핸드백



(나)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이지만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 예) 휴대폰 케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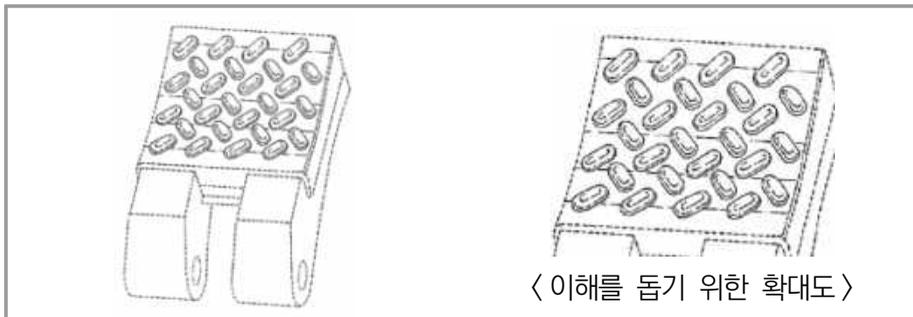
<대법원 2012후3343(2013.2.15. 선고) 판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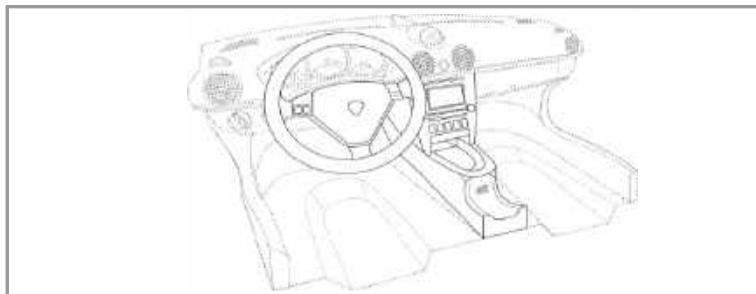
이 사건 출원디자인 중 [그림 2] 부분은 이를 보는 사람이 “토끼 귀” 형상으로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토끼의 전체 형상에서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 중 [그림 3] 부분이 휴대폰 케이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나 과장 또는 추상화가 수반되기 마련이고, 토끼 꼬리는 뭉툭하고 둥근 털 뭉치 형상인데 이와 유사한 형상의 [그림 3] 부분은 휴대폰 케이스의 하단 뒷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토끼 귀” 형상의 [그림 2] 부분은 휴대폰 케이스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서 [그림 3] 부분을 “토끼 꼬리” 형상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토끼 형상”으로 인식하면서 [그림 3] 부분을 “꼬리”로 호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 디자인은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그림 2] 부분은 “토끼 귀”로, [그림 3]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이지만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 예1) 미세분쇄기용 스윙 해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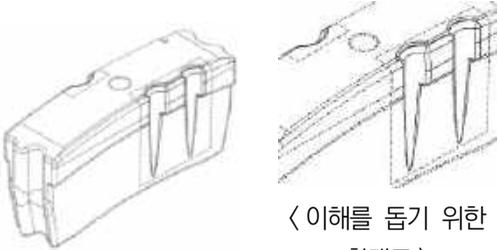
✘ 예2) 자동차 내부차체



(2) 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

(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전체 또는 각 부분으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 예 1) 잉크젯프린터용 잉크스틱

 <p style="text-align: center;">〈이해를 돕기 위한 확대도〉</p>	<p>디자인의 설명 : “정면에 있는 2개의 홈과 뒷면에 있는 한 개의 홈이 전체로서 프린터에 카트리지가 장착할 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p>
--	--

✘ 예 2) 신발

 <p style="text-align: center;">〈이해를 돕기 위한 확대도〉</p>	<p>디자인의 설명 : “신발의 발등부분과 발목부분의 걸창이 각 부분으로서 발을 고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p>
---	--

✘ 예 3) 자동차

	
<p style="text-align: center;">[도면 1]</p>	<p style="text-align: center;">[도면 2]</p>
<p style="text-align: center;">디자인의 설명 : 자동차의 전면에 대칭을 이루고 있는 램프디자인</p>	

4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의 예외

4.1 복수디자인등록출원

4.1.1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대상물품

- (1)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물품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물품이 같은 물품류에 속하지 않으면 법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물품류가 다른 물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 분할이나 출원 취하를 할 수 있다.

4.1.2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의 수

- (1)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한 출원 취하는 삭제보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한다.
- (3) 출원서에 적힌 출원디자인의 수보다 첨부된 도면상의 디자인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도면상 디자인의 수를 기준으로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한다.

4.1.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 (1)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은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하나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도면에 2 이상의 디자인을 표현한 경우에는 법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1항 후단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4.1.4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의 절차

- (1)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있는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거절이유를 명시하여 의견제출통지를 하여야 한다.
- (2)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의 보정·분할 등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4.2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

4.2.1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1) 둘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을 포함한다)이 한 별로 동시에 사용될 것

※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한 별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것

(가) 각 구성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되어 한 별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 예) **인정** “한 별의 주방용 국자 및 뒤집개 세트”에서 각 구성물품의 표현방법이 동일·유사한 것



(나) 각 구성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이나 모양 등을 표현함으로써 한 별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 예) **인정** “한 별의 샐러드 그릇 및 식기세트”에서 샐러드 그릇, 스푼, 포크가 서로 결합하여 그릇에 내려앉은 한 쌍의 새를 형상화한 디자인 등



(다) **인정** 각 구성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하여 관념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상을 줌으로써 한 별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 예)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를 그림으로 각 구성물품에 통일되게 표현한 것 등



(3) 규칙 [별표 5] 한 별의 물품의 구분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거나 한 별의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상거래 관행상 당 업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한 별의 물품으로 본다. 단 “한 별의 태권도복 세트”와 같은 전문운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는 모자,

양말, 신발, 보호장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동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으로 구성된 경우(예: 태권도복 상의와 등산복 하의를 출원한 경우)에는 한 별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2.2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

- (1)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1조의 도면만 제출할 수 있다.
- (2) 한 별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서로 특정하게 결합 또는 배치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Design

디자인심사기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제 3 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제1장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177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80



제1장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별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1 취지

디자인(글자체 및 화상은 제외)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한다.

2 판단기준

2.1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III

Part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대법원 2000후3388(2001.6.29. 선고) 판결 참조**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구분표는 디자인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구분표상 같은 류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류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2.2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 “용도”란 물품이 실현하려는 사용목적을 말하며, “기능”이란 용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작용 등을 말한다.

2.3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한다.

✕ 예) “볼펜”과 “만년필”, “탁상시계”와 “손목시계”, “스탠드등”과 “조명등”

2.4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 “혼용”이란 용도가 다르고 기능이 동일한 물품을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예) “핸드폰 케이스”와 “지갑”, “수저통”과 “필통”

3 판단방법

3.1 완성품(부품의 종합체)과 부품의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3.1.1 완성품과 부품은 용도가 서로 다른 비유사물품으로 본다.

※ 「부품」은 완성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 “자전거 핸들”

※ 「부속품」은 완성품의 용도를 확장하거나 기능을 보조,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그 자체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 “자전거 반사경”

3.1.2 완성품과 부품은 기본적으로 비유사물품이나 다음의 예와 같이 부품의 외관이 완성품에 가까우면 유사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 ✕ 예) ① “사진틀”과 “사진틀 프레임”
- ② “안경”과 “안경테”
- ③ “의자”과 “의자용 프레임”

		<p>인정 좌측사례와 같이 물품의 명칭이 비록 “의자용 프레임”으로 기재되어 형식적으로 부품이기는 하나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물품의 특성상 완성품인 “의자”의 외관에 가깝다면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다.</p>
<p>< 의자용 프레임 ></p>	<p>< 의자용 프레임 ></p>	

*** 대법원 91도612(1991.11.26. 선고) 판결 참조**

전구, 전구용 소켓과 전자렌지용 일체형 조명등은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에 있는 것이더라도, 부분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양 물품을 유사 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전자렌지용 일체형 조명등을 구성하는 전구, 전구용 소켓은 각각 그 자체가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사 물품에 해당한다

3.2 형틀과 그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은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예) “빵틀”과 “빵”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 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 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6.20〉

-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6.20〉

제46조(선출원)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

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취지

디자인의 동일·유사여부는 신규성,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관련디자인, 디자인권의 효력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려면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디자인의 형태도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

2 판단대상

2.1.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대상

2.1.1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간에만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 대법원 98후492(1999.12.28. 선고) 판결 참조

디자인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디자인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등록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프레임용 골조이고, 인용디자인 1이 표현된 물품이 벨트 컨베이어용 구조재이며 인용디자인 2가 표현된 물품이 그 명칭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A FRAME FOR BELT CONVEYOR)이나 벨트컨베이어장치 또는 이송용 기계의 골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다같이 기계 등의 구조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1.2. 물품의 유사여부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다음과 같다.

구분	동일물품	유사물품	비유사물품
형상·모양·색채 동일	동일디자인		
형상·모양·색채 유사		유사디자인	
형상·모양·색채 비유사			비유사디자인

3 판단방법

3.1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의 일반원칙

3.1.1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3.1.2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1) “관찰”은 육안으로 비교하여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예: 수술용 실 등)에는 확대경·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다.
- (2) “전체적으로 판단한다”란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지라도 유사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2010다23739(2010. 9. 30. 선고) 판결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 (3) 상식적인 범위에서 물품의 대소의 차이는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4)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 표현되는 경우에만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참작한다.
- (5)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 등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다.

3.1.3 디자인의 유사범위의 폭을 설정하는 방법은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을 넓게 보고, 같은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의 폭을 좁게 본다.

- (1) 유사의 폭이 비교적 넓은 것 : 약간 유사해도 유사로 판단
 - (가) 새로운 물품
 - (나) 같은 종류의 물품이라도 특별히 새로운 부분을 포함하는 것
 - ✖ 예) 날개 없는 선풍기와 같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적 특징을 가진 경우 넓은 유사범위를 가진다.
 - (다) 특이한 형상 또는 모양
- (2) 유사의 폭이 비교적 좁은 것 : 극히 유사해야만 유사로 판단
 - (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거나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었던 것
 - ✖ 예) 칼, 식기, 의자, 조명기구 등
 - (나)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
 - ✖ 예) 젓가락, 편지지 등
 - (다)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 ✖ 예) 수저, 포크, 안경, 조립용 공구, 볼트, 너트 등

*** 대법원 96후2418(1997. 10. 14. 선고) 판결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750 판결 참조).

(라) 유행의 변화에 한계가 있는 것

✕ 예) 신사복, 한복 등

3.2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 판단방법

3.2.1 형상, 모양 및 색채에 의한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한다.
- (2)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3)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5후3307(2007.10.25. 선고) 판결 참조**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 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4) 신규성에 관하여 공지디자인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공지의 형상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한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한다.

*** 대법원 2007후4830(2009.1.30. 선고) 판결 참조**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구성 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5)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비중을 두어 판단한다.

3.2.2 물품의 잘 보이는 면에 유사여부 판단의 비중을 둔다.

*** 대법원 2010후913(2010. 7. 22. 선고) 판결 참조**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예) ① 텔레비전 등은 전체 중에서 정면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 ② 세면대의 경우 평면도 또는 사시도(담수부의 형태가 잘 표현된 도면)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 ③ 세탁기 등은 전체 중 아랫면 부분에 비중을 적게 둔다.
- ④ 물품의 구매 시 일반수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유사여부 판단 시 비중을 높게 둔다.

3.2.3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 예) 수저의 경우에는 손잡이 부분의 형태에 비중을 두고 판단한다.

*** 대법원 2003후1666(2005.10. 14. 선고) 판결 참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3.3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 3.3.1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 간 유사여부 판단의 경우에는, 형태변화의 전후 또는 일련의 변화과정을 기준으로 서로 같은 상태에서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97후3586(1999. 10. 8. 선고) 판결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3.3.2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과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디자인 간의 경우에는,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의 정지상태 및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디자인과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다만,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본다.

3.4 완성품(부품의 종합체)과 부품의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 3.4.1 완성품과 부품은 비유사물품이므로 법 제46조(선출원)를 적용하지 않는다.
- 3.4.2 선출원된 완성품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후출원된 부품은 완성품에 관한 선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때에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항(확대된 선출원)을 적용하여 거절한다.
- 3.4.3 선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 디자인이 후출원되면 거절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지된 부품들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졌고 이러한 결합이 해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에게 용이한 창작이라면 법 제33조 제2항 창작비용이성으로 거절될 수 있다.

3.4.4 선공지된 완성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품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부품 디자인이 출원되면 공지된 디자인(전체를 통한 부분의 공지디자인)으로 보아 법 제33조 제1항(신규성) 각 호를 적용한다.

- ✕ 예) ① 자전거 공지 후 자전거 핸들 출원
- ② 가방 공지 후 가방용 직물지 출원

3.5 합성물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3.5.1 “합성물”이란 수 개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1개의 물품으로 취급된다.

- ✕ 예) 장기짱, 트럼프, 화투, 완성형태가 단일한 조립완구

3.5.2 합성물의 디자인은 구성각편이 모아진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아 대비 판단한다.

3.5.3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와 같이 구성각편의 하나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조립완구와 구성각편의 유사여부 판단은 위 완성품과 부품의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준하여 판단한다.

3.6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3.6.1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2)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기능·용도
- (3) 해당 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크기·범위
- (4)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3.6.2 상기 3.6.1의 (1)부터 (4)까지에 대하여 전부가 동일한 경우 양 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으로 보고, 이 중 하나 이상이 유사하고 나머지가 동일하거나

전부가 유사한 경우 양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며, 이 중 하나 이상이 유사하지 않으면 양 디자인은 비유사로 판단한다.

다만, 양 디자인의 등록받으려고 하는 부분디자인은 동일하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고 하는 부분 이외의 형상 또는 이에 포함된 모양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극히 미세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동일한 경우에만 양 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으로 본다.

- 3.7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한 별의 물품 전체로서 판단한다.
- 3.8 글자체디자인의 경우, 다수의 글자체가 개발되었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유사의 폭을 좁게 보고 판단한다.
- 3.9 화상에 관한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제6부 특유물품디자인 심사 제1장 화상에 관한 디자인의 해당 부분을 참고한다.
 - 3.9.1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과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디자인”은 화면부와 화상의 형태가 동일·유사하더라도 물품면에서 서로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제 4 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제1장 출원의 보정	193
제2장 직권보정 및 직권재심사	198
제3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203
제4장 출원의 분할	213
제5장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219



제1장

출원의 보정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1.10.19, 2023.6.20>

1.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3.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0. 19.>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① 제48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은 “도면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는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3.6.20>

④ 제48조제5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26조(서류 등의 보정) ① 법 제47조, 제48조, 제64조, 제128조, 제186조 또는 이 규칙 제46조에 따라 보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정은 제외한다]하려는 자(법 제47조 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② 법 제4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1 취지

“출원의 보정”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의 내용이나 형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하여 정정, 보충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서의 기재나 도면의 표현이 완전하지 못한 경우 출원서 등의 보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선출원의 이익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보정의 주체

- 2.1 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이다.
- 2.2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인이 공동으로 보정할 수도 있고, 법 제13조(복수 당사자의 대표) 제1항에 따라 각자가 전원을 대표하여 보정할 수도 있다.

3 보정의 대상

- 3.1 실체적 보정
 - 3.1.1 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사진 또는 견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사진 및 견본은 제외)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대한 보정
- 3.2 출원의 변경
 - 3.2.1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3.2.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한다.

4 보정의 범위

- 4.1 보정은 당초 서류 등의 오기나 불명확한 기재 등을 정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으로서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5 보정의 시기

5.1 보정은 아래 기재된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정서를 반려한다.

5.1.1 (국내출원)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등록공개가 있는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5.1.2 (법 제64조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

※ 심판절차와 관련한 보정기간

- (1) (법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2)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판관이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거절이유 통지와 동시에 의견서 제출기회를 준 경우)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까지.(법 제124조)

6 보정의 방법

6.1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보정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26조 제1항)

6.1.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7 보정의 효과

7.1 보정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서류는 보정된 후의 상태로 출원 당시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7.2 보정이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등록여부결정 전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법 제49조 제1항)

7.3 보정이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법 제48조 제5항)

제2장

직권보정 및 직권재심사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66조(직권보정) ① 심사관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 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그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2023.6.20.〉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 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취지

- 1.1 직권보정제도는 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 별도의 보정요구를 하지 않고 심사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오기에 대하여 별도의 거절이유를 통지할 경우 심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편의증진과 심사지연 방지를 위함이다.
- 1.2 직권재심사제도는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하면, 그 후 디자인등록출원을 거절할 만한 명백한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심사를 재개할 수 없어 그대로 등록될 수 밖에 없던 문제를 해결하고자한 것으로서 설정등록 이전에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디자인등록의 무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 직권보정 및 직권재심사의 시기

- 2.1 (직권보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예) 「디자인의 설명」란 등에 기재된 내용 중 “고안”을 “창작”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직권으로 보정하는 경우

2.2 (직권재심사)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설정등록되거나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다.

3 직권보정 및 직권재심사의 대상

3.1 직권보정이 가능한 “명백히 잘못된 경우”란 디자인의 설명, 도면의 기재 등을 참작하여 출원인의 당초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단순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심사관 직권으로 보정하더라도 해당 디자인 등록 시 권리범위 해석이나 디자인의 실시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도 출원인의 의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면 직권보정하지 않는다.

✕ 예) 직권보정이 가능한 경우

구분	직권보정 전	직권보정 후	비고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000임, 2. 본원 디자인은 000임, 4. 도면 1은 000임, 5. 참고도면 1은 000임	1. 재질은 000임, 2. 본원 디자인은 000임, 3. 도면 1은 000임, 4. 참고도면 1은 000임	항목 번호의 명백한 오기
물품의 명칭	“가방”	“가방”	물품의 명칭이 “가방”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도 가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

3.2 아래와 같은 경우는 명백히 잘못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의견제출통지를 통한 보정 또는 출원인의 자진 보정을 통해 오류를 보정하여야 한다.

3.2.1 도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예) 기본도면 → 참고도면, 참고도면 → 기본도면

3.2.2 도면의 명칭이 동일하더라도 도면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예) 참고도면 1 → 참고도면 2

3.2.3 물품의 국제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3.2.4 디자인의 설명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예) 디자인의 설명에서 도면 1은 정면도라 하고 도면 1에 배면도를 첨부한 경우

3.2.5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기재사항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분류와 디자인의 설명란 또는 디자인창작의 요점에 기재된 물품의 명칭, 분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변경이 필요한 경우

3.3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직권보정은 법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3.4 직권재심사는 무효가능성의 차단을 위한 것이므로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거절이유는 직권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거절이유만을 대상으로 한다.

3.4.1 명백한 거절이유란 등록결정된 디자인이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거절이유로 인해 등록결정된 디자인이 무효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3.4.2 출원인이 직권재심사에 의한 등록취소결정을 통지받기 전에 디자인이 설정 등록되거나, 취하·포기되면 등록취소결정은 무효이며 직권재심사 역시 할 수 없다.

4 직권보정 및 직권재심사의 절차

4.1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내용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4.2 출원인이 직권보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한다.

- 4.3 직권재심사를 통해 등록을 취소하고자할 경우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 협의에 의해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 4.4 직권재심사를 통한 등록취소가 결정되면, 등록취소 통지서를 작성 및 발송하고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일반 심사절차와 동일하다.
- 4.5 등록결정 이전에 통지했던 거절이유로 직권재심사를 통해 재차 거절통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한다.

제3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개정 2017.3.21, 2021.10.19, 2023.6.20〉

1.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3.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9조에 따른 보정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 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0. 19.>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① 제48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은 “도면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는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개정 2023.6.20>

④ 제48조제5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7조(직권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는 때에도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144조(보정의 각하결정) 심사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 취지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에 기초하여 출원서의 기재, 도면 및 도면의 기재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출원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자유롭게 보정하게 할 경우 선출원주의 취지에 반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심사진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요지변경의 판단기준

- 2.1.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3D 모델링 도면 및 견본 포함) 및 도면의 기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초에 출원된 디자인과 보정된 디자인 간에 동일성 범주 내에 있지 않다면 요지 변경으로 판단한다.
- 2.2. 요지변경여부 판단 시 최초출원된 보정된 디자인간의 차이점들이 전체적인 미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면 보정된 디자인은 최초 출원 디자인과 동일성 범주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2.3.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 여부 판단 시에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참작하여 우선권 증명서류와 일치시키는 방향의 보정인지 여부를 살핀다.

✕ 예) 제1국 출원디자인을 참작하여 보정을 인정한 “조명등용 본체”

		
<p>제1국 출원서에 첨부된 디자인도면</p>	<p>우리나라 출원서에 첨부된 디자인도면이며 동일성 결여로 불인정 통지</p>	<p>우선권 불인정된 후 최종보정 인정된 디자인도면</p>

3 요지변경의 판단방법

3.1 도면(사진, 견본 포함) 및 도면의 기재사항의 요지변경

3.1.1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관한 보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지변경으로 판단한다.

- (1) 최초의 도면 등에 표현된 형상·모양이나 색채상의 부가, 삭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만, 그 부가, 삭감, 변경 등이 외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정도의 것은 예외로 한다.
- (2) 도면 중 불일치한 일면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도면을 정정함으로써 최초에 제출한 도면으로부터 상기되는 것과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경우
- (3) 도면에는 형상만이 그려지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색구분 또는 색흐림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 설명과 같이 도면을 보정한 것이 통상 그 물품으로서 실시되는 정도의 상식적인 표현이 아닌 경우
-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수에 맞춰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 예) 디자인등록출원서의 「디자인의 수」는 10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9개의 도면만 첨부되어 있어 1개 디자인에 대한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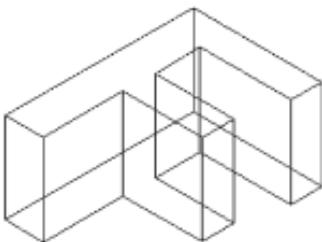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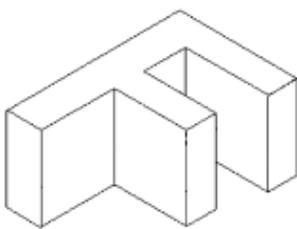
- (5) 보정되거나 추가된 도면이 최초 출원 시 제출된 도면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6) 보정된 디자인의 설명이 최초 출원 시 첨부된 도면을 기초로 추측하여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 (7) 골격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표현된 도면(선도와 3D파일 출원 모두 해당)을 보정하여 선도 등으로 표현했을 때 디자인의 구성요소가 추가 또는 변경되어 디자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 (8) 디자인을 구성하는 문자를 삭제하는 보정을 할 때, 문자부가 단지 단순하고 흔한 문자들의 배열이 아니라 상당부분 도안화, 도형화되어 모양 또는 패턴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른 경우

3.1.2 도면(사진, 견본 포함)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관한 보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선도면으로 제출한 디자인을 사진 또는 견본으로 보정하거나, 반대로 사진 또는 견본으로 제출한 디자인을 도면으로 보정한 경우에 도면 또는 사진 등을 그대로 실시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정하는 경우.
- (2) 3D 모델링 파일로 제출된 것에 문제가 발생하여 디자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정된 3D 모델링파일로 제출하거나 3D 모델링 파일을 선도면, 사진,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등으로 보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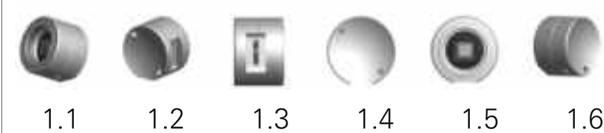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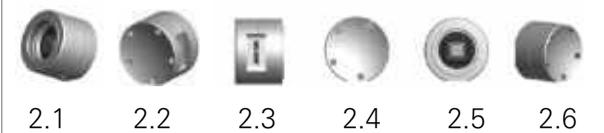
✕ 예) **인정** 다음과 같이 보정과정에서 투명 여부 등 재질에 관한 설명, 구성요소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이 없다면 단지 표현방식상의 하자를 보완한 것으로 보아 동일성 범주내의 보정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보정전	보정후
	
<p>원출원시 내부 골격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표현</p>	<p>내부 골격이 그대로 도시되는 등의 단순히 표현상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표현</p>

- (3) 도면 등이 너무 작거나 불선명한 경우에 최초에 출원한 것과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한 크기 또는 선명한 것으로 보정하는 경우

- (4) 선명한 사진이더라도 배경 등 불필요한 요소들이 촬영되어 등록받고자하는 디자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을 때 그 배경, 음영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정하는 경우
- (5)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지시선, 부호, 문자 등이 표현되어 있어 이를 제거하는 경우
- (6) 디자인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오기를 정정하거나 미세한 부분의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 (7)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의 일부를 취하하기 위하여 출원디자인의 일부를 삭제 보정하는 경우
 -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삭제하는 보정(감축, limitation)은 지정국 관청 절차진행 이전에 국제사무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8) 국제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복수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일부 디자인에서만 전체적인 형상을 구체적으로 도시하고, 그 외의 디자인에서는 충분히 도시되지 않았을 때, 도면을 추가하는 보정이 최초 출원서에 포함된 도면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보정인 경우

※ 이 경우 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최초출원	
M001	
M002	
	↓ ↓ ↓
보정	
M002	

- (9) 사진 도면을 선도 도면으로 또는 선도 도면을 사진 도면으로 보정 시보는 촬영 각도에 따른 음영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 (10) 컴퓨터 그래픽 렌더링 도면,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도면, 3D 모델링파일 도면, 선도 도면 등 간의 보정시에도 보는 각도에 따른 음영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 (11) 디자인에 포함된 문자 중 장식기능이 없고 오로지 정보 전달만을 위한 문자(보통의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문자 포함)를 삭제하거나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문자, 중심선, 지시선, 부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

※ 제2부 제1장(공업상 이용가능성)의 2.2.26(도면내 문자 등이 있는 경우) 참조

3.2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요지변경

- 3.2.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다만,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예) 요지변경으로 판단하는 예) 물품명을 “접시”에서 “재떨이”로 변경

- 3.2.2 물품의 명칭 등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보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명칭의 오기를 정정하거나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 (2) 물품의 범위가 포괄적인 명칭을 그 하위개념에 속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예) “옥외조명등”을 “가로등”으로 변경

-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수를 첨부된 도면상 디자인의 수에 맞춰 보정하는 경우.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한다.
- (4) 법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2항에 따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하거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하는 경우
- (5) 법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보정하거나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보정하는 경우

4 부분디자인의 요지변경

4.1 부분디자인의 보정에 있어 요지변경 판단기준

4.1.1 “부분디자인에 있어서 요지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초에 출원된 디자인과 보정된 디자인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2)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기능·용도
- (3) 해당 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크기·범위
- (4)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4.2 부분디자인의 요지변경

4.2.1 부분디자인의 보정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 (1)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으려는 부분으로 보정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또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의 보정으로 인하여 등록 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가 변경된 경우
- (2)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여부를 삭제하는 보정
- (3)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 출원인지 전체 디자인 출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부분디자인 여부를 삭제하는 보정
- (4)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 출원인지 전체 디자인 출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부분디자인 여부를 추가 하는 보정
- (5)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여부를 추가하는 보정
- (6)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

- (7)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보충하는 보정

4.2.2 부분디자인의 보정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보정하여도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 (2)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여부를 삭제하는 보정
- (3)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여부를 추가하는 보정
- (4)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
- (5)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인 것이 명확하고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당연히 도출되는 경우에 디자인의 설명에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보충하는 보정

✕ 예) **인정** 다음과 같이 도면과 부분디자인여부를 보정하는 경우

보정 전	보정 후	
 <도면 1>	 <도면 1>	 <도면 2>
전체 디자인으로 출원했고 저면도 미제출	부분디자인으로 보정하면서 불충분한 도면보완	
물품명칭은 ‘컵’이고 보정과정에서 신규한 형태가 추가되지 않았고 전체적인 미감의 변화가 없다면 요지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5 보정의 각하

- 5.1 보정이 최초 출원서의 기재사항, 첨부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경우에는 법 제49조(보정각하)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한다.
- 5.2. 보정각하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한다.
 - 5.2.1 출원서와 이에 첨부된 도면 및 도면에 적힌 사항에 관한 보정이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결정으로 각하한다.
 - 5.2.2 보정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보정각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여부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 5.2.3 출원인이 법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5.2.4 보정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5.2.5. 보정각하가 확정되면 보정이 없었던 상태의 디자인등록출원서로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제4장

출원의 분할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 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제50조(출원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자인등록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 출원을 할 수 있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다.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9, 2023.6.20>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신설 2021.10.19, 2023.6.20>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① 제50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는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로 한다.

② 제50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48조제4항”은 “제186조제3항”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46조(출원의 분할) 법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디자인 등록출원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려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사진·견본) 1통(분할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1 취지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 1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경우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최초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소급하여 인정함으로써 출원인에게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분할출원의 요건

2.1 분할출원의 주체

2.1.1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

2.2 분할출원의 대상

2.2.1 분할의 대상이 되는 출원은 심사 또는 심판에 계속 중인 것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1항의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을 위반하여 2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것

✕ 예) ㉠ 출원서 또는 도면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란에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완구”와 같이 둘 이상의 물품명을 기재한 것

㉡ 물품명칭을 “의자”로 기재하고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20이상의 의자 디자인이 표현된 것

㉢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에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으로 도시한 것

(2) 법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것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하나의 일련번호의 디자인에 2 이상의 디자인을 도시한 것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물품류가 다른 물품이 포함된 것

(5) 법 제42조(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 제1항에 따른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6)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출원된 것으로서 변화의 과정이 없거나 변화 과정에 일정성 및 통일성이 없는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것

2.2.2.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디자인은 원출원에 포함되어 있던 둘 이상의 디자인 가운데 하나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2.2.3.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의 예

- (1)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는 것
- (2) 한 별 물품의 디자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을 각 구성물품별로 분할하는 것
- (3)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것
- (4)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출원된 것으로서 변화의 과정이 명확하고 변화 과정에 일정성 및 통일성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

2.2.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만 출원의 일부를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3 분할출원의 시기

3.1 출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한다)의 분할은 법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시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재심사를 청구할 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3.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86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시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할 수 있다.

4 분할출원의 방법

4.1. 둘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경우 출원의 분할은 다음과 같이 한다.

4.1.1 하나의 출원으로 되어 있는 둘 이상의 디자인 중에 하나의 디자인만을 등록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출원을 하나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4.1.2 하나의 출원으로 되어 있는 둘 이상의 디자인을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원출원을 하나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으로 보정함과 아울러, 나머지 디자인 중 등록을 받으려는 디자인마다 분할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4.2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되었으나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성물품별로 디자인마다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 예) ① “한 별의 태권도복 세트”를 출원하면서 태권도복 상의와 등산복 하의 도면을 제출한 경우

② “한 별의 신발 가방 및 책가방 세트”를 출원하면서 이들 물품에 여행용 가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4.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의 분할은 다음과 같이 한다.

4.3.1 출원의 분할에 따라 출원디자인의 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원출원의 출원서 및 도면을 보정함과 아울러, 분할되는 디자인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의하여 분할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1) 출원의 분할에 따라 원출원이 하나의 디자인만을 출원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원출원의 출원서상 “복수디자인”의 표시를 “1디자인”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2) 출원의 분할은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서를 제출한다.

4.3.2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하나의 일련번호(예:M001)의 디자인에 둘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분할하여 출원하거나 각각 하나의 일련번호의 디자인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을 보정함으로써 출원디자인의 수가 100개를 초과하면 분할하여야 한다.

✕ 예) **인정** M001의 도면에는 3개의 디자인을 표현하고 M002, M003에는 도면을 누락한 경우, M001은 1디자인으로 삭제보정하고 M001에서 삭제된 디자인을 M002와 M003에 각각 추가할 수 있다.

4.3.3 분할출원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할 때에는 분할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2부 제3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관련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4.3.4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인정받기위해 제출하려는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면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기재함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규칙 제23조)

5 분할출원의 불인정

5.1. 분할출원의 불인정 절차

5.1.1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1.2 불인정예고통지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출원의 분할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출원불인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5.2. 분할출원의 불인정의 효과

5.2.1 출원의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은 분할이 있었던 때에 출원한 것으로 취급한다.

5.2.2 분할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여 한 분할출원은 반려대상이 된다.

6 분할출원의 효과

6.1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은 최초에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최초 출원일과 분할출원일 사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그 사이에 공지된 디자인 등으로 인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6.2 법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시기 및 증명서류 제출기간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분할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5장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또한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설사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 취소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즉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에 소급하는 것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요건

2.1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무권리자의 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전에 있었어야 하고, ② 그 무권리자의 출원이 무권리자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이나 무효심결이 확정되어야 하며, ③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을 해야 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부가 출원해야 한다.) ④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출원 후부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가능하고, 그 거절결정이나 무효심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출원을 해야 하며, ⑤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디자인과 무권리자가 한 출원의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2.2 심사관은 2.1.③의 정당한 권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거절결정이나 무효심결 관련 정보제공인, 무효심판 청구인, 거절결정서 내용, 심결문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시기

정당한 권리자가 소급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출원 후부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가능하고, 거절결정이나 무효심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출원을 해야 한다.

4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방법

정당한 권리자는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도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권 증명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정당한 권리자 출원 소급효의 불인정

5.1 소급효 불인정 절차

5.1.1 상기 ① ~ ⑤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대한 불인정 예고통지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1.2 불인정 예고통지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5.2 불인정의 효과

5.2.1 정당한 권리자 출원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은 실제 출원이 있었던 때에 출원한 것으로 취급한다.

5.2.2 상기 ① ~ 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 실제 출원은 반려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소급효 없는 출원으로 보고 실체심사를 진행한다.

5.2.3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출원 전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이를 근거로 무권리자 출원을 등록거절을 할 수 있다.

6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효과

6.1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출원일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사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그 사이에 공지된 디자인 등으로 인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Design

디자인심사기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제 5 부

심사일반



제1장 디자인등록출원 서류	225
제2장 심사절차	234
제3장 비밀디자인	247
제4장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57
제5장 출원공개	273
제6장 정보제공	278
제7장 우선심사	282
제8장 재심사	294
제9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298
제10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308
제11장 부분디자인	315
제12장 한 벌 물품의 디자인	333
제13장 국제디자인심사기준의 특례	343

제1장

디자인등록출원 서류

V
Part심
사
일
반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4.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관련 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7.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8.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 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적고, 같은 도면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은 별표 3의 기재방법에 따라 적는다.

제36조(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제출하는 견본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견본 1개와 그 견본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제출할 것
2. 견본의 규격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얇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2백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견본은 파손·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할 것
4. 견본은 취급 또는 보존이 쉬울 것
5. 견본을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우려가 없을 것

[별표 2]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

1. 물품에 대한 설명: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재질 또는 크기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전기스탠드로 뒷면에 음이온 발생장치를 갖추고 있음. 재질은 갓 부분은 표면이 매끈한 유리 재질이고, 몸체 부분은 구형(球形) 돌기가 형성된 철재이며, 전체 크기는 50cm임.
2. 도면에 대한 설명: 도면(사진 또는 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면별 설명

(예문) 도면 1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이 디자인의 앞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뒷면은 앞면 과 같고, 도면 3은 이 디자인의 윗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4는 이 디자인의 아래쪽에서 바라본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9는 도면 5의 A부터 A'까지 부분의 절단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3. 도면에서 길이 표시 생략에 대한 설명: 도면에서 길이 표시를 생략하여 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이 명확하지 않아 생략한 길이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면상 몇 mm, 몇 cm 또는 몇 m가 생략되었음을 표시

(예문) 도면 1에서 표현된 디자인의 도면상 생략된 길이는 5cm임.

4. 도면의 색채에 대한 설명: 도면 또는 사진에 색채를 입히는 경우에 흰색·회색 또는 검은색 중 하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도면 1에서 윗부분은 회색이고, 아랫부분은 검은색이며, 기둥 부분의 흰색은 생략하였음.

5. 투명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설명: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용기 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윗면의 덮개 부분이 투명 재질로 되어 있음.

6. 부분디자인에 대한 설명: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물품의 부분을 도면이나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전자의 손잡이를 나타내는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으려는 부분임.

7. 화상디자인에 대한 설명: 화상디자인이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관한 설명을 명확하게 기재

(예문1) 이 화상디자인은 스마트 팔찌에서 투영되어 손목에 표시된 아이콘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며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전화, 날씨, 카메라, 전자계산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문2) 이 화상디자인은 벽면에 빛을 투사하여 시간, 날짜, 날씨, 온도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8.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에 대한 설명: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서 화면이 도시되는 부분만을 제출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나타나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며 화면이 도시되는 부분 이외의 도면은 생략하였음.

9. 열리고 닫히는 디자인 또는 펼쳐지고 접히는 등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변화 전후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자동차 뒤쪽의 스포일러 부분이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는 펼쳐진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면 B 1부터 도면B 7까지는 접힌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임.
10.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움직이는 상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 상태, 동작 상태(동작 중의 기본적 자세, 동작 내용을 나타내는 궤적 등)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움직이는 "로봇완구"의 디자인으로서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는 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B 1부터 도면B 7까지는 움직이는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일련의 도면임.
11. 토목건축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반복 생산성, 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1) 이 디자인은 가옥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건축설계도에 따라 부품을 미리 생산·조립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이루어짐.
(예문2) 이 디자인은 교량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제로 제작·조립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이루어짐.
12.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한 짝의 형태만을 도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한 짝을 생략하여 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문) 이 디자인은 좌·우측 이어폰이 한 세트로 구성된 블루투스 이어폰의 한 쪽 이어폰을 나타낸 것으로, 다른 한 쪽 이어폰의 디자인은 이 디자인과 대칭임.

13.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형태를 완전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마네킹 등의 보조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덧신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발에 씌운 형태를 완전하게 나타내기 위해 마네킹을 사용한 것으로 마네킹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것임.

1 취지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서는 출원디자인에 관한 서지사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면 등을 포함하며, 출원서 및 첨부된 도면은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창작자 및 출원일을 특정하고 디자인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2 출원서의 기재사항

2.1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1.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1.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1.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2.1.4 단독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 여부

2.1.5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디자인의 번호

2.1.6 부분디자인 여부

2.1.7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1.8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디자인의 수 및 일련번호

2.1.9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일자 및 출원국명

2.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을 법 제37조 (디자인등록출원)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으로 본다.

※ 서류의 원용(규칙 제23조)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3 디자인 도면

3.1 디자인의 도면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디자인 도면)에 따라 작성하되,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2 디자인의 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3.2.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2.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창작 내용의 요점을 적지 않을 수 있다)

3.2.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일련번호

3.3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방법

3.3.1 규칙 [별표 2](디자인의 설명의 기재사항)에 규정된 사항을 적어야 한다.

3.3.2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본다.

3.4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

3.4.1 규칙 [별표 3](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적는다.

3.4.2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3.5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도면을 법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제2항에 따른 도면으로 본다.

4 출원서 및 도면의 지위

4.1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따르면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 사항, 첨부된 도면·사진·견본 및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 특허법원 2009허1736(2009. 6. 5 선고) 판결 참조

디자인등록출원은 1물품 또는 1물품의 부분에 관한 1형태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하여지므로,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하여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시에 변화의 전후에 걸친 형상, 모양 등을 각각 도시하는 도면을 부가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4.2 출원서 및 이에 첨부된 도면은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창작자 및 출원인을 특정하고 디자인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 4.3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정면방향, 뒷면방향, 평면방향, 밑면방향, 좌측방향, 우측방향, 비스듬한 방향에서 바라본 것을 표현한 도면과 디자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등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 4.4 참고도면은 사용상태도 등 디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권리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예) ‘의자’ 디자인이 출원되었고 참고도면에 등록받고자하는 디자인인 ‘의자’의 사용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책상’과 함께 놓여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면 ‘책상’ 디자인은 권리범위에서 제외된다.

제2장

심사절차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도면·사진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개정 2017.3.21, 2021.10.19, 2023.6.20〉

1.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3.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합의체는 제68조 제3항 및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심사장은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③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④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예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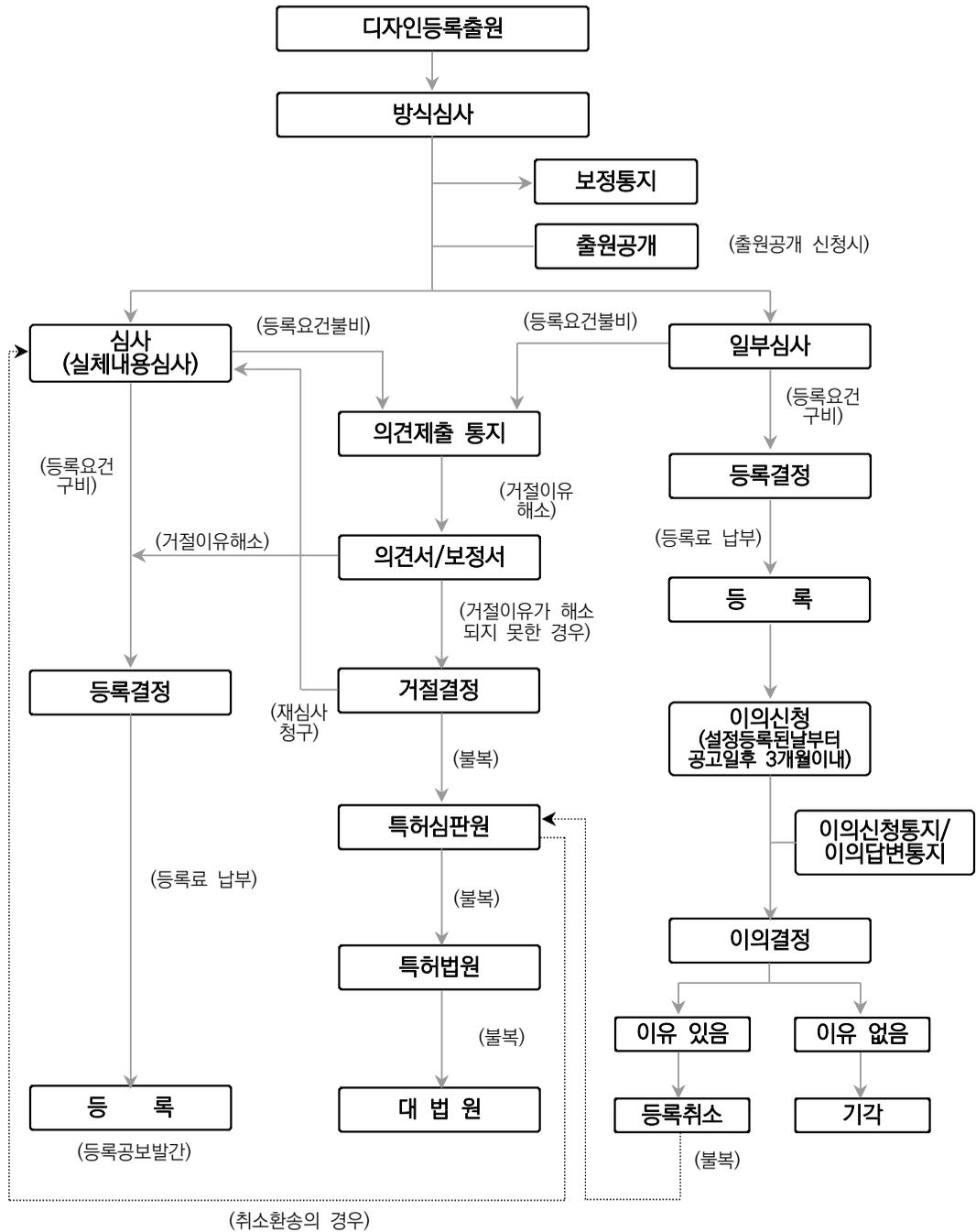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 ②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본다.
-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으로 본다.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 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③ 경정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는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심사절차도



2 심사의 일반원칙

- 2.1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이는 일정한 자격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심사관을 통해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직무의 독립성과 심사의 적법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2.2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3 심사관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선행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선행 심사결과와 달리 판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메모에 선행 심사결과 및 달리 판단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출원디자인 인정

- 3.1 출원서의 기재내용, 첨부된 도면 및 도면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을 파악한다.
- 3.2 전체디자인의 인정
 - 3.2.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내용 및 첨부된 도면 등에 근거하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을 파악한다.
 - 3.2.2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란 등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 및 각 부분의 형태를 파악한다.
- 3.3 부분디자인의 인정
 - 3.3.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내용 및 첨부된 도면 등으로부터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용도, 기능 및 형태를 파악한다.

- 3.3.2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용도·기능은 위 3.3.1에서 파악한 부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가지는 용도 및 기능에 근거하여 파악한다.
- 3.3.3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위치·크기·범위는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의 특정방법 등으로부터 파악한다.

4 선행디자인 조사

- 4.1 선행디자인 조사는 출원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신규성, 창작성 및 선출원 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 4.2. 출원디자인이 속하는 분야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행디자인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먼저 검토한다.
 - 4.2.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품성
 - 4.2.2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
 - 4.2.3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여부
 - 4.2.4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 등
- 4.3 참조자료
 - 4.3.1 출원디자인의 신규성, 창작성 및 선출원 요건 등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이 게재되어 있는 심사자료를 참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4.3.2 출원디자인과 전체로서 또는 각 부분의 형태에 있어 공통점을 가지는 선행디자인을 발견하면 그 디자인이 게재되어 있는 문헌을 참조자료로 기재한다
- 4.4 선행디자인 조사방법
 - 4.4.1 출원디자인의 형태상 요지를 파악하되, 형태상 요지 여부와 유사 범위는

선행하는 디자인들의 형태적 흐름과 해당 물품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4.4.2 선행디자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참증자료는 출원디자인, 공지디자인(간행물, 디자인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실용신안(실용신안공보) 등이 있다.

4.4.3 필수적으로 조사할 심사자료의 범위를 설정한다.

- (1) 심사관으로서의 전문지식과 경험, 출원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형태적 흐름 및 출원경향 등에 근거하여 반드시 조사할 범위 설정
- (2)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분류를 필수적 조사범위로 설정

4.4.4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행디자인 조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1) 출원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용도 및 기능에 공통성이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선행디자인이 존재할 경우

✕ 예) 가령, ‘벤치’디자인의 경우, 비록 동일·유사물품은 아니나 ‘버스정류장’ 디자인도 함께 검색해야만 버스정류장의 일부로 부설되는 동일·유사한 ‘벤치’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다.

- (2) 출원디자인이 선행하는 디자인의 부품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으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예) 가령, ‘휠’디자인의 경우, 비록 동일·유사물품은 아니나 출원일 이전의 선행하는 ‘자동차’ 디자인도 함께 검색해야만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표현되는 ‘휠’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다.

- (3) 출원디자인이 특정 선행디자인을 기초로 해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흔한 창작수법을 이용하여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일 경우

4.4.5 선행디자인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 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한 선행디자인 등이 발견된 경우
- (2) 조사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유용한 선행디자인 등을 발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5 등록요건 검토

- 5.1. 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 등의 판단 기준일 확인
 - 5.1.1 출원일[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보완일, 헤이그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제등록일]
 - 5.1.2 조약에 의한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제1국의 최초출원일
 - 5.1.3 분할출원 또는 출원보정의 경우에는 원출원의 출원일
- 5.2 참증자료의 서지사항에 대한 확인
 - 5.2.1 공지디자인의 공지일(또는 공지시점)
 - 5.2.2 선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 등의 판단기준일(또는 기준시점) 및 공보발행일
 - 5.2.3 공지디자인의 권리자 또는 공지 주체
 - 5.2.4 선출원디자인의 출원인
- 5.3 출원디자인의 신규성 등 판단에 있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5.4 출원디자인이 창작비용이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5.5 출원디자인이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규정된 각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6 거절이유 통지

- 6.1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
- 6.2 출원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6.3 거절이유는 출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명확한 문장으로 요점을 구체적으로 기재
- 6.4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출원인(또는 대리인)과 소통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화, 팩스 또는 면담 등을 활용
- 6.5 담당 심사관이 변경되더라도 심사의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만일 전임 심사관과 달리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원인과의 소통에 유의

7 의견서 및 보정서 검토

7.1 의견서 및 보정서의 내용 검토

- 7.1.1 보정서의 내용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보정서를 각하한다.
- 7.1.2 보정서의 내용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정 후의 출원서 및 도면에 기초하여 심사를 계속한다.
- 7.1.3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제출로 당초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나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8 등록여부 결정

8.1. 디자인등록결정

- 8.1.1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한다.
- 8.1.2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제출에 따라 당초 거절이유가 해소되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결정을 한다.
- 8.1.3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여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에 법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를 적용 받으려는 다른 디자인과의 유사여부에 관한 심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를 적는다. 또한 등록디자인공보에도 그와 같은 취지를 적는다.

8.2. 디자인등록거절결정

- 8.2.1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가 제출되더라도 당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거절결정한다.
- 8.2.2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한다.
- 8.2.3 출원인이 의견서에서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절이유의 취지에 따라 심사관의 판단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9 위법한 처분의 직권취소

9.1 위법한 등록여부결정의 취소권의 제한

- 9.1.1 다음의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심판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아래 9.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따른 거절결정
- (2) 법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에 따른 등록결정
- (3) 법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디자인등록 취소결정 또는 이의신청기각결정
- (4) 법 제49조(보정각하)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9.2 위반한 처분 등의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

- 9.2.1 위 9.1의 각 호의 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전까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1) 사실상 또는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한 처분

✳ 예) ① 소멸된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기재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한 등록결정

- ② 출원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한 거절결정

(2) 법 제63조(거절이유통지)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절차, 같은 법 제71조(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1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 등 중대한 절차를 누락한 처분

✕ 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거절결정 처분

(3) 거절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10 국제등록부의 경정이 통지된 경우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처리방법

10.1.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이 인정된다.

10.2 국제등록부의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10.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등록부의 경정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는 후에 통지된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10.3.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달라진 경정

10.3.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경정

10.3.2 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이 달라지는 경정

10.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위 10.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부의 경정내용을 반영하여 처음부터 다시 심사한다.

제3장

비밀디자인



V

Part

심사
일반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4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 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 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① 특허청장은 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10조(5)(a)에 따른 비밀사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이하 이 절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목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2.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연기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85조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령 ▼

제10조(디자인공보) ① 법 제212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디자인등록번호 및 디자인등록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
 - 나. 법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 다. 법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 라. 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
 11.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 등록출원 또는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부분디자인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사실
 - 나. 법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 다. 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 라. 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56조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
11.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에 관련된 사항
 -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디자인권자, 자연인인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자연인인 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39조(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 결정서에 그 비밀보장기간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단축(연장)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① 디자인등록공고일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고되거나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법 제212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이하 “등록디자인공보”라 한다)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이하 “공개디자인공보”라 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

1 취지

비밀디자인 제도는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한 디자인의 특성상 출원인이 일정 기간 동안 출원디자인(권)을 비밀로 유지하여 타인의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하며, 디자인의 경영전략상 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 비밀디자인 청구의 요건

2.1 청구권자

2.1.1 비밀디자인의 청구는 출원인이 할 수 있고,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은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용·통상실시권자 또는 질권자 등은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 비밀디자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또는 출원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청구를 하려는 자는 비밀기간 연장 또는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청구의 대상 및 기간

2.2.1 비밀디자인 청구대상은 심사 및 일부심사등록출원이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출원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별도의 국제등록공개의 연기절차가 존재하므로, 비밀디자인의 청구를 할 수 없다.(법 제184조)

(1)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기본디자인과 별개로 관련디자인에 대해서만 비밀디자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2.2 비밀디자인 청구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부터 최초의 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가능하며,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 까지 가능하다.

2.3 비밀기간

2.3.1 등록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이고, 지정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는 있으며, 연장하는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2.4 출원공개신청에 따른 비밀디자인 청구

2.4.1 비밀디자인 청구 후에 법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법 제43조 제6항)

3 비밀디자인의 열람

- 3.1 특허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4항)
- 3.1.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 비밀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이의신청·심판·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 3.1.2 디자인권 침해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3.1.3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 3.2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3조 제5항)
- 3.3 특허청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헤이그 협정에 따른 비밀사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185조 제1항)
- 3.3.1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을 한 자의 자격에 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목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 3.3.2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 3.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법 제185조 제2항),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법 제225조)

4 비밀디자인 청구의 효과

- 4.1. 비밀디자인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 될 경우라도 등록공보에는 아래와 같은 서지사항만이 게재된다.

- 4.1.1 출원인과 창작자의 인적사항
- 4.1.2 심사등록출원 또는 일부심사등록출원 여부
- 4.1.3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 4.1.4 디자인등록번호 및 디자인등록일
- 4.1.5 부분디자인 및 기본디자인 표시
- 4.1.6 복수디자인의 일련번호
- 4.1.7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 4.1.8 기타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4.2. 비밀디자인의 비밀기간이 경과된 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공보가 발행된다.(영 제10조 제1항 및 영 제10조 제2항)
 - 4.2.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4.2.2 도면 또는 사진(전본 포함)
 - 4.2.3 창작내용의 요점
 - 4.2.4 디자인의 설명

5 비밀디자인 관련 심사 시 참고사항

- 5.1 확대된 선출원(법 제33조 제3항) 규정관련 판단
 - 5.1.1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항(확대된 선출원)은 선출원 디자인의 출원일 다음날부터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공개디자인공보[법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에 따른 디자인공보를 포함한다] 또는 등록 디자인공보의 발행일까지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등록공보의 발행일에 출원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비밀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공보의 발행일은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을 말한다.

5.1.2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항을 적용할 때에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공개디자인공보 또는 등록디자인공보의 발행일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가 발행된 날을 말한다. 이전에는 후출원에 대하여 심사보류통지를 하되, 다음 예와 같이 필요시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통지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거절이유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한다.

✕ 예) 선출원이 공개 등이 되지 않아 심사보류통지를 하는 경우의 기재

☞ “타인의 선출원(제30-2011-0000000호) 디자인은 공개되지 아니한(또는 비밀 디자인으로 청구된) 출원서인 관계로 자료 첨부가 불가하오니, 필요시 열람을 청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열람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1.3 위 5.1.2 에 따라 심사보류된 후출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한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후출원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공개디자인공보 또는 등록디자인공보의 발행일[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가 발행된 날을 말한다.] 이후에 거절이유통지를 한다.

5.2 선출원(법 제46조) 규정관련 판단

5.2.1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선출원 디자인이 비밀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이전이나, 법 제46조(선출원) 제2항 후단의 협의불성립(협의불능 포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한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필요시 선출원을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후출원에 대하여 심사보류통지를 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거절이유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통지를 한다.

✕ 예) 설정등록이나, 협의불성립(협의불능 포함)에 의한 거절결정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심사 보류통지를 하는 경우의 기재

“타인의 선출원(제30-2011-0000000호)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은(또는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것이므로 자료첨부가 불가하오니, 필요시 열람을 청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열람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타인의 공개되지 않은 선출원 디자인을 후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에 첨부하여 통지(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한 경우에 그 선출원 디자인은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에게 알려진 것이므로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 제1호의 공지디자인에 해당한다.
- ※ 후출원의 거절참증으로 인용된 타인의 미공개(미공고) 선출원디자인이 그 거절이유의 통지로(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인하여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후에 다시 출원된 경우,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 각 호를 적용할 때에는 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따라 처리한다.

5.2.2 위 5.2.1 에 따라 심사보류된 후출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이 설정등록(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이 되거나, 협의불성립(협의불능 포함)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선출원 디자인이 2007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경우에는 포기,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 후출원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한다.

제4장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6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3.6.20.>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23.6.20.>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51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는 날”로 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6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어로 적은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특허청과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에 대한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 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한 접근코드를 말한다.〈신설 2017.9.22, 2020.8.2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52조의2(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①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그 증명서를 특허청장이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전자적 접근 서비스를 통하여 송달(세계 지식재산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제4조(A-I.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발명자증:우선권, G. 특허·적용범위)

- A. 1. 어떠한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의 등록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타 동맹국에서 출원의 목적상 이하에 정하는 기간중 우선권을 가진다.
2. 각 동맹국의 국내법령 또는 동맹국간에 체결된 2국간 혹은 다수국간의 조약에 따라 정규의 국내출원에 해당되는 여하한 출원도 우선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정규의 국내출원이라 함은 출원의 결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국에 출원을 한 일부를 확정하기에 적합한 모든 출원을 의미한다.
- B. 따라서 위에 언급된 기간의 만료전에 타 동맹국에 낸 후출원은 그 기간중에 행하여진 행위, 특허, 타출원, 당해 발명의 공표 또는 실시, 당해 디자인으로 된 물품의 판매 또는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제3자의 권리 또는 여하한 개인 소유의 권리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각 동맹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유보된다.
- C. 1. 위에 언급된 우선기간은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12개월,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하여는 6개월로 한다.
2. 이러한 기간은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개시한다. 출원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그 말일이 보호의 청구를 할 국가에서 법정의 휴일이거나 또는 관할청이 출원을 접수할 수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최초의 집무일까지 연장된다.
4. 위 2항에서 말하는 최초의 출원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같은 동맹국에서 낸 후출원은 전출원이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여하한 권리도 존속시키지 아니하고 후출원일 당시에 취소, 방기 또는 거절되어 있으며 또한 동 전출원이 우선권 주장의 근거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출원으로 간주되며 그 출원일이 우선기간의 출발점이 된다. 그 후로부터 전출원은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D. 1. 전출원의 우선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출원의 일부 및 그 출원을 한 동맹국의 국명을 명시한 선언을 할 것이 요구된다. 각 동맹국은 그러한 선언을 하여야 할 최종일을 결정한다.
2. 일부 및 국명은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하는 간행물 특히, 특허 및 명세서에 관한 간행물에 게재한다.
3. 동맹국은 우선권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최초의 출원에 관한 출원 서류(명세서, 도면등을 포함)의 등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출원을 접수한 당국에 의하여 인증된 등본은 여하한 공증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여하한 경우에도 그 후출원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내에 언제든지 무료로 제출될 수 있다. 동맹국은 그 등본에 같은 당국이 교부하는 출원의 일부를 표시하는 증명서 및 역문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출원을 할 때에는 우선권의 선언에 대하여 여타의 형식적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각 동맹국은 이 조항에 정하는 형식적 요건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정한다. 다만, 그 효과는 우선권의 상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그 이후에는 다른 증거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전출원의 우선권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원의 번호를 명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그 번호는 위 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된다.
- E. 1. 어느 동맹국에 있어서 디자인이 실용신안의 출원을 근거로 하는 우선권에 기하여 출원된 경우에 그 우선 기간은 디자인에 대하여 정하여진 것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
2. 또한 어느 동맹국에 있어서나 특허출원을 근거로 하는 우선권에 기하여 실용신안을 출원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역으로도 가능하다.

1 취지

디자인권은 법률상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서는 개별국에 각각 디자인을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야 하지만, 시간, 절차 및 비용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제도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선출원인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조약당사국 국민이 제1국에 정규의 출원을 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국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법 제33조 및 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1국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우선권주장의 요건

2.1 주체적 요건

2.1.1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2.1.2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인과 우리나라의 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예1) 제1국 최초출원의 출원인이 2인이고 우리나라 출원의 출원인이 1인일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예2) 제1국 최초출원인은 A이고, 우리나라 출원인은 B일 경우, 해당 디자인이 A에서 B로 권리승계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2 객체적 요건

2.2.1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은 디자인등록출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4조A.1. 참고)이어야 한다.

2.2.2 우선권 주장의 대상이 되는 출원은 최초의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한 것이어야 한다.

3 우선권 주장의 기간 및 절차

3.1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하여야 한다.

3.1.1 단,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참고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1조 제5항, 제51조의 3 제1항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서 우선권주장 및 증거서류 제출을 인정할 수 있다.

※ 우선권주장 후 3개월 이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미제출일 수 있으므로 만료일로부터 2개월 경과시점까지 기다린 후 심사를 진행한다.

- (1) 정당한 사유란 절차를 밟는 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의미
- (2)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사건의 발생 및 소멸 일자, ② 사건과 관계된 자, ③ 사건의 내용, ④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취한 조치를 관련 담당자와 조치내용, 조치시기에 비추어 상세하게 소명 필요
- (3)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증명가능한 객관적인 것으로서 관련자의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전산시스템 오작동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시스템 제작·판매사 등에서 작성한 시스템 동작오류 증명서면이 대표적 사례
- (4)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로 업무관련 이메일, 업무메뉴얼, 계약서 사본, 관계자 진술서 등도 제출 가능
- (5) 절차와 관계된 자가 복수인 경우, 복수 당사자 각각에 대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 모두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만 인정 가능
- (6) ① 변리사 등 임의대리인 단독의 실수, 태만, ② 출원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 부지의 주장, 실수, ③ 법령지식이 없거나 무자격자를 위임한 결과, ④ 기간 미준수의 직접적 원인을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경우, ⑤ 급작스런 중한 질병의 진단, 입원, 수술 등이 아닌 일상적인 질병, 중하지 않은 질병

치료, ⑥ 출원인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는 없으나 일반적인 관리의무 소홀이나 사전 조치가 미흡한 경우, ⑦ 출원인과 대리인간의 소통결여 등은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 예) 정당한 사유 인정 사례

자연재해로 인한 연락 두절	
사건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인 A는 외국인으로서 현지 대리인 B와 한국 대리인 C를 선임하여 출원을 관리해오고 있는데, B에게 한국 출원을 지시했고, 이에 B는 한국 대리인 C에게 연락을 취하고 전화통화 후 관련 자료를 송부 - 그러나 미국 현지의 기상악화에 의한 정전 등으로 관련 자료가 적시에 한국대리인 C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한국 대리인 C는 B의 자료 송부 사실을 마감일에서 7일이 경과된 후 기상정상화 이후에 B의 확인 메일을 통해 인지 - C는 즉시 당일에 관련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했고, 현지 언론의 기상관련 기사, B측의 피해상황사진, 현지 정전 기록 보고서, C에게 송신한 메일 등을 첨부함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경과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서 A는 B에게 사건을 위임한 이상 사건 발생 이전에 취한 조치는 타당 - B는 천재지변 전후 C와 교신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사건 후 확인 메일을 송부하는 등 타당한 조치 이행 - C는 사건 인지 후 즉각적으로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했으므로 정당한 사유 인정
급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의식장애	
사건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출원인 A는 한국 대리인 C에게 우선권주장을 지시했는데, C는 마감일 이틀 전에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실신해 내과의원에 입원했고, 검사결과 급성 빈혈과 허혈증 발작이 겹쳐 마감일을 일주일 경과시점까지 수면유도를 이용한 안정치료를 받음 - C는 퇴원 후 즉각적으로 지연없이 우선권주장 서류를 제출하였고 질병에 관한 진단서류, 입원사실 증명서 등 권리회복에 관한 서류를 첨부함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권주장 기간의 미준수는 갑작스런 발병에 의한 것으로서 C가 마감일 이전에 빈혈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건의 예측가능성은 없고 갑작스런 발병에 C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퇴원후 서류 미제출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지연없이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
----	---

✕ 예) 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례

개인의 실수와 관리 해태	
사건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인 A는 외국인으로서 국내 대리인 B에게 출원절차 진행을 위임하였고 B는 담당직원 C에게 출원서류제출을 지시했으나 실수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음 - 직원 C는 관련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었으나 대리인 B는 서류제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리인의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미제출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는 대리인으로서 보조자 C를 활용하면서 정기적으로 서류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에 관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건 전에 B의 조치는 타당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3.2 디자인등록출원 시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3.3 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기간은 원출원일이 아닌 분할출원시를 시점으로 기산한다.(법 제50조 제2항 단서)

3.5 특허청장은 디자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6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서류 중 도면의 기재내용이 디자인등록출원서상의 도면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어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 서류의 원용(규칙 제23조)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4 우선권 주장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의 동일성 판단

4.1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과 우리나라에 출원된 디자인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의 일반원칙

4.1.1 출원의 형식이나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우선권증명서류에 표현된 디자인 가운데 우리나라에 출원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4.1.2 우리나라에 출원된 디자인이 우선권증명서류에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에 기초하여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체 기재내용 및 최초 출원한 국가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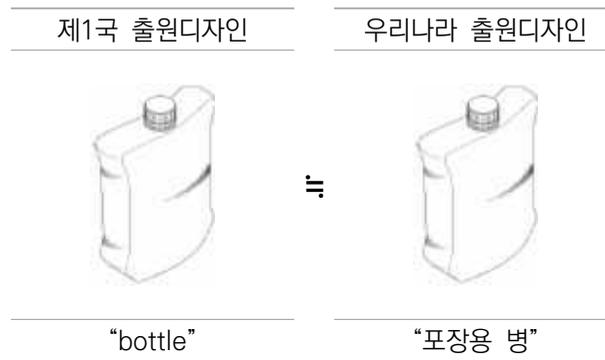
4.2 물품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4.2.1 최초출원 디자인의 물품명칭과 우리나라 출원디자인의 물품명칭이 다르더라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출원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의 용도·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물품의 동일성을 인정한다.

- 4.2.2 우선권증명서류에 기재된 물품의 명칭이 다수의 물품을 포괄하는 명칭이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의 물품의 명칭을 우리나라의 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물품의 동일성을 인정한다.

✕ 예) 우선권주장서류에 물품의 명칭이 “Bottle”로 적혀 있고 도면은 음료용 페트병에 관한 디자인이 표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출원서에는 물품의 명칭이 “포장용 병”이라고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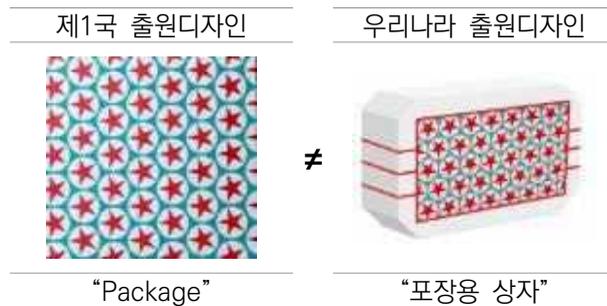
4.3 디자인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

- 4.3.1 제1국과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디자인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디자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 4.3.2 우선권증명서류의 기재내용 및 물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출될 수 있는 디자인을 우리나라에 출원한 경우에는 디자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 예) **인정** 제1국 출원서에 명칭이 “CADRAN DE MONTRE(불어로 ‘시계 다이얼’을 의미)”로 기재되어 있고 사시도만 도시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 출원서에는 “손목시계용 문자판”의 디자인을 표현한 나머지 부분의 도면이 도시되어 있으며, 이들 도면으로부터 도출된 디자인이 우선권주장증명서류에 표현된 사시도로부터 도출되는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일치한다.

4.3.3 우선권증명서류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의 위치·크기·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면 디자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예) ⊗ 불인정 제1국 출원에서 물품의 명칭에 “Package”로 적혀 있고 도면에는 평면적인 모양만이 도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면서 물품의 명칭을 “포장용 상자”로 적고 포장용 상자에 관한 전체디자인의 일부분에 그 모양을 도시하였다.



4.3.4 우선권증명서류에 여러 개의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물품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규칙 [별표 5] (한 별 물품의 구분)에 규정된 한 별의 물품이거나 한 별의 물품으로 인정되는 디자인으로 출원하였다면 디자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4.3.5 여러 개의 우선권주장에 기초한 디자인들을 결합하여 구성한 디자인을 우리나라의 출원서에 표현한 경우에는 디자인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예) ⊗ 불인정 제1국 출원이 “손목시계 본체”에 관한 디자인이고 제2국 출원은 “손목시계 줄”에 관한 디자인인데, 우리나라의 출원서에는 완성품에 관한 디자인인 “손목시계”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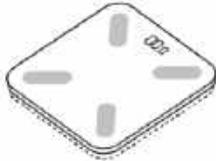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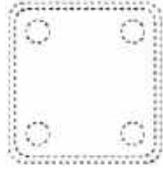
4.3.6 우선권증명서류에 표현되어 있는 디자인이 완성품의 디자인인 경우에, 우리나라의 출원서에 그 완성품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품에 관한 디자인을 표현하였다면 디자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3.7 우선권증명서류에 표현되어 있는 디자인이 전체디자인에 관한 출원인데 우리나라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디자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최초 출원국가에서 부분디자인 출원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록받고자하는 부분의 실질적인 디자인의 동일성, 물품의 명칭, 디자인의 설명, 물품류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3.8 최초 출원한 국가의 제도적 특성(EU·미국 등은 전체 또는 부분디자인을 표시하지 않고 출원되며 도면요건도 우리나라와 상이함)상 우선권증명서류에 표현되어 있는 디자인이 도면의 일부(사시도, 정면도 등)만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최초 출원과 국내출원서에 나타난 도면 그 자체를 기초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

※예 1) **인정** EU에 출원된 디자인이 정면도 또는 사시도 한 개만으로 표현되어 있고 국내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되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물품명은 “체중계”이며, 「디자인의 설명」란에 “점선 부분은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임”으로 기재한 경우)

제1국 출원 도면	특허청 출원 도면	
 <p>〈1.1〉</p>	 <p>[도면 1] 사시도</p>	 <p>[도면 2] 좌측면도</p>
	 <p>[도면 3] 아래면에서 바라본 도면</p>	 <p>[도면 4] 뒷면에서 바라본 도면</p>

✕ 예 2) **인정** EU에 출원된 디자인이 정면도 또는 사시도 한 개만으로 표현되어 있고 국내에 전체디자인으로 모든 도면을 구비한 상태로 출원되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관 참고자료] 주요 국가의 디자인공보 웹사이트

- i) 국제지식재산기구(WIPO)
 - 헤이그 익스프레스 (www.wipo.int/designdb/hague/en/)
 - 국제디자인 공보 (www.wipo.int/haguebulletin/?locale=en)
 - ii) 유럽공동체 상표·디자인청(EUIPO)
 - 디자인부 (www.tmdn.org/tmdsview-web/welcome.html)
 - iii) 미국 특허상표청(USPTO)
 - Patent Public Search
(pubs.uspto.gov/pubwebapp/static/pages/landing.html)
 - iv) 일본 특허청(JPO)
 - J-PlatPat (www.j-platpat.inpit.go.jp/web/all/top/BTmTopEnglishPage)
 - v)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CNIPA)
 - 중국전리공포공고
<http://epub.cnipa.gov.cn/Index>
- ※ 제1국 출원디자인과 우리나라 출원디자인의 동일성 여부 판단 시에 활용

4.3.9 제1국 출원 디자인의 일부 도면(우선권 증명서류 도면)에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도면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일치를 수정한 도면으로 국내에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5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 5.1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는 출원 당시 우선권 주장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다.
- 5.2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는 출원 당시 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우선권 주장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5.3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기간
- 5.3.1 우선권 주장에 관한 출원서의 기재사항(출원국명, 출원종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을 보정 및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다만,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다.
- 5.3.2 그 밖에 우선권 주장에 관한 우리나라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일반적인 보정기간에 따른다.

6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 절차

- 6.1 우선권 주장의 적법성 여부는 최초 출원국의 출원일과 국내출원의 출원일 사이에 공지디자인이 존재해 최초 출원국 출원일을 국내출원일로 간주하여야만 거절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판단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을 인정하고 실체심사를 진행한다.
- 6.2 최초 출원국의 출원일과 국내출원의 출원일 사이에 공지디자인이 존재해 우선 주장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우선권주장을 불인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거절이유 통지(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선출원 등)와 함께 우선권불인정 이유를 통지한다.(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8조제2항 참고)
- 6.3 우선권증명서류가 출원일(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6.3.1 우선권 주장은 효력이 없으며 우선권 주장 불인정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6.3.2 우선권 증명서류가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더라도 법 제51조제5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서류가 제출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심사를 보류한다.

6.4 우선권증명서류가 출원일(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51조제5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4.1 증거서류 미제출사유가 법 제51조제5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23.12.21)이후 출원된 디자인에 해당)

6.4.2 증거서류 미제출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3.1.1을 참고한다.

디자인보호법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7 우선권 주장 인정의 효과

7.1 우선권 주장이 인정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제46조(선출원)를 적용할 때,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최초 출원일을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로 본다.

7.2 우선권 주장이 인정된 디자인등록출원은 법 제33조 및 제46조(신규성, 창작 비용이성, 선출원 등)의 판단 시점을 최초출원국가의 출원일로 판단하므로 우선권 주장기간 이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공지된 디자인 등에 의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제5장

출원공개



V

Part

심사
일반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52조(출원공개)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212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특허청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9조(출원공개の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0조(출원공개 効果의 특례) 제5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은 각각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된”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령 ▼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48조(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① 디자인등록공고일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고되거나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법 제212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이하 “등록디자인공보”라 한다)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이하 “공개디자인공보”라 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

1 취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은 등록결정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출원 계속 중에 있는 디자인을 공개함으로써 출원인은 디자인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상금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디자인 보호법은 출원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의 내용을 조기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출원공개구분

2.1 출원인의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

- 2.1.1 출원인은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2.1.2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뿐 아니라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2.1.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출원공개신청은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2.1.4 출원공개신청은 그 출원에 대한 최초의 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 2.1.5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른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2.2 법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에 의한 출원공개

- 2.2.1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같은 날에 출원된 2이상의 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받을 하나의 디자인을 정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법 제46조(선출원) 제2항에 따라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은 특허청장이 공개한다.
- ※ 같은 날 출원한 동일·유사한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협의 또는 선택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아 법 제46제2항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2이상의 디자인을 모두 공개한다.

3 출원공개와 승인

- 3.1 심사관은 디자인의 가분류일 또는 출원공개신청서의 이송일 중 늦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원공개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디자인심사사무취급 규정 제32조)

4 공개디자인공보

- 4.1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디자인공보에 게재한다.
- 4.2 법 제46조(선출원) 제2항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출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디자인공보에 게재한다.

5 출원공개와 예외

- 5.1 출원된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5.2 위 5.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2호를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5.3 출원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4 법 제189조(출원공개와 특례)에 따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출원공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출원공개와 효과

- 6.1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은 그 출원을 한 후에 법 제52조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법 제33조 제3항)

- 6.2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출원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출원을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6.3 출원공개 신청으로 공개된 출원디자인은 해당 공개공보발행일에 공지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인용디자인이 된다.(법 제33조 제1항 및 법 제33조 제2항)
- 6.4 출원공개 이후에는 그 출원에 관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하다.(법 제206조)
- 6.5 비밀디자인의 경우에 출원공개 신청을 하면 비밀디자인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법 제43조 제6항)

제6장

정보제공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55조(정보 제공) 누구든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 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 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 된 경우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49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5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간행물 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 취지

디자인심사에 있어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실한 디자인의 권리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중이 제공한 정보를 심사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디자인보호법은 정보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누구든지 출원디자인이 법 제62조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특허로(www.patent.go.kr) >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을 통하여 익명으로 누구나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2 정보제공의 요건

2.1 법 제55조(정보 제공)에 따라 누구든지 출원디자인이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그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1.1 정보제공은 공중에 의한 심사협력제도이므로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심사, 일부심사등록출원 모두에 대해 가능하다.

2.1.2 정보제공은 설정등록이전에 가능하며 제공사유는 법 제62조에 따른 거절이유와 동일하다.

※ 법 제66조의 2에 의한 등록결정이후의 직권재심사의 경우 설정등록이전에 제출된 정보제공내용을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제4부 제2장 직권보정 및 직권재심사 참조).

2.1.3 정보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제출서에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거서류는 간행물 등 통상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제출될 수 있는 증거 등으로 할 수 있다.

3 정보가 제공된 출원에 대한 심사

3.1 정보가 제공된 출원에 대한 심사에 있어 그 정보 및 증거를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이유로 활용할 수 있다.

3.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도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2항에 불구하고 제공된 정보 및 증거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이유로 활용할 수 있다.

4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 통보

- 4.1 정보가 제공된 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 결정을 통지할 때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증거의 채택여부 및 해당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 결정의 사실을 통보한다.
- 4.1.1 특히로 웹사이트(www.patent.go.kr)를 통한 '익명 정보제공'은 정보제공 활용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수 없다.
- 4.2 하나의 출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한 정보 및 증거로 1회 이상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증거의 채택여부 및 해당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의 사실을 한 차례만 통보하면 된다.
- 4.3 정보가 제공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 제공된 정보 및 증거가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에 해당한다면 정보제공자에게 디자인일부심사 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 4.3.1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에 정보가 제공되면 법 제66조의 2에 의한 직권재심사를 하지 않고 정보제공자에게 정보 활용여부에 대한 결과 통지 시 이의신청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한다.

제7장

우선심사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61조(우선심사)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61조제1항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령 ▼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7의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7의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9.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11. <삭제>
12.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13. <삭제>
14.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2018. 1. 2. 시행)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57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61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디자인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호라목에 따른 출원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출원 시 또는 출원 중에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 한다.

- 1.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
 -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 다.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출원을 포함한다)
-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 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사.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또는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
- 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출원
- 자. 국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 (3)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 (5)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 (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 (7)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 (9)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차. 삭제
- 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해당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만 해당한다)

- 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 파. 삭제
- 하.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 거. 삭제
- 너.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출원(2018. 1. 2. 시행)

[별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제5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신청이유 (관련조문)	증빙서류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출원 (제4조제1호)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등)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 (제4조제2호가목)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녹색기술 등과 직접 관련된 출원 (제4조제2호나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기술개발사업 선정공고 등) 2. 금융기관으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3. 환경마크인증서, 탄소성적표지인증서,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발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발행기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5. 그 밖에 국가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제4조제2호다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수출실적 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3. 디자인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p>4. 수출계약 입증서류</p> <p>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 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p> <p>6. 그 밖에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p>
<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라목)</p>	<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p>
<p>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출원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 (제4조제2호마목, 바목, 사목)</p>	<p>다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원된 디자인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사업자등록증 등)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p>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아목)</p>	<p>「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p>
<p>국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자목, 차목)</p>	<p>국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결과물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p>
<p>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제4조제2호카목)</p>	<p>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외국 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p>

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 중인 출원 (제4조제2호타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실시품의 실물사진,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2.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3. 그 밖에 실시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출원인이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제4조제2호타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시제품의 실물사진, 견본,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2.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3.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4. 출원된 디자인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실시 준비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삭제	삭제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제4조제2호하목)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출원 (제4조제2호너목)	제4조제2호너목에 따른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 또는 설명하는 서류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1통(별표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 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청장이 부여한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특허로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서를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 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삭제

제7조(우선심사 신청의 특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취지

디자인 심사는 디자인등록출원된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 정책적 목적에서 심사 순서에 예외를 두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은 타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조기에 권리가 부여되도록 하였다.

2 우선심사의 요건

2.1.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2.1.1 출원공개(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를 포함한다)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인의 허락이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2.1.2 시행령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에 따라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서 정한 출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예 1) **인정** 우선심사를 위한 증빙서류에 표현된 디자인이 컴퓨터 그래픽 렌더링(rendering) 등을 통해 실물사진에 버금가는 재현성을 갖추고 있어 실시준비중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예 2) **인정**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우선심사를 위한 증빙서류에 해당 디자인의 용도, 기능, 작동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실시 준비중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예 3) **인정**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20-39호)에 의해 디자인공지등록한 디자인을 우선심사를 위한 증빙서류로 제출했고,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창작의 특성, 물품의 거래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시준비중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2 우선심사의 신청인

2.2.1 출원인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2.3 우선심사 신청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2.4 출원공개(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를 포함한다) 후 디자인등록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실시 중인 경우, 그 자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3 우선심사의 신청절차

2.3.1 우선심사신청서

(가) 우선심사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 전체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3.2 우선심사신청 설명서

- (가) 우선심사신청서에는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서식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2.3.3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 (가) 우선심사의 신청서에는 각 신청이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하나 이상 첨부하여야 한다.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증빙 서류의 제출이 없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로 인정할 수 있다.

3 우선심사 신청의 보정 및 보완

3.1 우선심사신청의 보정

- 3.1.1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법 제47조에 따라 특허청장 명의로 1개월 이내에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취급규정 제14조)

- (1) 행위능력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경우
- (2)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 (3)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 3.1.2 심사관은 위 3.1.1의 우선심사신청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보정서 등의 제출이 없거나 보정명령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명의로 그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취급규정 제15조)

3.2 우선심사신청의 보완

- 3.2.1 우선심사신청서 및 첨부서류 중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관 명의로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취급규정 제35조)

3.2.2 시행령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제10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로 실물사진, 견본,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그밖에 실시준비증임을 입증하는 서류에 표현된 디자인과 출원디자인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4 우선심사 신청의 각하

4.1 우선심사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 각하통지를 발송한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 하나의 디자인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통지를 발송한다.

4.1.1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4.1.2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의 정상적인 심사착수 예정시기가 우선심사신청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4.1.3 우선심사신청에 대한 보완서류를 지정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1.4 우선심사신청에 대하여 제출된 보완서에 의하여도 해당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4.1.5 출원이 취하된 경우

4.1.6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하나의 신청서에 모든 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5 우선심사 결정

5.1 우선심사 결정 통지

5.1.1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우선심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결정서를 발송한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모든 디자인이 우선심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5.2. 우선심사 결정 기한

5.2.1 심사관은 물품의 가분류일 또는 우선심사신청서의 심사관 이송일 가운데 늦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5.2.2 우선심사신청서에 대한 보정서·보완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 또는 해당 서류의 심사관 이송일 중 늦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5.2.3 우선심사신청 대상 여부에 관한 관계기관의 의견서 또는 우선심사심의협회의 결정서가 이송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심사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

5.2.4 출원인이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우선 심사용 선행디자인조사 결과보고서의 심사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

6 우선심사 결정 후의 심사 착수 기한

6.1.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착수한다.

6.2. 우선심사 출원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서 및 보정서는 심사관 이송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6.2.1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2.2 제출된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며, 만약 심사관 이송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면 지정기간 만료일이 아직 경과하지 않는 경우

제8장

재심사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개정 2017.3.21, 2021.10.19, 2023.6.20>

1.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3.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제64조(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

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60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취지

재심사청구제도는 출원인이 디자인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면 등을 보정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관으로부터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지 않고서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재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재심사 청구 대상

2.1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

2.1.1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인은 일정기간 이내에 출원서 기재사항, 도면의 기재사항 및 도면, 사진이나 견본을 보정하여 법 제64조(재심사의 청구)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3 단, 기존의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3 청구절차 및 효과

3.1 재심사의 청구방법

3.1.1 보정서의 [그 밖의 사항]란에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1.2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출원의 보정을 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1.3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제64조 제4항)

3.2 재심사 청구의 기한

3.2.1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2.2 법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제1항에 의하여 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이내

3.3 재심사 청구의 효과

3.3.1 법 제6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제64조 제3항)

4 재심사 신청된 출원의 심사

4.1 재심사 착수 기한

4.1.1 재심사 청구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 재심사 범위

4.2.1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은 재심사 청구의 사유(당초 거절결정의 이유)가 아닌 다른 사유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4.3.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4.3.1 재심사에 의하여도 당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한다.

4.3.2 재심사에 의하여 당초 거절이유가 해소되고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한다.

4.3.3 재심사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보통의 심사절차에 따른다.

제9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사용 또는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 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20.>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6.20>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4.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관련 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7.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8.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선출원)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 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 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10.19>

1.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1 취지

유행의 주기가 짧고, 모방이 비교적 쉬운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두고 있으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의 등록요건 중 일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히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2 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

2.1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으로 한정한다.

2.1.1 제1류(식품)

2.1.2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2.1.3 제3류(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2.1.4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2.1.5 제9류(물품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2.1.6 제11류(장식용품)

2.1.7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2.2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의 디자인이 일부심사등록출원된 경우에는 법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제4항에 위반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3.1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3.1.1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 법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 (4)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 제2호(주지형상 등에 의한 창작비용이성)에 해당하는 경우
- (5) 법 제34조(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 (6) 법 제37조제4항(디자인 일부심사등록을 할 수 있는 물품), 제39조(공동출원),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규정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7) 조약에 위반된 경우
- (8) 관련디자인으로 출원된 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되거나 관련디자인등록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 (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존속기간 만료, 연차등록료 미납에 의한 소멸,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 확정 등)된 경우
 - (다) 기본디자인으로 표시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라) 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또는 출원인)와 다른 경우
 - (마) 관련디자인으로 출원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
 - (바)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출원된 경우
 - (사)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아) 2014년 6월 30일 이전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것으로서 2015년 7월 1일 이후 출원된 경우

〈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사유별 적용조문 비교표 〉

거절결정 사유	심사등록 출원적용	일부심사등록출원	
		적용	미적용
제3조제1항 본문	○	○	
제27조	○	○	
제33조	○	-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 제2항 제2호(주지형상 등에 의한 창작비용이성)	- 제1항(신규성) 각호 - 제2항 제1호(공지디자인 등에 의한 창작비용이성) - 제3항(확대된 선출원)
제34조	○	○	
제35조	○	-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 - 기본디자인의 소멸, 거절결정, 무효, 취하, 포기 - 기본디자인과 출원인(권리자) 상이 - 기본디자인과 비유사 -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3년경과 후 출원 - 제3항	- 제1항의 규정 중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 - 제2항(자기의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
제37조제4항	○	○	
제39조	○	○	
제40조	○	○	
제41조	○	○	
제42조	○	○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		○
조약에 위반된 경우	○	○	

3.1.2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거절결정하지 않는다.

- (1)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 각호
- (2) 제33조 제2항 제1호(공지디자인 등에 의한 창작비용이성)

- (3) 제33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
- (4)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의 규정 중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 제2항(자기의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
- (5) 제46조(선출원) 제1항·제2항

3.1.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5조(정보 제공)에 따른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위 3.1.2에 불구하고 그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3.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보정할 수 없다.
(법 제186조제2항)

제10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6.20>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

등록 이의신청서 부분(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 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① 디자인일부심사 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 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나 이의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합의체는 제68조 제3항 및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심사장은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으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취소 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결정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취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심사관은 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심사하여 등록결정을 한다. 그러나 일부심사등록출원디자인이 등록되어 권리가 존속되는 경우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등록요건 위반의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2.1 이의 신청인

2.1.1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2 이의신청의 이유

2.2.1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1항

2.2.2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2.2.3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2.2.4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2.2.5 제35조 제2항(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제3항(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디자인)

2.2.6 제39조(공동출원)

2.2.7 제46조(선출원) 제1항(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다른 날 출원)·제2항(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같은 날 출원)

2.2.8 조약에 위반된 경우

2.3 이의신청의 절차

2.3.1 이의신청의 기간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한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이란 해당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을 말한다

(2) 법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그 디자인에 대한 비밀이 해제되어 도면 등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의 발행일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3.2 복수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

(1)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중복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도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3.3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1)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2.3.4 이의신청의 각하

- (1) 이의신청서가 법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에 지정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서 부분을 송부하지 않고 각하한다.
- (2) 이의신청의 각하
 - (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 보정이 불가능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 (나)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내에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분을 디자인권자에게 송부하지 않고,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정으로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 (다)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2.4 이의신청의 취하

- 2.4.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취하할 수 있다.
 - (1) 법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가 있을 후
 - (2)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제2항에 따른 결정 등본이 송달된 후

3 이의신청의 심사 절차

3.1. 이의신청서 부분 송달 및 답변 제출

- 3.1.1 심사관합의체의 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권자에게 이의신청서 부분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1.2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해당 디자인권의 전용 실시권자나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3 심사장은 보정된 이의신청이유 등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자 등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1.4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경우 심사장은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답변서 부분을 송부할 수 있다.

3.2.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3.2.1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2.2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 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3.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3.3.1 심사관은 다음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3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 (2) 법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에 따른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 (3) 법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1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 (4) 법 제78조(준용규정)에서 준용하는 법 제145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5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3.2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취소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3.3.3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3.3.4 이의신청 중에 해당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이 소멸될 경우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의 효과

- 4.1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소멸한다.
- 4.2 이의신청기각결정이 되면 그 디자인권은 유지되며, 이의신청인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장

부분디자인



V

Part

심사
일
반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 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 등록출원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개정 2017.3.21, 2021.10.19, 2023.6.20>
1.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3.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부터 30일 이내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1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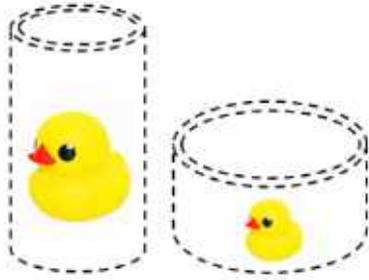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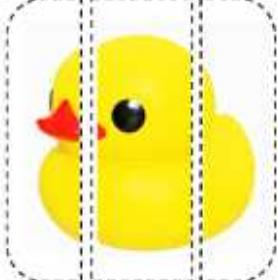
부분디자인제도는 물품(화상을 포함)의 부분에 관하여 독창적인 창작을 했을 경우 당해 부분을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의 모방을 차단하고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2 정의

- 2.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2.2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 및 화상이며, 물품의 부분, 한 벌의 물품의 부분과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

2.2.1 “물품의 부분”이란 물품의 전체 중에 일정한 범위를 점하는 부분의 형태로서 해당 물품에 있어서 다른 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2.2.2 “한 별의 물품의 부분”이란 한 별의 물품의 전체 중에 한 별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일정한 범위를 점하는 부분으로서 해당 한 별의 물품에 있어서 다른 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한 별의 그릇 세트〉</p>	 <p style="text-align: center;">〈한 별의 접시 세트〉</p>
<p>오리무늬가 그릇마다 공통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다른 한 별의 물품과 대비 가능</p>	<p>한 별의 접시가 일체로서 오리무늬를 형성하고 있고 다른 한 별의 물품과 대비 가능</p>

2.2.3 “화상디자인의 부분”이란 화상의 전체 중에 일정한 범위를 점하는 부분으로서 해당 화상에 있어서 다른 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3 성립요건

3.1 부분디자인에서 물품의 부분은 물품성이 인정되는 물품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부분디자인이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1.1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통상의 물품에 해당할 것

- (1) 독립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유체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 (2)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어느 하나의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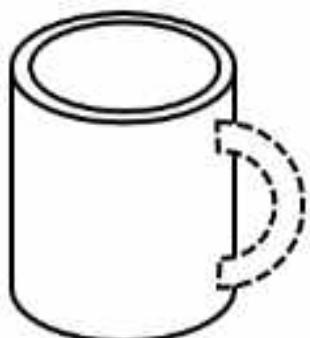
3.1.2 물품의 부분의 형태라고 인정될 것

(1)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은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만을 표현한 것이 아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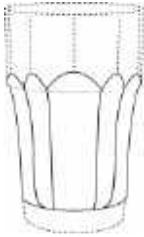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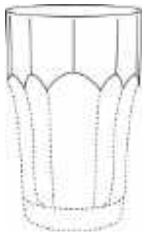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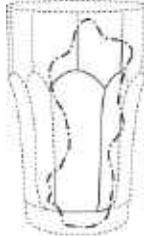
✖ 예)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고 물품의 부분만을 표현한 누비이불의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물품명칭] 누비이불 [출원번호] 30-2014-0036473 [공개번호] 30-2014-0001114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은 표현” (등록불가)	“물품의 형상을 수반한 표현” (등록가능)
	

(2) 물품 형태의 실루엣을 표현한 것이 아닐 것

[물품명칭] 머그컵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하는 부분의 형태를 실루엣만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물품의 형태로 인정불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인정가능
	

3.1.3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

[사례] “물 컵”		
창작단위로 인정	창작단위로 인정	창작단위로 불인정
		

3.1.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 또는 수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을 것

[참고]	
<p>☞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합성물의 부분디자인으로는 등록 가능하다.</p> <p>☞ 다만,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구성각편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물품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p> <p>등록번호 30-0917478</p>	<p>[물품명칭] 조립완구용블록</p> <p>[디자인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다른 완구와 결합되어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하생략)</p> <p>※ 설명의 편의상 이외의 도면은 생략함</p>
 <p>[사시도]</p>	

3.2 부분디자인에서 한 별의 물품의 부분은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으로서 인정되는 한 별의 물품의 부분을 말하는 것인 바, 부분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3 부분디자인에서 화상의 부분은 화상디자인으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부분을 말하는 것인 바, 부분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공업상 이용가능성

4.1 부분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4.1.1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경우.

(1)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을 파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르지 않았거나 이와 상응하는 표현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예) **인정** 채색(coloring) 또는 경계선(boundary) 등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테이프 디스펜서’ 디자인의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하는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연두색으로 착색한 사례

- (2)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도면 등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3)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그 경계를 1점쇄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도시하지 않았거나, 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물품명칭] 화분

인정 형태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1점 쇄선 등으로 경계선을 도시하지 않아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하는 부분이 '화분'의 가장자리 부분이고 '화분'의 수용부는 제외되는 것이 자명하므로 등록받고자하는 부분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



4.1.2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전체형태가 도면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온전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구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 예) **인정** 손목시계의 부분디자인이며 밴드부분의 일부 형태가 생략되어 표현되어 있으나 부분디자인으로 보호받고자하는 시계 케이스부분이 시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크기, 범위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다.



[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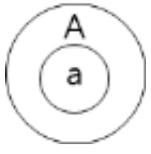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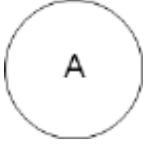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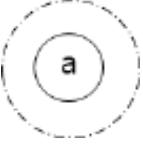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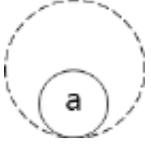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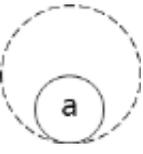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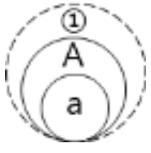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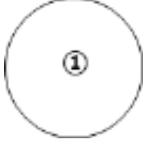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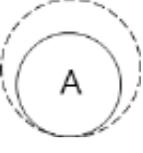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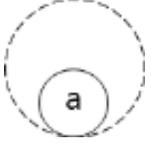
5 신규성

5.1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있기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공용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디자인의 출원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1) 해당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 (2) 해당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디자인

5.2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시 신규성 요건을 위반한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

유형	공지디자인 (A, a를 포함하는 A)	출원디자인 (A, A', a, a')
1	부분디자인 (A)	부분디자인 (A, A')
2	완성품 (a를 포함하는 A)	부분디자인 (a, a')
3	부품 (a를 포함하는 A)	부분디자인 (a, a')
4	부분디자인 (a를 포함하는 A)	부분디자인 (a, a')

공지디자인	출원디자인		
 <p>완성품A (a를 포함하는 A)</p>	 <p>완성품A,A'</p>	 <p>부품a,a'</p>	 <p>부분디자인a,a'</p>
 <p>부품A (a를 포함하는 A)</p>	 <p>부품A,A'</p>	 <p>부분디자인a,a'</p>	
 <p>부분디자인A (a를 포함하는 A)</p>	 <p>완성품①,①'</p>	 <p>부분디자인A,A'</p>	 <p>부분디자인a,a'</p>

※ A디자인 또는 a를 포함하는 A디자인이 출원공개, 설정등록 또는 공지된 이후 출원된 출원디자인 A, A', a, a'디자인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A=A, A≐A', A>a, a≐a'의 관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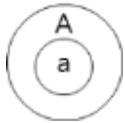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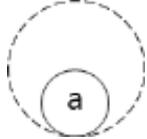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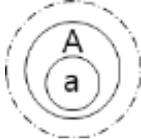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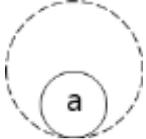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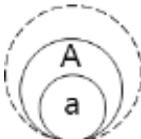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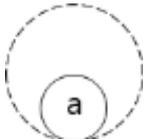
6 창작비용이성

6.1 부분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판단기준은 전체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전체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기능 및 용도, 위치, 크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7 확대된 선출원

7.1 부분디자인과 관련된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

유형	선출원 디자인 (a를 포함하는 A)	후출원 디자인 (a, a')
1	완성품	부분디자인
2	부품	부분디자인
3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선출원 디자인(A)	후출원 디자인(a, a')	
 완성품A	 부품 a, a'	 부분디자인 a, a'
 부품A (a를 포함하는 A)	 부분디자인 a, a'	
 부분디자인A (a를 포함하는 A)	 부분디자인 a, a'	

7.2. 선출원 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한 판단은 출원 및 보정 시 제출된 도면을 기초로 한다.

7.2.1 부분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파선으로 표현된 부분 등을 포함한 전체디자인 중에 후출원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이 대비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전체를 표현하는 정·배면도, 평·저면도, 좌·우측면도, 사시도 등의 필수도면과 디자인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및 사용상태도 등은 후출원된 부분디자인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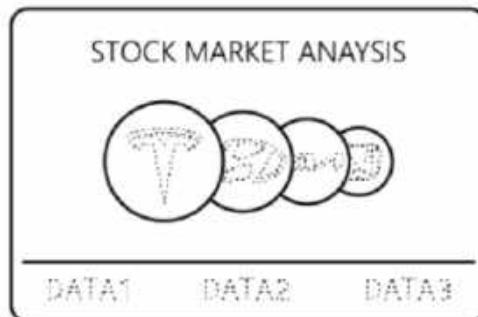
8 선출원

8.1 부분디자인에 대한 선출원 규정은 부분디자인등록출원 간에만 적용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부분디자인에 관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유사한 경우에는 전체디자인등록출원과 부분디자인등록출원 간이라도 예외적으로 선출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9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9.1 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 적용에 있어 부분디자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분디자인의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포함하여 물품 전체의 형태를 판단 대상으로 한다.

인정 다음과 같은 화상디자인출원의 경우 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하는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법 제34조제3호에 해당하는 형태(예: 타인의 표장)가 표현되어 있으나, 이는 ‘주식거래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정보표시용 화상디자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예시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서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없으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정보표시용 화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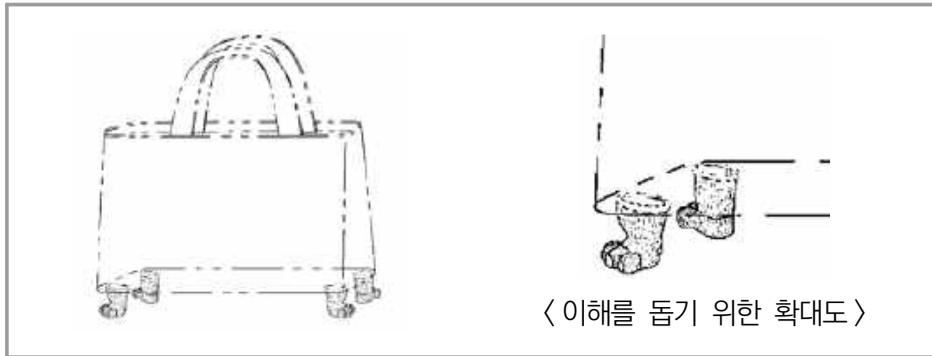
10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10.1 1디자인인지 여부는 출원서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에 기재된 출원인의 창작의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 또는 각 부분으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10.1.1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

(1)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대칭이 되거나 한 쌍이 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 예) 핸드백



(2)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게 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 예) 휴대폰 케이스

< 대법원 2012후3343(2013.2.15. 선고) 판결 참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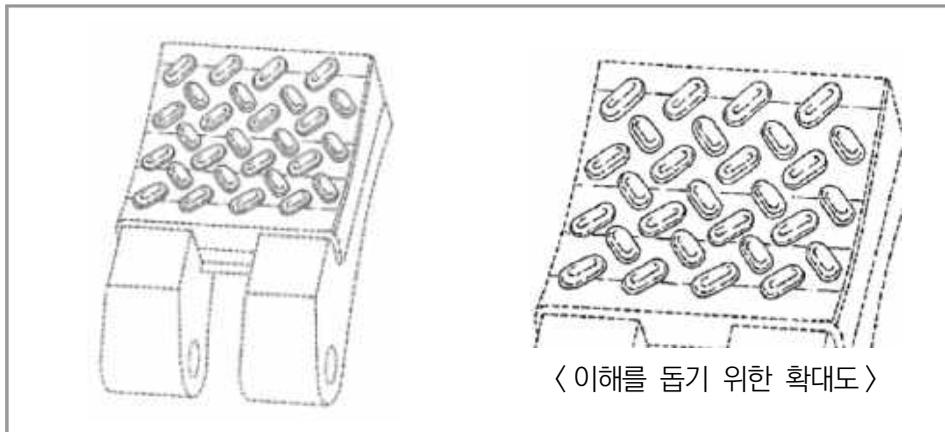
		
그림1	그림2	그림3

이 사건 출원디자인 중 [그림 2] 부분은 이를 보는 사람이 “토끼 귀” 형상으로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토끼의 전체 형상에서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 중 [그림 3] 부분이 휴대폰 케이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나 과장 또는 추상화가 수반되기 마련이고, 토끼 꼬리는 뭉툭하고 둥근 털 뭉치 형상인데 이와 유사한 형상의 [그림 3] 부분은 휴대폰 케이스의 하단 뒷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토끼 귀” 형상의 [그림 2] 부분은 휴대폰 케이스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림 3] 부분을 “토끼 꼬리” 형상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토끼 형상”으로 인식하면서 [그림 3] 부분을 “꼬리”로 호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그림 2] 부분은 “토끼 귀”로, [그림 3]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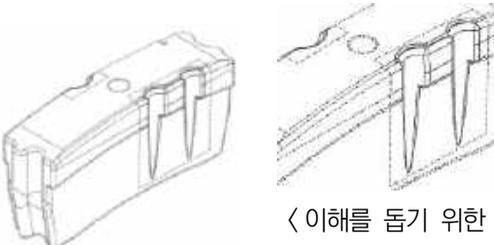
✧ 예) 미세분쇄기용 스윙 해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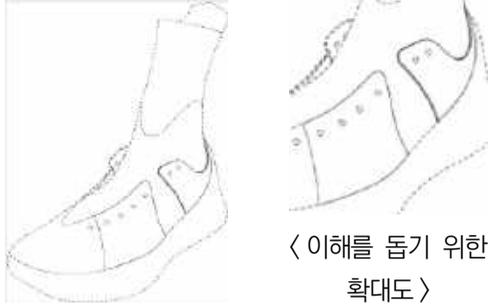
10.1.2 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

(1)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전체 또는 각 부분으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 예 1) 잉크젯프린터용 잉크스틱

 <p style="text-align: center;">〈이해를 돕기 위한 확대도〉</p>	<p>디자인의 설명 : “정면에 있는 2개의 홈과 뒷면에 있는 한 개의 홈이 전체로서 프린터에 카트리지가 장착할 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p>
--	--

✧ 예 2) 신발

 <p style="text-align: center;">〈이해를 돕기 위한 확대도〉</p>	<p>디자인의 설명 : “신발의 발등부분과 발목부분의 걸창이 각 부분으로서 발을 고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p>
---	--

✧ 예 3) 자동차

	
[도면 1]	[도면 2]
디자인의 설명 : 자동차의 전면에 대칭을 이루고 있는 램프디자인	

11 유사여부 판단

11.1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1.1.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11.1.2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기능·용도

11.1.3 해당 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크기·범위

11.1.4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11.2. 상기 11.1.1부터 11.1.4까지에 대하여 전부가 동일한 경우 양 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으로 보고, 이 중 하나 이상이 유사하고 나머지가 동일하거나 전부가 유사한 경우 양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며, 이 중 하나 이상이 유사하지 않으면 양 디자인은 비유사로 판단한다.

11.3 다만, 양 디자인의 등록받으려고 하는 부분디자인은 동일하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제외되는 형상 또는 모양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차이가 극히 미세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동일하여야만 양 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으로 본다.

12 요지변경

12.1 부분디자인의 보정에 있어 요지변경 판단기준

12.1.1 “부분디자인에 있어서 요지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초에 출원된 디자인과 보정된 디자인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기능·용도

- (3) 해당 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크기·범위
- (4)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12.2 부분디자인의 보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 12.2.1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으려는 부분으로 보정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의 보정으로 인하여 등록 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가 변경된 경우
- 12.2.2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여부를 삭제하는 보정
- 12.2.3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 출원인지 전체디자인 출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부분디자인 여부를 삭제하는 보정
- 12.2.4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 출원인지 전체디자인 출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부분디자인 여부를 추가 하는 보정
- 12.2.5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여부를 추가하는 보정
- 12.2.6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
- 12.2.7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보충하는 보정

12.3 부분디자인의 보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12.3.1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보정하여도 등록 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 12.3.2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여부 란을 삭제하는 보정
- 12.3.3 당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여부를 추가하는 보정
- 12.3.4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
- 12.3.5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인 것이 명확하고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당연히 도출되는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보충하는 보정

제12장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V

Part

심사
일
반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동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한 벌의 물품의 구분(제38조제4항 관련)

1. 한 벌의 여성용 한복 세트
2. 한 벌의 남성용 한복 세트
3. 한 벌의 여성용 속옷 세트
4. 한 벌의 장신구 세트
5. 한 벌의 커프스단추 및 넥타이핀 세트
6. 한 벌의 흡연 용구 세트
7. 한 벌의 침장 세트
8. 한 벌의 커피 용구 세트
9. 한 벌의 화채 용구 세트
10. 한 벌의 반상기 세트
11. 한 벌의 다기(茶器) 세트
12. 한 벌의 양념용기 세트

13. 한 벌의 밥그릇과 국그릇 세트
14. 한 벌의 주기(酒器) 세트
15. 한 벌의 나이프, 포크 및 스푼 세트
16.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세트
17. 한 벌의 제기(祭器) 세트
18. 한 벌의 세면 화장대 세트
19. 한 벌의 책상과 책꽂이 세트
20. 한 벌의 거실용 가구 세트
21. 한 벌의 테이블 세트
22.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23. 한 벌의 응접 세트
24. 한 벌의 탁자와 의자 세트
25. 한 벌의 부엌가구 세트
26. 한 벌의 서도용구(書道用具) 세트
27. 한 벌의 필기구 세트
28. 한 벌의 오디오 세트
29. 한 벌의 개인용 컴퓨터 세트
30. 한 벌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받침대 세트
31. 한 벌의 문짚과 문설주 세트
32. 한 벌의 화장실 청소용구 세트
33. 한 벌의 세면용구 세트
34. 한 벌의 전기칫솔 세트
35. 한 벌의 캠핑용 식기 세트
36. 한 벌의 자동차용 바닥매트 세트
37. 한 벌의 야외용 테이블 및 의자 세트
38. 한 벌의 자동차용 시트커버 세트
39. 한 벌의 변기용 부속품 세트
40. 한 벌의 골프클럽 세트
41. 한 벌의 드럼 세트
42. 한 벌의 사무용구 세트
43. 한 벌의 자동차용 페달 세트

44. 한 벌의 차량용 오디오 기기 세트
45. 한 벌의 스피커 박스 세트
46.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
47. 한 벌의 유도복 세트
48. 한 벌의 검도복 세트
49. 한 벌의 등산복 세트
50. 한 벌의 스키복 세트
51. 한 벌의 승마복 세트
52. 한 벌의 야구복 세트
53. 한 벌의 손톱·발톱 미용기구 세트
54. 한 벌의 가방 세트
55. 한 벌의 지갑 및 벨트 세트
56. 한 벌의 화장용 브러시 세트
57. 한 벌의 머리빗 세트
58. 한 벌의 이발기구 세트
59. 한 벌의 면도용구 세트
60. 한 벌의 수유용품 세트
61. 한 벌의 출산 준비물 세트
62. 한 벌의 커튼 및 블라인드 세트
63. 한 벌의 트로피·상패 세트
64. 한 벌의 액자 세트
65. 한 벌의 정리용 수납상자 세트
66. 한 벌의 아이스박스 세트
67. 한 벌의 주방용 밀폐용기 세트
68. 한 벌의 와인잔 세트
69. 한 벌의 주방용 칼 세트
70. 한 벌의 주방용 국자 및 뒤집개 세트
71. 한 벌의 남자용 수의(壽衣) 세트
72. 한 벌의 여자용 수의 세트
73. 한 벌의 침실용 가구 세트
74. 한 벌의 가구용 손잡이 세트

75. 한 별의 운동용 아령 및 역기 세트
76. 한 별의 게임기 세트
77. 한 별의 제도용구 세트
78. 한 별의 스위치 및 콘센트 세트
79. 한 별의 원예용구 세트
80. 한 별의 수동공구 세트
81. 한 별의 드라이버 세트
82. 한 별의 손목시계 세트
83. 한 별의 반창고 세트
84. 한 별의 부항기 세트
85. 한 별의 프라이팬 세트
86. 한 별의 선박용 조타실(操舵室) 가구 세트
87. 한 별의 선박용 침실 가구 세트
88. 한 별의 선박용 휴게실 가구 세트
89. 한 별의 선박용 선원식당 가구 세트
90. 한 별의 자동차용 대시보드 패널(dashboard panel, center fascia) 세트
91. 한 별의 레저자동차의 침실용 가구 세트
92. 한 별의 주방용 붙박이(built-in) 물품 세트
93. 그 밖에 둘 이상의 물품이 한 별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취지

한 별 물품의 디자인제도는 2이상의 물품이 한 별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한 별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 물품이 서로 독립된 상태보다는 전체로서 상호 보완관계에 있을 때 그 효능 및 기능면에서 효과가 있는 한 별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성립요건

2.1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2.1.1 둘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을 포함한다)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될 것

※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1.2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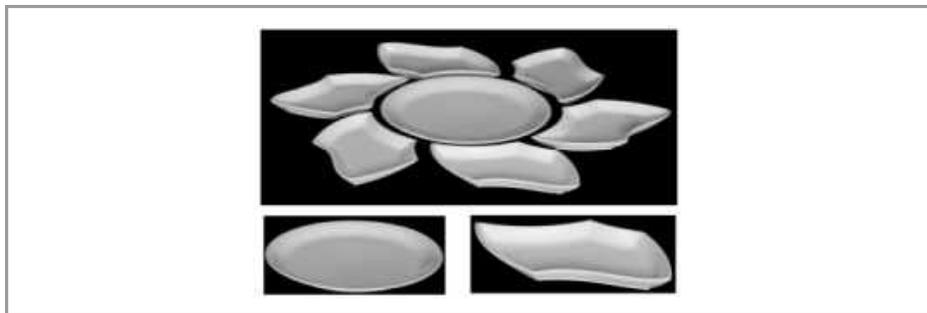
(1) 각 구성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되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 예) “한 벌의 접시 세트”에서 각 구성물품의 표현방법이 동일한 것



(2) 각 구성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이나 모양 등을 표현함으로써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 예) “한 벌의 접시세트”에서 각각의 접시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꽃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



- (3) 각 구성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관념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상을 주어 한 별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 예)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를 그림으로 각 구성물품에 통일되게 표현한 것 등



2.1.3 규칙 [별표 5](한 별의 물품의 구분)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할 것

2.1.4 한 별의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이 적합할 것

- (1) 한 별의 물품별 구성물품은 [별표](한 별의 물품별 구성물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위 2.1.1, 2.1.2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 (2) 한 별의 물품은 [별표](한 별의 물품별 구성물품) 또는 위 (1), (2)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 중 2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3)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 별의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상거래 관행상 당 업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한 별의 물품으로 본다. 다만, “한 별의 태권도복 세트”와 같은 전문 운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는 모자, 양말, 신발, 보호장구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끼리 된 경우(예: 태권도복 상의와 등산복 하의를 출원한 경우)에는 한 별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2. “한 별의 물품의 부분”이란 한 별의 물품의 전체 중에 한 별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일정한 범위를 점하는 부분으로서 해당 한 별의 물품에 있어서 다른 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2.3 부분디자인에서 한 별의 물품의 부분은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으로서 인정되는 한 별의 물품의 부분을 말하는 것인바, 부분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제11장 부분디자인 2.2.2 참조).

3 공업상 이용가능성

3.1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 제출 방법

3.1.1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1조의 도면을 제출한다.

3.1.2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1.3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3.2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이 아래와 같은 경우,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3.2.1 각 구성물품마다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1조의 도면을 도시하지 않은 경우

3.2.2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의 도면을 도시하지 않은 경우

4 신규성

4.1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한 벌 전체로서만 신규성 요건을 판단한다.

4.2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유형은 아래와 같다.

유형	공지디자인 (A, a를 포함하는 A)	출원디자인 (A, A', a, a')
1	한 벌의 물품 (A)	한 벌의 물품 (A, A')
2	한 벌의 물품 (a를 포함하는 A)	구성물품 (a, a')

공지디자인	출원디자인	
 <p>한 별의 물품A (a를 포함하는 A)</p>	 <p>한 별의 물품A, A'</p>	 <p>구성품a, a''</p>

※ A디자인 또는 a를 포함하는 A디자인이 출원공개, 설정등록 또는 공지된 이후 출원된 출원디자인 A, A', a, a'디자인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A=A, A≐A', A>a, a≐a'의 관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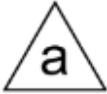
5 확대된 선출원

5.1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형은 아래와 같다.

유형	선출원 디자인 (a를 포함하는 A)	후출원 디자인 (a, a')
1	한 별의 물품	구성물품

※ 선출원 디자인(a를 포함하는 A)이 디자인등록출원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되거나 협의불성립(협의불능 포함)으로 거절결정되어 출원공개되기 이전에 출원된 후출원 디자인(a, a')은 확대된 선출원으로 거절결정한다.

※ A>a, a≐a'의 관계임

선출원 디자인(A)	후출원 디자인(a,a')
 <p>한 별의 물품A (a를 포함하는 A)</p>	 <p>구성품a,a''</p>

5.2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선출원 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한 판단은 출원 및 보정 시 제출된 아래의 도면을 기초로 한다.

5.2.1 구성물품에 관련되는 디자인에 대한 각각의 도면, 구성물품을 조합한 1조의 도면

6 선출원

6.1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선출원 규정은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 간에만 적용되며, 동일 또는 유사한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다.

7 물품의 구분

7.1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되어 그 구성하는 물품의 물품류 구분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7.1.1 심사·일부심사대상이 함께 구성된 경우에는 심사대상물품류 구분을 기재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물품류가 2이상인 경우 아래 ①, ②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 (1) 구성 물품의 수가 많은 물품으로 물품류 구분을 기재한다.
- (2) 구성 물품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하나의 물품류 구분을 기재한다.

7.2 심사대상 또는 일부심사대상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위 7.1.1의 ①, ②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 예) 2이상의 물품류가 포함된 한 별의 물품의 물품류 기재

물품류 구분	물품의 명칭	구성물품 (물품류 구분)
26 또는 06	한 별의 전기스탠드 및 테이블 세트	전기스탠드 (26-05) 테이블 (06-03)

8 유사여부 판단

- 8.1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한 별의 물품 전체로서 판단한다.
- 8.2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과 구성물품의 디자인은 다(多)물품과 일(一)물품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비유사한 디자인으로 취급된다.

제13장

국제디자인심사기준의 특례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으로 본다.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33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보,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로 한다.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 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① 제48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은 “도면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는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개정 2023.6.20>

④ 제48조제5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① 제50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는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로 한다.

② 제50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48조제4항”은 “제186조제3항”으로 한다.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51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는 날”로 한다.

제189조(출원공개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6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디자인 등록출원인에게”로 한다.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요

국제디자인심사는 기본적으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국내절차에 입각하여 심사하는 것이므로 국어로 번역처리된 출원서와 이에 첨부된 도면을 국내 디자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조약에 따라 고유한 경향과 특징이 있고 디자인보호법상으로도 국제디자인 출원에 관한 몇 가지 특례가 있다.

※ 보호부여기술서, 1차 거절통지서, 의견서 또는 보정서 없이 거절되는 거절결정서, 선택요구서, 우선권주장 및 신규성상실예외주장 불인정 예고 통지서 등은 국내 대리인지정 이전에 국제출원인이 직접 수신하므로 영문으로 작성(「국제디자인 심사 통지서 영문 예문집」 참조)되고, 의견서 또는 보정서접수 후 통지되는 거절 결정서 등은 국내대리인이 수신하게 되므로 국문으로 작성된다.

2 연혁 및 주요 개념

2.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도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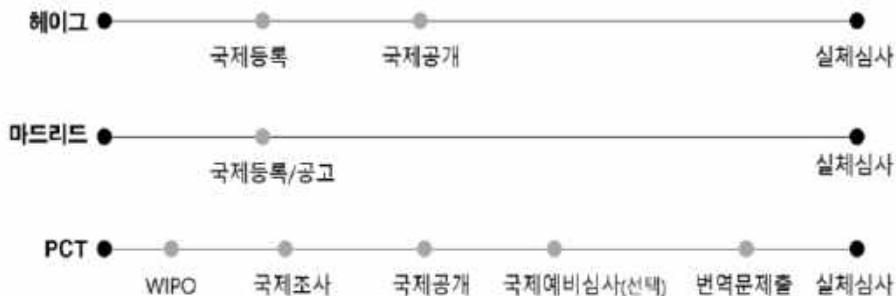
2.1.1 헤이그협정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을 함으로써 여러 계약당사국에 디자인을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조약으로서 특허의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상표의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대응된다.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은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이나 국내등록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는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 제도와 차이가 있다. 내국인의 경우 우리나라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국제 출원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정(자기지정)할 수 있는 점에서는 특허협력조약 (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PCT와 달리 국제 조사나 국제예비심사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다음표와 그림참조).

〈 표 2-1 〉 헤이그, 마드리드의정서, PCT간 주요사항 비교

	헤이그국제출원	마드리드의정서	PCT(특허 협력조약)
기초출원	불필요	필수	불필요
간접출원	가능	필수	가능
사후지정	불가능	가능	불가능
자기지정	가능	불가능	가능
국제조사	없음	없음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가능
비고	출원-등록절차의 단일화	기초출원을 기반으로 보호영역을 확장	지정국진입까지 우선권기간이 30개월까지 연장되는 효과



〈 그림 2-1 〉 헤이그, 마드리드의정서, PCT 절차 흐름도

최초 헤이그협정(1925.11.6.체결, 1928.6.1.발효)은 실제심사를 하지 않는 유럽국가 중심이 되어 체결되었고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이 1934년 런던 개정협정, 1960년 헤이그 개정협정, 1999년 제네바 개정협정이다. 1934년 런던 개정협정은 저작권적 접근 방식으로 권리자가 국제사무국에 디자인을 기탁(deposit)하면 즉시 지정국에서 보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활용률 저조 등으로 인해 2016.10.18.자로 공식폐기되었다.

한편, 1960년 헤이그 개정협정은 디자인 보호방식을 저작권적 접근방식에서 특허적 접근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협정에 따라 디자인을 국제사무국에 기탁하면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가 있지만 그 이후의 절차는 지정국의 국내법을 따르며 지정국 관청은 국제등록의 공보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거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은 심사주의 국가의 디자인제도와 조화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등 정부간 기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14년 4월 1일에 국제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했고,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되었다.

헤이그조약 제31조(1)는 헤이그 개정협정과 제네바 개정협정에 동시가입한 국가가 다른 동시가입국을 지정할 경우, 제네바 개정협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네바 개정협정의 관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헤이그 개정협정의 활용률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국제사무국을 중심으로 제네바 개정협정으로의 일원화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2.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주요개념

2.2.1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 개요

헤이그협정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을 함으로써 여러 계약당사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조약이다. 국제사무국(직접출원) 또는 출원인의 계약당사자 관청(간접출원)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형식요건 심사를 거쳐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공개한다.

국제등록공개가 되면 디자인출원서가 지정 계약당사자관청(특허청)에 접수(국내출원)된 것으로 본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26조(3)).

지정 계약당사자관청은 국제공개일로부터 일부심사디자인은 6개월, 심사 디자인은 12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통지한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8조(1)). 상기 기간 내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정 계약당사자에서 디자인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2.2.2 국제출원일

국제출원은 헤이그협정에 따라 실행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을 위한 출원을 의미한다(헤이그협정 제1조(7))

직접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접수시킨 날이 “국제출원일”이다. 그러나 이 출원이 협정과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를 보정하도록 권고하고 3개월 이내에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4조(1)과 (2)).

간접출원의 경우, 특허청은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국제사무국에 보내는데, 국제출원서의 접수일은 국제사무국에 의해 “국제출원일”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원서가 형식적인 요건의 미비로 보정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서가 도달해야만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3조(1)).

※ 규정되지 않은 언어의 사용, 국제등록표시 누락, 출원인 신원확인 표시누락, 출원인 또는 대리인 연락처 누락, 계약당사자 미지정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치유를 위한 보정이 접수된 날이 출원일이 된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4조(2)).

2.2.3 국제등록일

국제출원 또는 각종 변경신청서가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내용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되는데 이를 국제등록이라 한다. 이는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방식요건을 갖추었음을 뜻한다(헤이그협정 제1조(6)). 단, 그 자체가 지정 계약당사자에서 권리로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국제등록일”은 원칙적으로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일자이다. 따라서 직접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일과 국제등록일은 동일하다.

간접출원의 경우, 계약당사자 관청에 제출된 국제출원서가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어야만 출원서의 제출일이 국제등록일이 된다.

그러나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국제출원서에 필수사항(헤이그협정 제5조(2))에 관한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국제등록일은 그 하자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날 또는 국제출원의 출원일 중 늦은 날이 된다. 따라서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절차상의 “등록결정일” 또는 “설정등록일”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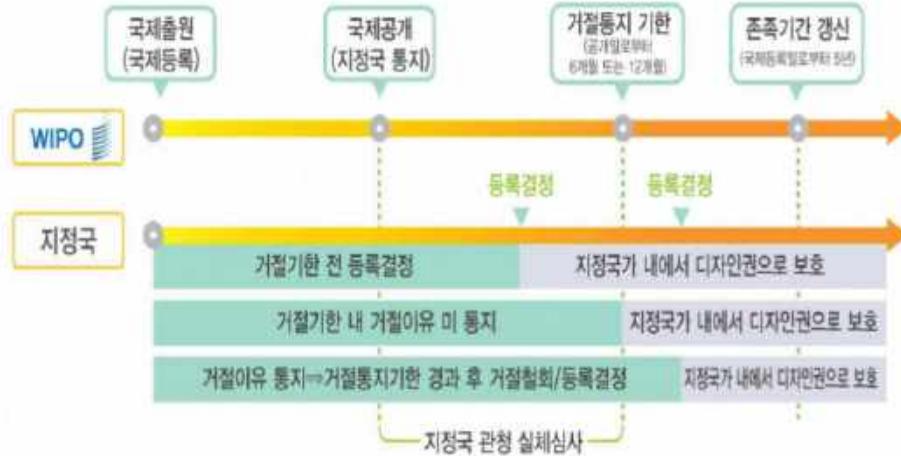
2.2.4 국제등록공개일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계약당사자 관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은 소정의 형식요건 심사를 거쳐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공개한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7조(1)).

따라서 “국제등록공개일”이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공개가 있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출원인은 국제등록의 즉시 공개(immediate publication)를 신청(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7조(1)(i))하거나 국제출원일로부터 최장 30개월까지 공개의 연기(deferment of publication)를 신청할 수 있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6조(1)(a)).

다음 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 관청(특허청)은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일부심사디자인은 국제등록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8조(1)(a), 심사디자인은 12개월 이내(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8조(1)(b))에 거절통지하여야 한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보호법 제9장 제2절)관련 주요 절차

다만, 심사관의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불인정 예고통지, 심사보류 통지 등에 대해 출원인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 받기위해 거절 기한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경과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통지한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8조(1)(c)(ii)).

〈 거절기한 미준수관련 예시 문구 〉

Under Rule 18(1)(c)(ii), we inform that the decision regarding the grant of protection of the application was unintentionally not communicated within the period of applicable under Rule 18(1)(b).

3 출원의 주요 절차

3.1 복수디자인에 대한 일괄통지 원칙

3.1.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도의 특성상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수수료 감면효과가 커서 대부분의 출원인이 단수디자인등록출원보다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을 선호한다.

※ 국제출원수수료는 “기본료”의 경우 최초 1디자인은 397CHF(스위스프랑)이며 복수디자인 1개당 19CHF이 추가되고, “표준지정수수료(심사디자인

기준)의 경우 최초 1디자인은 90CHF이며 복수디자인 1개당 50CHF이 추가되므로 단수디자인출원에 비해 감면효과가 크다.

“거절통지”는 하나의 국제등록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하나의 통지서에 거절되는 디자인을 모두 표시하여 일괄로 처리해야 한다(헤이그협정 공통 규칙 제18(2)(a)와(b)). 따라서 국내 디자인심사실무와는 달리 한명의 심사관이 복수디자인 모두를 전담하여 심사한다.

거절통지(notification of refusal)는 최종처분인 거절결정(decision of refusal)이 아니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이므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사무취급규정에서는 “가거절통지”라고 칭하기도 한다.

- ※ 만약, 3개의 복수디자인으로 구성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한 결과, 디자인1과 디자인2에는 거절이유가 있으나 디자인3에는 거절이유가 없다면, 하나의 거절통지서에 디자인1과 디자인2에 대한 거절이유를 모두 기재하여 통지하고 디자인 3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서를 거절통지서와 동일자로 통지한다.

3.1.2 중간서류처리의 경우, 국내대리인(국내절차이므로 대리인지정 필수)이 제출하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의하여 하나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구성하는 복수디자인들의 거절이유가 전부 해소되면 한꺼번에 등록결정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거절이유가 극복된 디자인만 등록결정되고 나머지 디자인은 최종 거절결정된다.

- ※ 계약당사자 관청인 특허청이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국제디자인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출원을 위한 행정 지침 204절 전자적 교신).

	서류명칭	내용
1	Notification of refusal	거절 통지서
2	Notification of refusal following a correction	경정후 거절통지서
3	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where no notification of refusal has been communicated	1차심사 등록결정서
4	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correction	경정후 등록결정서
5	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refusal	거절통지후 등록결정서
6	Declaration that a change in ownership has no effect	명의변경 무효선언서
7	Notification of invalidation	무효 통지서

3.2 출원일 인정을 위한 기재사항 요건

3.2.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국제등록부의 등재사항과 도면은 국내 디자인 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법 제181조제2항). 국제등록부에는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서와 달리 부분디자인 여부, 도면의 식별항목, 디자인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을 기재하는 란이 없으며 이러한 방식에 속한 심사권한은 국제사무국에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절 할 수는 없다.

3.2.2 특히, 디자인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은 협정 제5조(1)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관청에서 창작자,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을 요구할 수 없다.

※ 그러나 만약, 창작자로 법인명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자연인을 기재하도록 요구한다(법 제3조 제1항).

3.2.3 다만,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2차원 디자인(예: 식물지, 벽지 등)을 출원할 경우, 국내출원절차에서는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으나(법 제3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6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견본을 제출할 수 없다.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 견본은 (1) 2차원 디자인이고, (2) 공개연기를 신청한 경우여야 하며 한정된 요건하에서만 한정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헤이그협정 시행세칙 제406조(a)와 (b)).

3.3 공개의 연기

3.3.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출원일로부터 12개월(standard publication period)이 되는 날 공개되나(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7조(1)) 다만, 추가적으로 출원일로부터 최대 30개월까지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6조(1)(a)).

※ 공개연기는 결과적으로 심사의 착수를 연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심사착수의 연기와는 상관없이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 공개를 연기하는 “비밀디자인제도(제43조)”와는 차이가 있다.

3.3.2 국제출원 후 공개연기를 청구한 디자인은 개별 지정국에서 공개연기를 청구한 기간만큼 심사착수가 지연된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국제디자인 등록출원의 심사착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마치 특허의 심사청구제도와 유사하다.

3.4 출원의 분할

3.4.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1디자인 1출원(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거절이유를 통지받게 되면 해당 디자인을 분할하거나 일부를 삭제하는 보정을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

3.4.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출원인에 의한 임의 분할(법 제50조 제1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거절통지를 받은 경우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만 분할할 수 있다(법제 187조 분할출원의 특례).

3.4.3 이 경우 분할출원된 디자인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동일자에 출원된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되고 새로운 국내출원번호가 부여되어 국내 심사관에게 이관된다(헤이그협정 제13조 및 헤이그협정 시행세칙 Section 502).

3.5 우선권 주장

3.5.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불인정여부판단시 제1국 출원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상이할 경우, 권리이전에 관한 별도의 증거를 제출하면 출원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3.5.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시 대리인이 제1국이 인정하는 출원 증명서(출원번호, 출원연월일, 도면 등이 기재)의 원본을 제출하는 대신 DAS코드를 기재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 ID5 국가 등 주요 교역국들 대부분이 WIPO가 운영하는 DAS(Digital Access Service)를 이용하고 있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시 우선권주장이 필요한 경우 국제디자인출원서(DM/1)에 DAS코드를 기재하면 별도의 국내 절차가 발생하지 않아 국내대리인 지정이 불필요하다.

3.5.2 헤이그협정에서는 마드리드의정서와 달리 사후지정(subsequent designation)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의 국제출원을 1국으로 지정한 후 지정국을

추가한 새로운 국제디자인을 우선권주장하여 출원하면 사후지정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3.5.3 우선권주장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제1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국제출원일과 국제등록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형식요건심사가 완료되어 등록된 국제등록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법 제179조 제2항).

따라서 제1국출원일과 우선권주장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이 6개월을 경과했다면 우선권주장은 불인정된다(다음 행정심판 참조).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사무국의 일정한 방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되며, 우리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일은 국제출원이 성립된 날이 아니라, 국제사무국에서의 형식요건의 심사가 완료되어 등록된 국제등록일이 우리법상 디자인등록출원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즉, 국제출원의 제출일과 등록일은 별개로, 본조에 따라 국제등록일이 우리법상 디자인등록출원일이 된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8.14. 2018원713)

- 3.5.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는 “국제등록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88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 3.5.5 제1국 출원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우선권 불인정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출원인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 접수일까지 심사착수가 지연되는데 만약 거절통지기한이 공통규칙에서 규정한 기간(심사등록디자인은 12개월, 일부심사등록디자인은 6개월)을 경과하게 되면 그 이유(2.2.4 참조)를 통지서에 기재한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8조(1)(c)(ii)).

3.6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 3.6.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등록일”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보고 신규성 예외주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 3.6.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증명서류는 그 취지를 기재한 경우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4 등록요건 관련 심사특례

4.1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판단

4.1.1 평면적인 물품(예: 직물지, 벽지 등)에 관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한 면에 관한 도면만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도면을 요구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9조(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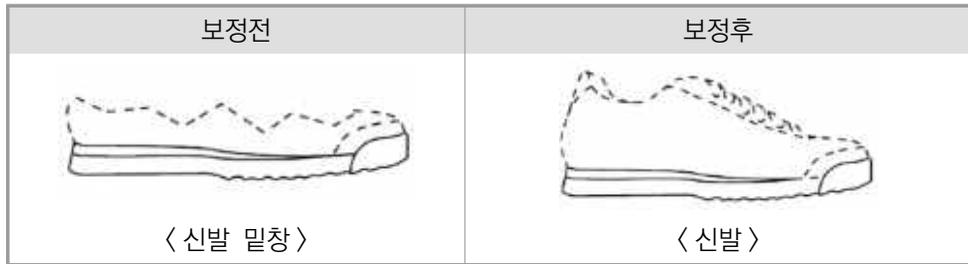
※ 가령, “시트지(sheet of artificial or natural material)” 디자인의 경우 배면도 없이 정면도 하나만 제출하고 별도의 디자인의 설명이 없어도 구체성결여, 즉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다음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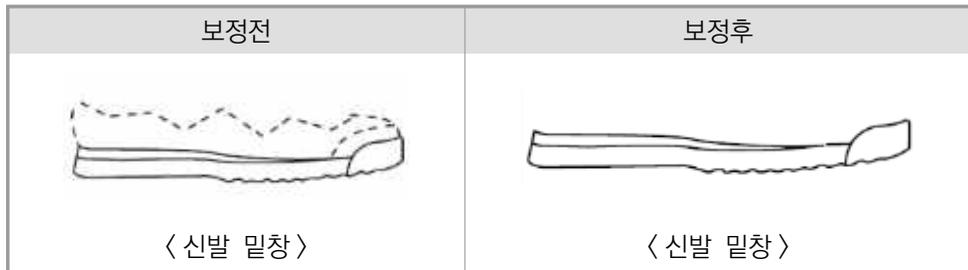
DM/205865, 도면 16.1

4.1.2 부분디자인의 경우 국가별로 도시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명칭과 도면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면의 구체성 요건에 관하여 판단한다(다음 그림 참조)

- (1) 완전한 신발 밑창부분과 갑피 일부를 점선으로 도시한 후 “신발 밑창”이라는 명칭으로 출원한 디자인을 명칭은 “신발”로, 도면은 갑피부분을 점선으로 완전하게 도시하여 보정한 경우 인정할 수 있음



(2) 완전한 신발 밑창부분과 굽피 일부를 점선으로 도시한 후 “신발 밑창”이라는 명칭으로 출원한 디자인을 명칭은 “신발 밑창”으로, 도면은 신발 밑창만을 도시하여 보정한 경우 인정할 수 있음



4.1.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도면의 보정은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요지 변경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1) 디자인 002의 부족한 도면을 디자인 001로부터 가져와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의 요지가 변경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경우 디자인 001과 디자인 002간의 기본-관련디자인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보정전	보정후
001		
002		

※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는 해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에 기초하여 출원서의 기재, 도면 및 도면의 기재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2000후730판결).

4.2 선출원(제46조)의 판단

4.2.1. 국제등록출원된 복수디자인들 간에 상호 유사한 디자인이 있을 경우, 동일자에 동일인이 출원한 것이므로 법 제46조에 의한 거절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기본 또는 관련디자인으로의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면 등록결정한다.

※ 복수디자인 중 일부를 포기한다는 취지를 의견서에 기재하면 포기된 디자인은 거절결정한다.

4.2.2 국제등록출원된 디자인도 한국을 지정하면 국내에 출원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국내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과 국제등록출원된 디자인 간에도 선출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만약 출원인의 요청으로 국제출원된 디자인의 공개가 늦어진다 해도 비밀 사본(헤이그협정 제10조(5)(a) 및 시행세칙 제901조)에 표현된 디자인과 국내출원된 디자인과의 선출원 경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Design

디자인심사기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제 6 부

특유물품심사



제1장 화상에 관한 디자인	361
제2장 글자체 디자인의 심사	412
제3장 식품디자인의 심사	428



제1장

화상에 관한 디자인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사용 또는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 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 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6.20〉

제46조(선출원)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6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 3. 21.〉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3.6.20〉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23.6.20>

1 취지 및 개요

종전에는 디자인심사기준(03.7.1시행)을 통해 물품의 표면, 즉 물품의 부분에 표현되는 “부분디자인”으로 화상디자인의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제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관련 산업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물품으로부터 분리되어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디자인보호법 개정(21.10.21 시행)을 통해 물품의 부분으로 표현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화상 그 자체로 디자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화상디자인에 관한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화상 디자인은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畫面)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의 2의 “화상”에 해당되지 않는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말함)으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2021년의 디자인보호법 시행 이후,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은 아래의 2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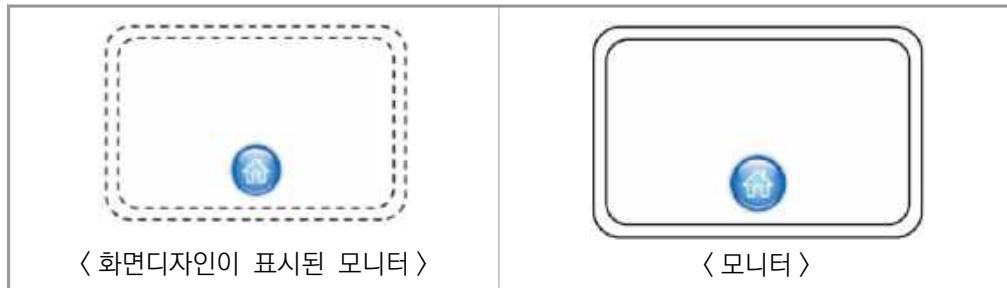
(1)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를 받는 방법

: 디스플레이 패널 등 표현의 매개가 되는 물품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디자인으로 성립할 수 있으나, 디지털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으로서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보호를 받는 방법

: 디스플레이 패널 등 물품의 표시부를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는 물품의 모양, 즉 표면 장식이며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되고 성립요건은 일반적인 물품의 부분디자인과 동일하다.

※ ‘물품의 부분에 표현되는 화면디자인’으로 출원(다음 좌측 사례)하는 대신 물품의 전체디자인으로 출원(다음 우측 사례)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화상에 관한 디자인이 아니므로 물품의 명칭은 일반 물품의 명칭(예: 모니터)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I. 화상디자인

1 정의 및 성립요건

1.1 화상디자인의 정의

1.1.1 “화상디자인”이란 화상(畫像)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며 시각을 통해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디스플레이 패널, 스크린 등 물품의 표면에 표현되는 모양 또는 표면장식으로서 물품의 부분디자인에 해당하며, 2021년 10월 시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상디자인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종전과 달리 ‘화면(畫面)’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1.2 위의 1.1.1의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을 말하며,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한다.

1.1.3 “화상”은 글자체와 마찬가지로 본래 물품성을 갖추지 못했지만 물품으로 의제(擬制)한 것이므로 디스플레이 패널, 디스플레이 스크린 등과 같이 물품의 부분으로 표현될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물품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2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

1.2.1 “화상”은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출원서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이를 기재 또는 표현하되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1.2.2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는 화상”은 기기를 제어하기 위해 지시, 명령 등을 입력하는데 사용하는 도형, 기호 등을 의미하며, 조작의 대상인 기기가 반드시 물품일 필요는 없다. 흔히 조작용 입력 버튼, 바(bar), 다이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예 1) ☺ 인정 아래 사례는 “정보통신기기용 아이콘” 화상으로서 정보통신기기에서 구동되는 아이콘이므로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외견상 홈(home)버튼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는 화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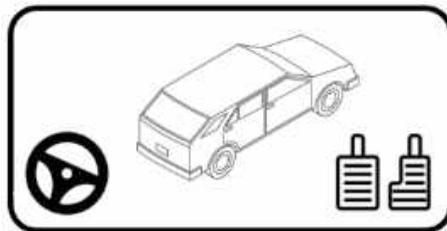


[도면 1]

명칭: 정보통신기기용 아이콘

※ “정보통신기기용 아이콘” 화상디자인의 경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디자인과 달리, 매개가 되는 물품(예: 디스플레이 패널, 디스플레이 스크린 등)의 존재여부를 성립요건 판단에 고려하지 않으므로 화상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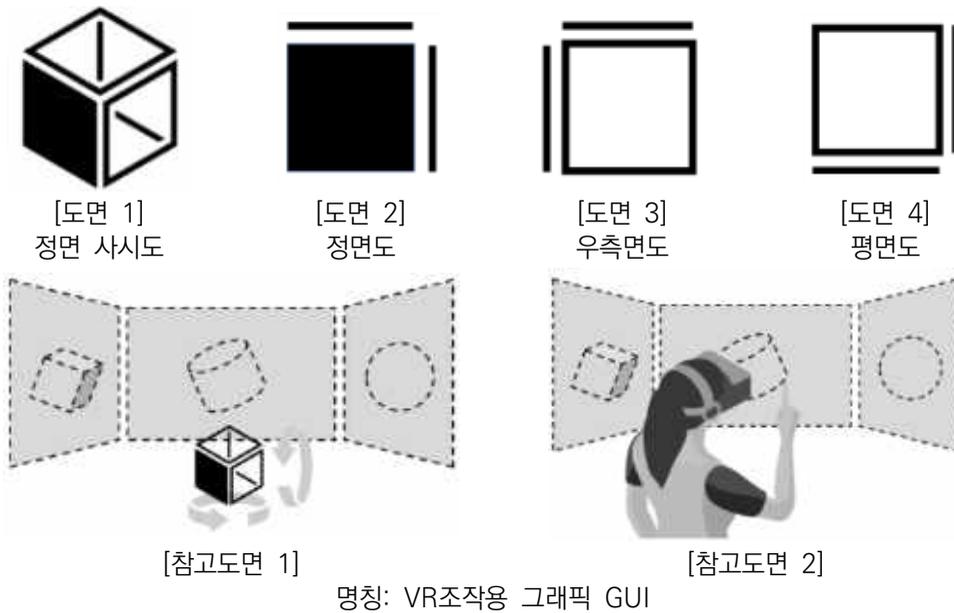
※ 예 2) ☺ 인정 아래 사례는 “게임조작용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화상으로서 도면에 표현된 모양으로 볼 때 운전과 관련된 게임의 조작(control) 인터페이스를 표현한 것이므로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는 화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명칭: 게임조작용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 예 3) ☺ 인정 아래 사례는 “VR조작용 GUI”로서 사시도, 정면도, 우측면도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VR환경 안에서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칭을 통해 VR환경 안에서 특정한 조작기능을 수행하기위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는 화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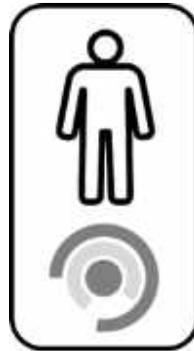
1.2.3 “기기의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은 기기가 발휘하는 기능을 표현하는 도형·기호 등을 의미하며 각종 그래프, 상태표시등, 경고등, 인디케이터 (indicator) 등이 대표적이다.

※ 예 1) ☺ 인정 아래 사례는 “차량정보 표시용 아이콘” 화상으로서 차량의 특정 상태(예: 고장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표시기능이 발휘되는 화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명칭: 차량정보 표시용 아이콘

※ 예 2) ☺ 인정 아래 사례는 “정보표시용 GUI” 화상으로서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명칭: 정보표시용 GUI

※ 예 3) ☺ 인정 아래 사례는 “차량정보 표시용 GUI” 화상으로서 차량의 상태를 사용자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3차원으로 구현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정면 사시도



[도면 2]
우측면도



[도면 3]
배면 사시도

“트런크가 개방
되었습니다!”



[사용상태도 1]

“우측헤드램프에
이상 이 있습니다!”



[사용상태도 2]

명칭: 차량정보 표시용 GUI

※ 다음의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디자인의 경우, 디스플레이 패널 표면위에 모양으로 표현된 디자인으로서 도면의 표현방식으로 볼 때 터 테이블처럼 회전하는 차량의 동적(動的) 상태를 표현한 디자인이다.



[도면 A 1]

[도면 B 1]

[도면 C 1]

명칭: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1.2.4 기기의 조작과 기능 발휘를 겸하는 ‘화상 디자인’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원서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기재사항 등에 이러한 특징이 충분히 기재 또는 표현된 경우 화상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예 1) ☺ 인정 아래는 “정보통신기기용 화상” 디자인으로서 막대의 길이가 정보통신기기의 현재 상태값을 표시하며, 동시에 손가락 등으로 터치하여 이 상태값을 사용자가 원하는 값으로 조정·제어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출원서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기재사항 등에 이러한 특징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으면 조작과 기능발휘를 겸하는 화상디자인으로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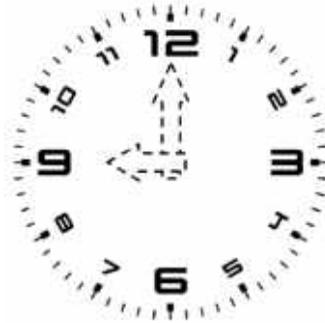
도면 1

참고도면 1

명칭: 정보통신기기용 화상

1.2.5 “화상의 부분디자인”이란 화상의 전체 중에 일정한 범위를 점유하는 부분으로서 해당 화상에 있어서 다른 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 ※ 예 1) ☺ 인정 아래 “정보표시용 화상” 디자인의 경우, 시계의 형상을 띄고 있는데, 부분디자인으로 보호하고자하는 부분은 자판부의 형태이며 시계의 바늘부분은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표현하였다. 따라서 화상의 부분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명칭: 정보표시용 화상

- 1.2.6 “화상의 부분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거나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일 경우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공업상이용가능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거절통지한다.

2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

2.1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양산가능성

- 2.1.1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이 불가능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1) 화상디자인의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화상을 구현하는 것을 포함하며, “양산”이란 동일한 형태의 화상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 (2) “동일한 화상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화상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같은 화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을 가진 화상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2.2. 디자인보호법상의 화상디자인으로 인정될 것

- 2.2.1 디자인보호법상 화상은 물품과 관계없이 화상 자체로 보호된다. 즉,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물품 또는 물품의 부분으로 인정되는 것(물품의 부분인 화면디자인)은 화상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 2.2.2 화상은 물품으로 의제한 것일 뿐 실제로 물리적인 형상을 가지지 않으므로 물리적인 견본 또는 모형으로 제출되거나 재질에 대하여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화상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 2.2.3 법제2조2의 2에서는 보호대상을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조작용 화상)” 또는 “기능이 발휘되는 것(기능발휘용 화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상디자인은 적어도 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순히 시각저작물에 불과한 것은 화상 디자인으로 성립할 수 없다.
- 2.2.4 조작용 화상 및 기능발휘용 화상의 범위는 위 “1. 정의 및 성립요건”을 참조한다.

2.3 디자인의 표현에 구체성이 있을 것

- 2.3.1 해당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갖춘 창작자가 출원서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기재사항 등을 통해 출원된 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디자인 표현의 구체성을 인정 할 수 있다.

2.3.2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디자인의 구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화상의 용도 또는 기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 (2) 화상 전체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3) 도면이 선명하지 않아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 (4)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간에 정합성이 결여된 경우
- (5) 형태가 변화하는 동적 화상인 경우에 변화의 순서, 변화의 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3.3 화상디자인의 구체성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은 제2부 제1장의 “2.2 디자인의 표현에 구체성이 있을 것” 부분을 참조한다.

3 유사여부 판단

3.1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3.1.1 화상의 형태, 용도 또는 기능의 동일·유사, 혼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화상의 형태의 유사성은 일반적인 디자인의 유사판단기준에 따른다.

3.1.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의 화면 표시부가 “화상디자인”의 형태와 설령 동일·유사하더라도 화면 표시부는 물품의 부분디자인이고 화상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물품이므로 물품이 서로 달라 비유사한 것으로 본다.

※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 간에는 확대된 선출원(제33조제3항), 선출원(제46조), 관련디자인(제35조)여부도 적용되지 않는다.

[심사관 참고]

아래와 같이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정보통신기기”의 디자인이 선출원되고 “정보표시용 화상”의 디자인이 후출원된 후에 선출원 디자인이 공보에 게재된 경우, 화면표시부의 모양과 정보표시용 화상의 형태가 설령 동일·유사하더라도 해당 화상이 정보통신기기의 일부부와 반드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6.1.2 참조)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선출원디자인〉

명칭: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정보통신기기



〈 후출원디자인〉

명칭: 정보표시용 화상

3.1.3 그러나 물품과 화상 간에 용도, 기능,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서로 유사하거나 혼용가능성이 있다면, 둘 중 하나가 공지된 경우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판단은 가능하다.(4.3.3의 예1과 예2 참조)

3.2 화상디자인간의 유사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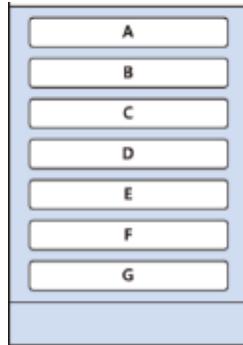
3.2.1 심사관은 아래의 (1)과 (2) 또는 (1)과 (3)에 해당하는 경우 두 디자인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 (1) 두 화상디자인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2) 두 화상디자인의 용도 또는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3) 두 화상디자인의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3.2.2 “화상디자인” 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

- (1) 두 디자인은 가로로 긴 장방형의 복수의 개체들이 종으로 배열되어 있어 형태면에서는 유사하나 명칭이 “재고관리용 화상”과 “회의실관리용 화상”으로

세부용도는 상이하다. 그러나 복수의 선택지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기능면에서 유사하므로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선행 디자인 〉

“재고관리용 화상”

[디자인의 설명]

“세로로 배치된 복수의 긴 직사각형은 각 상품의 종류를 나타내며 이것을 클릭하면 해당 상품의 재고수가 화상으로 표시됨”



〈 출원디자인 〉

“회의실관리용 화상”

[디자인의 설명]

“세로로 배치된 복수의 긴 직사각형은 각각의 회의실을 나타내며 이것을 클릭하면 예약한 회의실이 화상으로 표시됨”

(2) 두 디자인은 형태면에서 유사하나 “디지털 도어록용 화상”과 “스마트폰용 화상”으로 화상의 세부용도는 다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수치를 입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극히 유사하므로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선행디자인 〉

“디지털 도어록용 화상”



〈 출원디자인 〉

“스마트폰용 화상”

3.3 변화하지 않는 “화상디자인”과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3.3.1 변화하지 않는 “화상디자인”과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비유사하다.

3.3.2 다만,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의 일부 정지상태의 모양이 변화하지 않는 “화상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정지상태의 해당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미감이 지배적이며 전체적인 변화의 특이성이 미미하다면 양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3.4 변화하는 화상디자인 상호간의 유사여부 판단

3.4.1 변화하는 “화상디자인” 상호 간에는 그 정지상태와 변화상태를 전체 대(對) 전체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3.4.2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에서 변화를 구성하는 속도, 간격의 차이는 유사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4 창작비용이성

4.1 창작비용이성의 판단

4.1.1 공지디자인(법 제3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법 제33조(디자인 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4.2 창작비용이성의 일반적 요건

4.2.1 제2부 제4장(창작비용이성)의 “2. 적용요건”을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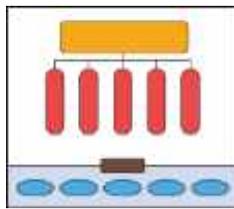
4.3 창작이 용이한 화상디자인의 유형

4.3.1 제2부 제4장(창작비용이성)의 “3.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유형”을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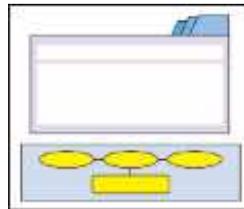
4.3.2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화상디자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화상디자인의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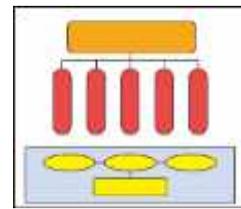
※ 예 1) **㉔ 불인정** 공지된 “영상편집용 화상”의 일부를 다른 공지디자인의 일부로 치환하여 구성한 “영상편집용 화상”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공지디자인1 〉



〈 공지디자인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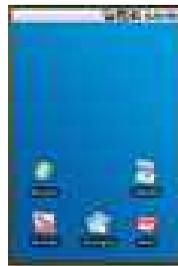
〈 출원디자인 〉

(2) 복수의 공지된 화상디자인을 조합하여 하나의 화상디자인을 구성

※ 예 2) **㉔ 불인정** 공지된 각각의 아이콘들을 단순히 결합하여 구성한 화상디자인의 경우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공지디자인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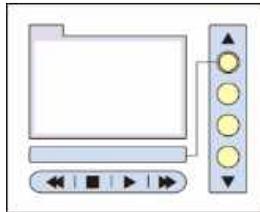
〈 공지디자인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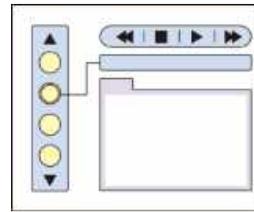
〈 출원디자인 〉

(3) 화상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배치변경

※ 예 3) ㉔ 불인정 공지된 화상의 일부 구성요소의 위치를 단순하게 변경한 것에 불과한 “영상편집용 화상”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공지디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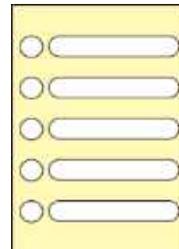
〈 출원디자인 〉

(4) 화상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비율을 변경하거나 구성단위(연속단위) 수의 증감

※ 예 4) ㉔ 불인정 공지된 화상디자인의 가로세로간의 비례감을 변경하여 하나의 화상을 구성한 것에 불과한 “영상편집용 화상”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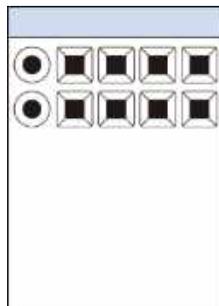


〈 공지디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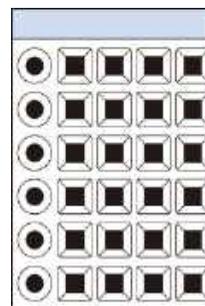


〈 출원디자인 〉

※ 예 5) ㉔ 불인정 공지된 화상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의 수를 증가시켜 세로로 배열한 “정보표시용 화상”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공지디자인 〉



〈 출원디자인 〉

✖ 예 2) ☹ 불인정 아래의 사례와 같이 공지된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정보통신기기 디자인”의 화면 표시부를 거의 그대로 “정보표시용 화상디자인”으로 전용하는 것이 해당분야에서 용이한 것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공지디자인 〉

명칭: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정보통신기기



〈 출원디자인 〉

명칭: 정보표시용 화상

4.3.4 화상디자인에 대한 창작비용이성의 판단방법 및 증거의 제시는 제2부 제4장 (창작비용이성)의 “4. 판단방법” 및 “5. 증거의 제시” 부분을 참조한다.

5 물품류 구분 및 명칭

5.1 물품류의 구분

5.1.1 화상디자인의 물품류 구분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에 근거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에 따라 물품류 (제14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5.2 명칭 기재방법

5.2.1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디자인을 인식하는 데 적합한 명칭을 적되, 용도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은 인정할 수 있다.

✖ 예 1) ☺ 인정 “정보통신용 화상”, “정보통신용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정보통신용 GUI”, “정보표시용 화상”, “아이콘용 화상”, “차량정보 표시용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차량정보 표시용 GUI”, “정보통신기기용 아이콘” 등과 같이 해당 디자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면 인정할 수 있다.

※ 예 2) ⊗ 불인정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용단말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등과 같이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 디자인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

※ 예 3) ⊗ 불인정 “화상”, “화상디자인” 등과 같이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명칭을 기재한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

5.2.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2.2.1의 예시 명칭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예: GUI, 아이콘(Icons))라도 제출된 도면, 「디자인의 설명」란 등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화상디자인의 명칭으로 인정할 수 있다.

5.2.3 물품류 및 물품의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경우 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 등록출원)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6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6.1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정의

6.1.1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하여야 한다. “화상디자인”의 출원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1항에 위반되므로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6.1.2 화상디자인등록출원의 1디자인이란 1화상에 대한 1형태를 말한다.

6.2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판단방법

6.2.1 화상디자인의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여부는 출원서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기재사항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화상의 용도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기재한 경우

✕ 예 1) ☹ 불인정 명칭을 “차량정보 표시용 화상 및 의료용 정보표시용 화상”으로 기재한 경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2) 도면에 둘 이상의 화상이 표현된 경우. 다만, 변화하는 화상 등에 해당하여 변화 전·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2 참고)

(3) 하나의 화상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형태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2.3 참고)

6.2.2 도면 등에 2 이상의 화상이 표현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인정여부를 판단한다.

(1) 도면 등에 복수의 화상이 표현된 경우라도, 출원서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기재사항 등을 참고하여 화상들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다면 하나의 화상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사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복수의 화상이 하나로서 일체로 실시되는 경우 하나의 화상디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예 1) ☺ 인정 아래는 “차량정보 표시용 화상”으로서 3개의 화상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속도계, 엔진회전수계, 연료잔량계 등은 차량에 일체로서 탑재되어 사용되므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명칭: 차량정보 표시용 화상

6.2.3 하나의 화상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디자인이 표현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출원서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기재사항, 사용행태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창작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 등록출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예 1) ☺ 인정 아래 화상디자인의 경우, 계기판 부분과 지시바늘 등 개별 구성요소들이 각각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하여 일체로서 기능하고 인식되므로 1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명칭: 정보표시용 화상

6.2.4 형태가 변화하는 동적(動的) 화상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의 설명」을 포함한 출원서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에 동적 화상디자인을 표현한 것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면 하나의 화상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기능을 위한 화상디자인일 것

✕ 예 1) ☺ 인정 아래는 만보기 기능의 화상디자인으로서 동적 변화 상태를 표현한 것이며 각각의 화상이 하나로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도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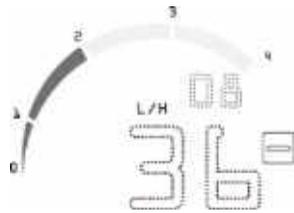
[도면 3]

[도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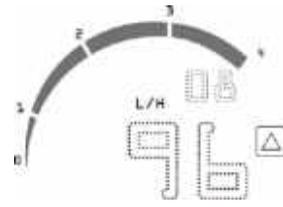
명칭: 정보표시용 화상

(2) 변화 전후의 화상디자인에 대하여 도형들 간의 공통점으로 인하여 형태의 관련성이 있을 것

✕ 예 2) ☺ 인정 아래는 “정보표시용 화상”의 변화 전·후의 상태를 표현한 것인데, 원호 형상의 눈금자 부분의 형상, 도형과 문자의 배치상태 등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어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도면 2]

명칭: 정보표시용 화상

6.3.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예외

6.3.1 화상디자인도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또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으며 이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의 예외이다. 복수 디자인등록출원과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사항은 제2부 제10장(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의 예외)을 참조한다.

7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7.1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요건, 우선권 주장의 기간 및 절차, 우선권 주장 디자인의 동일성 판단, 우선권 주장의 보정, 부적합한 우선권 주장의 처리 등은 제5부의 “제4장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부분을 참조한다.

7.2 우선권 주장을 통해 출원할 수 있는 화상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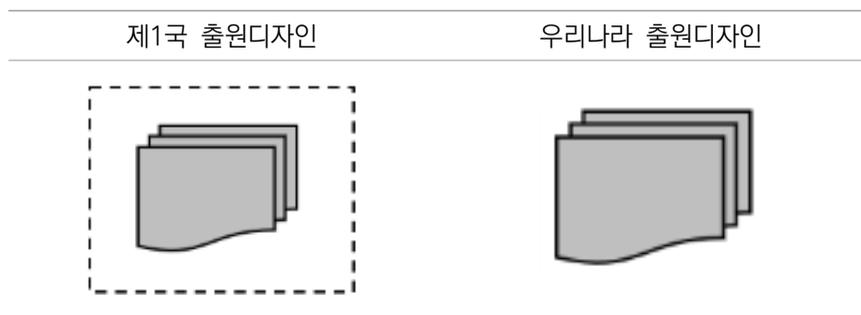
7.2.1 제1국의 디자인이 다음과 같이 “화상디자인”의 “정의 및 성립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우리나라에 “화상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다.

✖ 예 1) ☺ 인정 우선권을 주장하는 제1국의 출원디자인이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디자인으로 볼 수 있고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우선권 주장하여 우리나라에 화상 디자인으로 출원했다면 그 우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7.2.2 우선권 주장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제1국 출원디자인(예)	우리나라 출원디자인(예)	우선권 주장 인정여부
물품의 명칭	“GUI design for display screen”	“정보표시용 화상디자인”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나 출원서 및 첨부된 도면 등을 참고하여 결정
	① “Icons for OO”, “GUI(Graphical user interface)”	“OO용 화상”	용도·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인정 가능
	② “Icons for OO”, “GUI(Graphical user interface)”	“GUI, 아이콘(Icons)”	

✖ 예 1) ☹ 불인정 다음과 같이 제1국에서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 디자인”을 출원하고 이를 우선권 주장하여 우리나라에서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한 경우, 설령 물품의 표시부 모양과 화상의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예 2) ☺ 인정 다음과 같이 제1국의 출원디자인 물품의 명칭이 “Icons for OO”, “GUI(Graphical user interfaces)” 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단,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표현하지 않음)을 우리나라에 출원하면서 물품의 명칭을 “OO용 화상” 등으로

기재했다면 출원서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우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국 출원디자인(EU)	우리나라 출원디자인
	
“Graphical user interfaces”	“OO용 화상”

※ 예 3) ☺ 인정 다음과 같이 제1국의 출원디자인 물품의 명칭이 “Icons for OO”, “GUI(Graphical user interfaces)”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을 우리나라에 출원하면서 물품의 명칭을 “OO용 GUI”, “아이콘(Icons)” 으로 기재했다면, 출원서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우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국 출원디자인	우리나라 출원디자인
	
“Icons for OO”	“OO용 아이콘”
구체적인 설명 없음	[디자인의 설명] 소프트웨어 조작용 버튼임

II.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畫面)디자인

1 정의 및 성립요건

1.1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의 정의

1.1.1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의 발광현상에 의해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하고 법적으로는 표면 장식의 일종이므로 ‘부분디자인’으로만 표현가능하다.

1.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의 성립요건

1.2.1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의 성립요건은 제1부 제2장의 “2. 디자인의 성립요건”중 부분디자인의 성립요건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1.2.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물품의 표시부에 통전(通電)현상을 통해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기는 하나, 물품의 일반적인 사용상태를 기준으로 삼아 물품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1)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서 물품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예 1)과 같이 물품 내에 표시부가 구비되지 않고 공간 또는 외부 매개물에 빛을 투사(Projection)하여 표현되는 도형, 기호 등은 물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또한 예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시부가 어느 하나로 특정될 수 없는 경우도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예 1) **⊖ 불인정** 아래 정맥 투시기의 화면디자인도 기기내부에 표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한 외부 매개물(인체부) 표면에 화면이 표현되므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화면디자인으로서의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AccuVein 사(社)의 AV500)

(나) 예 2)과 같이 도형 또는 기호는 명확하게 도시되었으나 출원시 도면에 화면 디자인이 표시되는 구체적인 물품(예: 디스플레이 패널)이 도시되지 않은 경우,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예 2) **㉞ 불인정**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로 물품의 명칭은 적절히 기재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물품이 누락되어 도시된 경우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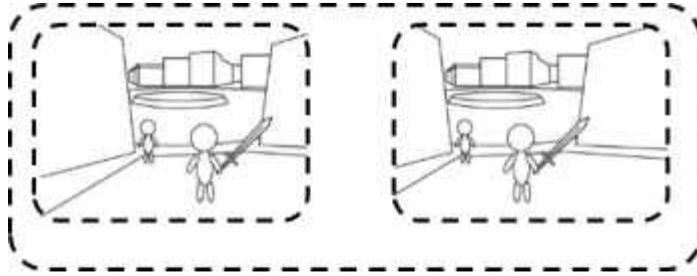
[도면 1]

명칭: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1.2.3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의 시각성

(1)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에서 물품의 표시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시각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특수한 표시부를 통해 화면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각성을 인정할 수 있다.

- ※ 예 1) ☺ 인정 아래 예와 같이 표시창을 통해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이면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가상현실(VR) 헤드셋 디스플레이 패널”로서 시각성을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명칭: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가상현실(VR) 디스플레이 패널

2 공업상 이용가능성

2.1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판단

2.1.1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이 불가능하거나, 디자인의 표현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1.2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요건

(1)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을 것

(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하며,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제2부 제1장(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을 것” 부분을 참조한다.

(2) 보호대상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이 구체적일 것

(가) 제출된 도면에 화면디자인 전부가 충분히 도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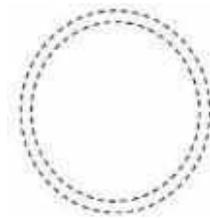
✖ 예 1) ☺ 인정 아래와 같이 손목에 착용하기 편하도록 화면표시부가 곡면(curved display)으로 형성된 “화면디자이너가 표시된 정보통신 단말기”인 경우, 화면 표시부가 평면이 아닌 입체적 형상이므로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2 이상의 도면(예: 사시도, 정면도, 우측면도 등)을 제출하여야만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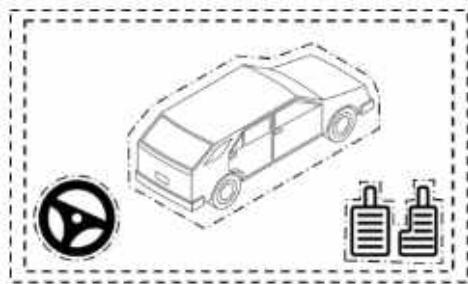
[도면 2]
정면도



[도면 3]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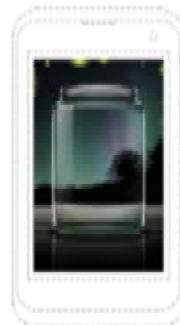
(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과 제외되는 부분간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그 경계를 1점 쇄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도시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 2) ☺ 인정 아래 사례와 같이 채색(coloring) 또는 경계선(boundary)을 일점쇄선으로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충분히 특정하여야만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명칭 : 화면디자이너가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도면 1]

명칭 : 화면디자이너가 표시된 휴대전화기

[심사관 참고]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동적화면디자인 출원시 변화과정(시퀀스, sequence)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여러 벌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식별 항목을 영문자 대문자(예: [도면 A 1], [도면 B 1])대신 일련번호(예: [도면 1], [도면 2])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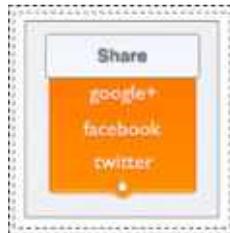
(다) 형태가 변화하는 화면디자인(또는 동적 화면디자인) 심사시 제출된 변화 전·후의 도면만으로는 디자인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① 확대도 또는 사용상태도 등이 없어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② 도형이 확대·축소·회전·이동 등을 통해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변화 전후의 상태를 충분히 도시하지 않아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③ 디자인을 파악하기 위해 「디자인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설명이 누락된 경우

✖ 예 3) ☺ 인정 아래의 예와 같이 드롭다운(drop down) 메뉴의 경우 해당디자인 분야에서 전형적인 표현방식이므로 변경 전·후 모습 외에 별도의 중간 변화모습을 표현한 도면을 생략해도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도면 2]

명칭 :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예 4) 😊 인정 아래 사례는 스마트폰의 바탕화면을 표현한 것으로서 배경의 이미지가 점진적으로 위로 이동하며 화면을 채워가는 동적인 변화양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도면 2]

[도면 3]

[도면 4]

(라)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동적화면디자인의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참고도면 이외의 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의 도면으로 제출하면 (디자인 보호법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참고) 인정할 수 없다.
- ② 참고도면으로 제출된 동영상파일을 통해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다른 도면들을 통해 디자인의 동적 변화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
- ③ 참고도면으로 제출된 동영상파일 외에 정지상태의 도면과 그 동작 상태를 알 수 있는 도면(동작 중의 기본적 자세, 동작내용을 나타내는 궤적 등)이 제출되지 않거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동작상태에 관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

3 유사여부 판단

3.1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3.1.1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은 일반적인 물품의 판단기준에 따르며, 화면이 표시되는 물품의 유사여부를 따진다. 이 경우 “웹 사이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의 구분은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의 특성상 용도가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예 1) ☺ 유사 냉·온수 조작을 위한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냉·온수기”와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정수기”의 경우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비유사하지만 혼용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예 2) ☺ 유사 날씨기능을 나타내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과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경우 디스플레이 패널과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비유사물품이나 혼용가능하므로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서로 용도가 상이할지라도 구체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물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서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참고한다.

✖ 예 3) ☺ 유사 “지도검색을 위한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과 “문서편집을 위한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서로 용도가 상이하나 화면 표시부에 표시되는 형태와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이 유사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3.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3.2.1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에 있어서 관련 업계 또는 특정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표준 심볼, 픽토그램, 아이콘, 도형 등과 같이 관용적으로 쓰이는 디자인은 유사의 폭을 좁게 보고 기존과 다른 방식의 표현인 경우에는 유사의 폭을 넓게 본다.

3.2.2 최초이거나 기존과 다른 참신한 방식의 표현과 구성인 경우에는 유사의 폭을 넓게 본다.

3.2.3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 및 표시부의 형상
- (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구체적 기능
- (3)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4) 해당 물품의 표시부내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크기·범위·배치
- (5) 화면디자인으로 등록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부분도 전체형태에서 등록 받으려는 부분의 구체적 용도와 기능, 위치, 범위 등을 파악하는데 고려될 수 있다.

3.2.4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간의 유사여부 판단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1)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모양의 기초가 되는 도안과 색상, 배치 및 구성 등의 시각적 표현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2) 색상이나 부수적인 시각적 표현이 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유사여부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다.
- (3) 유사판단시 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하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에 의한 미감의 차이가 고려될 수 있으나 등록받고자하는 부분의 위치·크기가 물품의 특성상 이용과정에서 얼마든지 이동 또는 확대·축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미감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 (4) 공지된 디자인들이 결합하여 디자인의 전체 또는 일부 구성요소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 전체적인 하나로 느껴지는 심미감의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3.2.5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정적(靜的)화면디자인과 동적(動的)화면디자인 간의 유사여부 판단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원칙적으로 동적화면디자인과 정적화면디자인은 비유사하다. 다만, 변화하는 디자인의 일부 정지상태가 정적화면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정지상태의 해당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미감이 지배적이며 변화의 특이성이 미미하다면 양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동적화면디자인의 일부 정지 상태의 모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심미감이 지배적이지 않고 전체적인 모양 변화와 동태에 특별한 심미감이 있다면 정적화면디자인과는 비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3.2.6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동적화면디자인 간의 유사여부 판단

- (1)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동적화면디자인 상호간에는 그 정지상태의 모양과 동적 변화를 전체적인 하나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 (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동적화면디자인에서 동적 변화를 구성하는 속도, 간격의 차이는 유사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4 창작비용이성

4.1 창작비용이성의 구체적인 판단방법

4.1.1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적용요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유형, 판단방법 및 증거제시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제2부 제4장의 “창작비용이성” 부분을 참조한다.

4.1.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에서 ‘창작이 용이하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손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 예 1) ⊗ 불인정 아래와 같이 공지의 손목시계의 “시계문자판 디자인”을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전용하여 나타낸 것은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명칭 : 손목시계
〈 공지디자인 〉



명칭 :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출원디자인 〉

✕ 예 2) ⊗ 불인정 공지의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공지디자인 1 + 공지 디자인 2)에 기초하여 흔한 방법으로 변화 전·후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은 창작이 용이한 디자인으로 본다.



〈 공지디자인 1 〉



[도면 1]



[도면 2]

〈 공지 디자인2 〉



[도면 1]



[도면 2]

〈 출원디자인 〉

※ 예 3) ⊗ 불인정 아이콘메뉴창의 구성 일부의 위치를 단순하게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태블릿 PC” 디자인은 창작이 용이한 디자인으로 본다.



〈 공지디자인 〉



〈 출원디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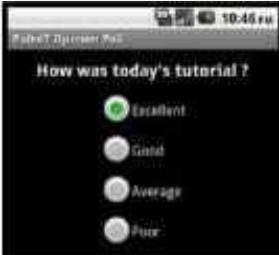
※ 예 4) ⊗ 불인정 공지디자인의 음악재생 목록일부를 단순히 연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한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태블릿 PC” 디자인은 창작이 용이한 디자인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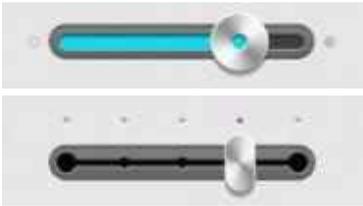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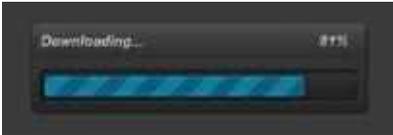


〈 공지디자인 〉



〈 출원디자인 〉

[심사관 참고]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의 기능 구현을 위한 구성요소			
연번	구분	이미지	내용
1	콤보박스 (combo box)		컴퓨터/통신윈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거나 나열된 항목들 중에서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컨트롤
2	드롭다운 (drop down)		메뉴의 제목이 표시되어 있는 곳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되는 위치에서 메뉴가 아래로 펼쳐지도록 되어 있음. 메뉴 내의 항목으로 마우스의 포인터를 옮기면 그에 따라 각항목이 반전되고 클릭하면 그 항목이 선택됨
3	체크박스 (check box)		사용자에게 여러 항목 중 원하는 항목을 한 개 이상 선택하게 할 때 사용되는 작은 사각형. 사각형을 클릭하면 X 또는 V가 체크되어 그 항목이 선택됨. 기본적으로 클릭할 때마다 선택/해제 동작이 반복됨
4	라디오버튼 (radio button)		화면상의 택일식 설정 버튼.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버튼은 해제됨

5	입력 필드 (text input field)		사용자가 키보드로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는 곳
6	다이얼 (dial)		마우스 드래그 또는 클릭으로 음향볼륨 등을 조절하는 컨트롤
7	슬라이더 (slider)		사용자가 양(amount), 위치(location) 등을 직관적으로 조절하는 컨트롤
8	프로그레스 바 (progress bar)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인디케이터

4.1.3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유형

(1) 공지디자인 등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가)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

❖ 예 1) ⊗ 불인정 공지된 휴대전화기 메인화면 디자인(공지디자인 1)의 일부를 공지된 화면디자인(공지디자인 2)으로 치환한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는 창작이 용이한 디자인으로 본다.



〈 공지디자인 1 〉



〈 공지디자인 2 〉



〈 출원디자인 〉

(나) 복수의 디자인을 조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

❌ 예 2) Ⓣ 불인정 공지된 각각의 아이콘들을 단순하게 결합하여 구성한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는 창작이 용이한 디자인으로 본다.



〈 공지디자인 1〉



〈 공지디자인 2〉



〈 출원디자인〉

(다) 공지된 모양·색채 또는 화면을 다른 물품에 거의 그대로 표현

❌ 예 3) Ⓣ 불인정 공지된 ‘TV 화면’을 ‘게임기’에 거의 그대로 나타낸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게임기”는 창작이 용이한 디자인으로 본다.



〈 공지디자인〉



〈 출원디자인〉

(2)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

(가) 다음과 같이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이 업계 또는 특정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의 표준 픽토그램이나 아이콘 등 주지의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본다.

 잠김	 찾기	 음악	 하트	 홈
 해제	 인터넷	 쇼핑	 메일	 시간
 음량	 말풍선	 여행	 즐거찾기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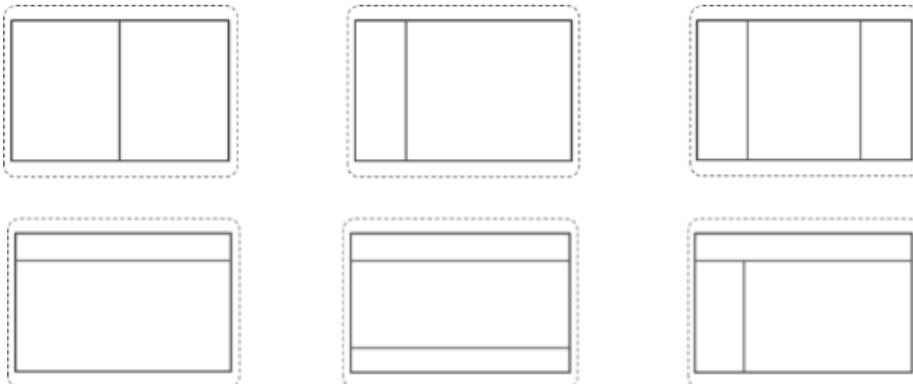
(나) 색채는 그것이 모양을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판단요소로 하고 단일색으로 채색된 것은 창작성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등의 사진을 거의 그대로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출원한 경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본다.

※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등이더라도 그 표현방법이 독창적이거나 변형의 폭이 큰 경우 주지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다.

(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프레임을 분할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경우

❌ 예 4) **Ⓜ 불인정** 다음과 같은 흔한 레이아웃, 프레임 분할, 배치의 사례는 창작이 용이한 디자인으로 본다.



(3) 공지디자인이 주지의 모양 등과 결합한 창작비용이성

✕ 예 5) ㉔ 불인정 공지디자인과 주지의 사각형 모양을 결합하여 “화면 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로 나타낸 경우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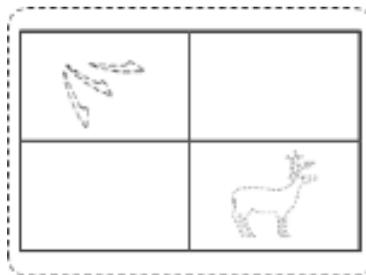
〈 공지 디자인 〉



〈 출원디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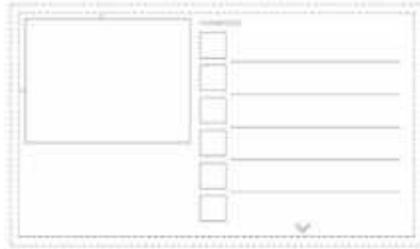
4.1.4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의 경우 표시부 내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실선 부분)을 고려하여 창작비용이성 여부를 판단 하되, 필요한 경우 파선 부분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예 1) ㉔ 불인정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주지의 사각형을 단순히 균등하게 분할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예 2) ☺ 인정 표시부 내부에 주지의 사각형을 배열하였으나 크기 변화, 구성,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5 대상이 되는 물품

5.1 물품류 구분

- 5.1.1 물품류 및 물품의 구분은 로카르노협정에 따른 물품류에 근거하여 용도와 기능 등을 기준으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에 따르며, 제2부 제9장의 “2. 디자인 물품”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물품의 물품류 및 물품 구분의 원칙을 따른다.
- 5.1.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화면이 표시되는 물품이 속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 심사 또는 일부심사대상 물품으로 구분한다.

5.2 물품의 명칭 기재방법

- 5.2.1 로카르노협정에 따른 물품류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에서 하나의 물품을 지정하여 기재하되, 제2부 제9장의 “3. 물품의 명칭 기재방법”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물품의 명칭 기재방법을 따른다.
- 5.2.2 화면이 표시되는 물품을 특정하여 아래 예와 같이 기재한다.

✕ 예 1) ☺ 인정 화면이 표시되는 ‘완성품’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
 “화면디자이너 표시된 휴대용 단말기”, “화면디자이너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화면디자이너 표시된 공기청정기” 등은 인정할 수 있다.

✕ 예 2) ☺ 인정 화면이 표시되는 ‘부품’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
 “화면디자이너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화면디자이너 표시된 디스플레이 스크린”, “아이콘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그래픽 유저인터페이스가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5.2.3 물품의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예

(1) 표시부 자체를 명칭으로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물품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예 1) ⊗ 불인정 “화면디자이너 표시된 디스플레이”, “화면디자이너 표시된 가전제품” 등은 구체적인 물품을 특정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에 기재된 명칭은 인정할 수 있다.

(2) 화면디자이너가 표시되는 물품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 예 2) ⊗ 불인정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캐릭터” 등과 같이 물품성이 없는 객체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인정할 수 없다.

(3) 물품의 명칭과 디자인 도면에 표현된 물품이 상이한 경우

✕ 예 3) ⊗ 불인정 물품의 명칭은 “화면디자이너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로 기재하고 디자인 도면에는 “태블릿PC”의 형상을 도시하여 명칭과 도면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



[도면 1]

명칭: 화면디자이너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6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

6.1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6.1.1 “1디자인”이란 1물품에 1형태를 말한다.

6.1.2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일반적인 적용요건 및 판단방법에 관하여는 제2부 제10장의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부분을 참조한다.

6.2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6.2.1 1개의 표시부 내에 도시된 것이라면 각각의 구성요소의 기능적, 형태적 일체성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디자인으로 본다.

✕ 예 1) ☺ 인정 음악듣기를 위한 재생, 정지, 빨리감기, 볼륨조절 등 각각의 버튼이 하나의 표시부에 배치되어 있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태블릿 PC”는 1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명칭: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태블릿 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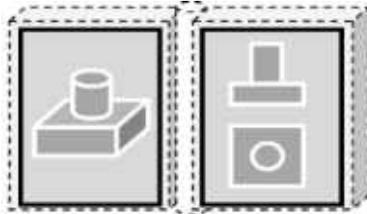
✕ 예 2) ☺ 인정 화면디자인을 구성하는 도형들이 서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1개의 아이콘으로서 일체감을 지니고 있다면 형태적 일체성을 인정하여 1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명칭: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예 3) ☺ 인정 화면이 좌우로 분리되어 있으나 화면들 간에 형태적, 기능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1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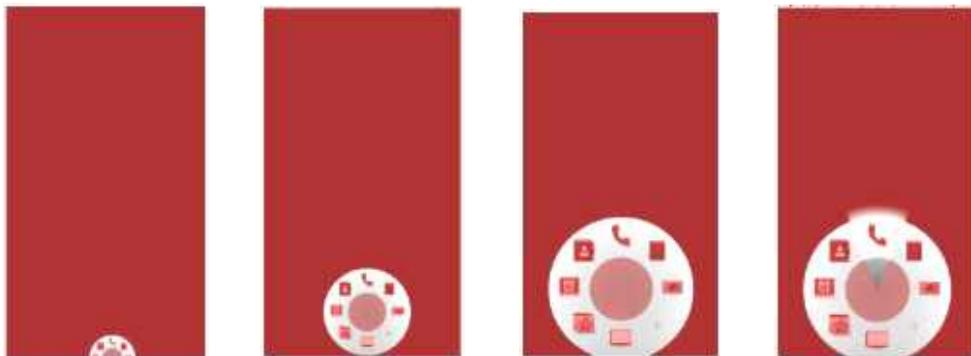
[도면 1]

명칭: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스마트폰

6.2.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동적화면디자인의 경우

(1) 복수의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들간에 형태적 관련성과 변화의 일정성이 있다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한다.

✕ 예 1) ☺ 인정 아래 사례는 하단에 위치한 원형 메뉴버튼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상승하고 있고, 일부 메뉴(예: 통화기능)가 활성화되는 변화 상태를 동적화면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디자인들 간에 변화의 일정성과 형태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1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도면 2]

[도면 3]

[도면 4]

- ※ 예 2) ☺ 인정 아래 사례는 영수증을 촬영하여 캡처한 후 이미지의 왜곡을 보정해나가는 일련의 동적 변화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디자인들 간에 변화의 일정성과 형태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1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도면 2]



[도면 3]



[도면 4]

- ※ 예 3) ☺ 인정 아래 사례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의 작동상태를 표현한 동적 화면디자인이다. 사용자가 로그인하여 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변화의 일정성과 형태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1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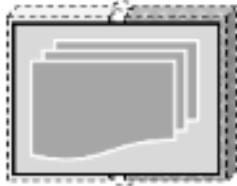
[도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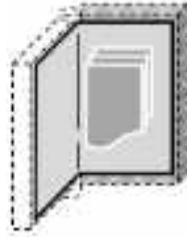
[도면 3]

- ※ 예 4) ☺ 인정 아래는 반으로 접히는 기능을 가진 휴대폰(예: 폴더블 스마트폰)에 표시된 화면디자인을 표현한 것으로서 내측에 대형 표시부 1개, 외측에 소형 표시부 1개가 구비되어 있다. 사용자가 휴대폰을 반으로 접으면 내측 표시부에 표현되어 있던 화면디자인이

외측 표시부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여 표현되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동적(動的) 디자인으로 표현한다면 형태적 관련성과 기능적 일체성을 고려하여 1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도면 2]



[도면 3]

7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7.1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판단

7.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일반적인 물품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 (1) 국기, 국장(國章), 군기, 훈장, 포장(褒章),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또는 이들을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은 법 제34조(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호를 적용한다.
-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법 제34조(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2호를 적용한다.
-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법 제34조(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호를 적용한다.

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8.1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요건, 주장방식 및 불인정예고 절차 등의 구체적인 판단은 일반적인 물품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8.2 물품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8.2.1 최초 출원 디자인의 물품명칭과 우리나라 출원디자인의 물품명칭이 설령 다르더라도 우선권증명서류의 기재내용,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출원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의 용도·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물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예 1) ☺ 인정 제1국 출원시 물품의 명칭이 “Icon for medical apparatus”라고 적혀 있으며, 도면에는 여러 개의 아이콘으로 구성된 조작부를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표현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면서 물품의 명칭을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의료기기”로 하고 등록을 받고자 하는 아이콘 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 적절히 특정하여 표현했다면, 물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제1국 출원디자인



“Icon for medical appar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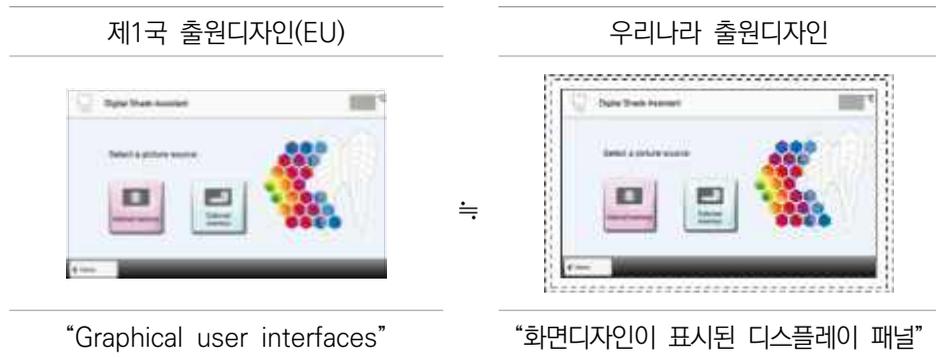
우리나라 출원디자인



≒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의료기기”

※ 예 2) 😊 인정 제1국 출원시 물품의 명칭은 “Graphical user interfaces”, 물품류는 “14류”로 기재되었고 도면은 모두 실선인 전체디자인으로 도시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면서 물품의 명칭을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로 출원한 경우 물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출원시 해당 제1국에 출원된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 디자인이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발휘에 이용됨을 출원서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적절히 표현한다면 ‘정보표시용 화상’으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8.3 디자인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 8.3.1 출원의 형식이나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우선권증명서류에 표현된 디자인 가운데 우리나라에 출원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디자인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8.3.2 우리나라에 출원된 디자인이 우선권증명서류에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 수준에 기초하여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체 기재내용 및 최초에 출원한 국가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8.3.3 우선권증명서류에 표현되어 있는 제1국 디자인은 전체디자인으로 출원 하였으나 우리나라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한 경우 디자인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1국이 부분디자인제도가 없는 경우,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의 실질적 동일성, 물품의 명칭, 디자인의 설명, 물품류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

※ 예 1) ☺ 인정 제1국은 부분디자인제도가 없는 나라로서 우선권증명 서류에 물품의 명칭은 “휴대전화기의 화면”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면은 모두 실선으로 도시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 물품의 명칭은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도면은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되었다면 디자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8.3.4 우리나라에서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이 우선권증명서류에 포함된 도면 중 참고도면(예: reference, embodiment, appendix 등)에 해당하는 도면에만 표현되어 있더라도 디자인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명칭, 디자인의 설명, 물품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심사관 참고]

부분디자인에 관한 출원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2022.12월 기준)

□ 뉴질랜드,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불가리아, 베트남, 브라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제2장

글자체 디자인의 심사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사용 또는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

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제35조제3항 관련)

1. 한글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500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지정글자 도면 1】

가 각 갈 감 갓 강 갖 갇
 개 갯 거 건 걸 겹 겹 겹 겹
 겨 격 귀 견 결 겹 경 계 고
 굴 곳 공 과 관 교 구 국 군
 굴 궁 귀 그 극 근 글 금 급
 기 길 김 집 짓 까 깎 깔 깡
 깨 꾸 낀 꾸 꾸 꾸 낀 낀 낀
 끼 긴 낀 나 난 날 남 낀 냐
 낫 낫 날 내 낸 널 념 념 념
 냐 념 념 념 념 념 념 념 념
 념 념 념 념 념 념 념 념

【지정글자 도면 2】

단 달 닭 닭 닭 닭 닭 닭
 더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동 돼 되 된 될 될 될 될
 둥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디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뚝 뛰 뛰 뛰 뛰 뛰 뛰 뛰 뛰
 래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레 려 려 려 려 려 려 려 려
 루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마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맷 멧 멧 멧 멧 멧 멧 멧
 몇 모 목 목 목 목 목 목

【지정글자 도면 3】

물 물 뭉 뭉 뭉 뭉 뭉 뭉
 밖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부 분 분 분 분 분 분 분 분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색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세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속 순 순 순 순 순 순 순 순
 슬 습 습 습 습 습 습 습 습
 싫 심 심 심 심 심 심 심 심
 씹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지정글자 도면 4】

았 앞 애 야 약 양 어 억 언
 언 언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옛 여 연 열 열 열 열 열 열
 오 옥 온 울 움 외 완 왜 외
 요 욱 용 우 움 운 울 움 옷
 원 월 위 유 으 은 을 음 읍
 의 윈 이 익 인 일 임 입 입
 있 잇 자 작 잔 잘 잠 잡 장
 재 저 적 전 절 점 정 제 조
 족 줌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짓 짜 째 째 째 째 째 째 째

【지정글자 도면 5】

참 창 찾 채 책 처 친 철 칫
 초 춘 추 चु 충 치 친 침 칸
 커 컴 켜 코 쿡 크 큰 큼 큼
 키 킬 타 태 터 데 토 통 투
 특 툼 파 판 퍼 띄 편 표 푸
 피 하 학 한 함 합 해 헛 향
 헤 혀 현 호 혼 화 화 활 회
 후 훈 훌 흐 히

【보기문장 도면】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늘 쓰에
편케하고자
함이라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
람마다 쉽게 익혀 늘 쓰에 편
케하고자 함이라

【대표글자 도면】

가 낱 더
덧 끼 릭
맷 료 콤
으 슿 황

2. 영문자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52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지정글자 도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보기문장 도면】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대표글자 도면】

H a
R e
S g

3. 숫자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10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지정글자 도면】

1	2	3
4	5	6
7	8	9
0		

【보기문장 도면】

1	2	3
4	5	6
7	8	9
0		

【대표글자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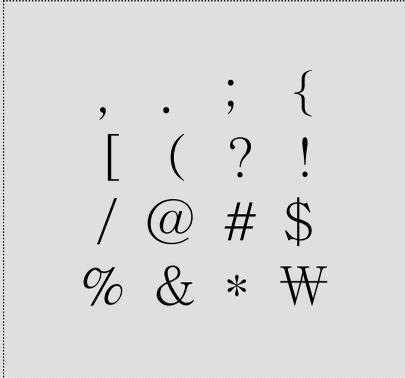
1	2
5	6
8	0

4. 특수기호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16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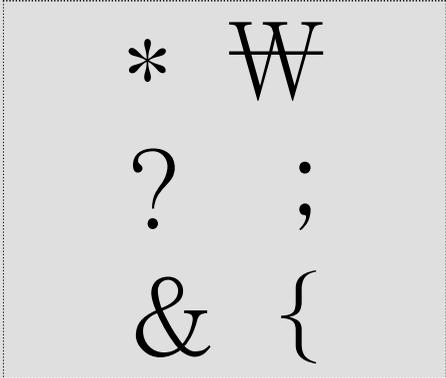
【지정글자 도면】

,	.	;	{
[(?	!
/	@	#	\$
%	&	*	₩

【보기문장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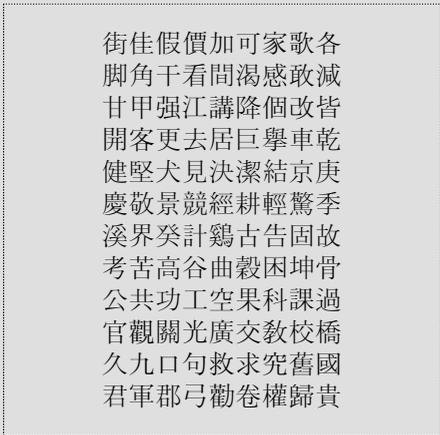


【대표글자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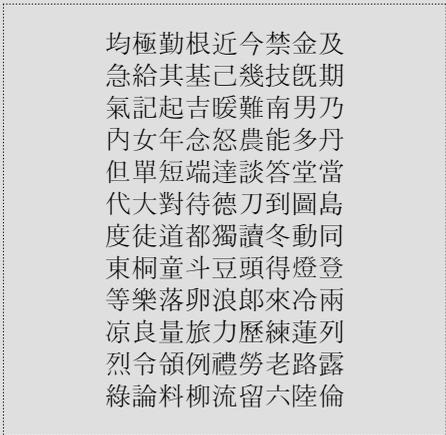


5. 한자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900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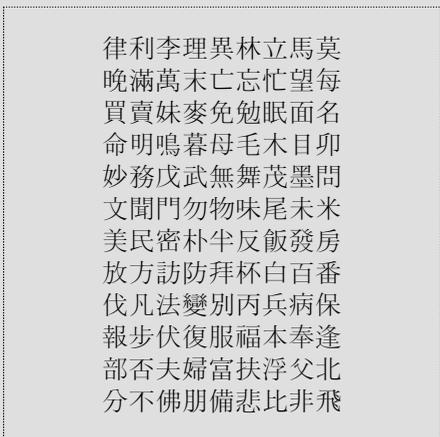
【지정글자 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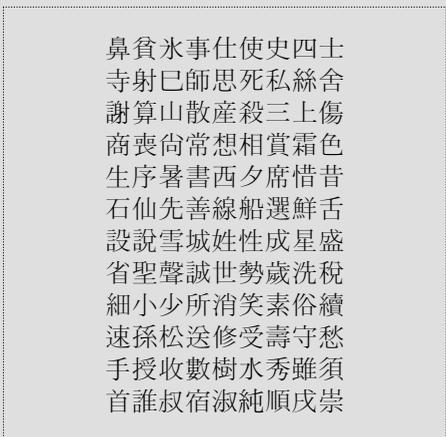
【지정글자 도면 2】



【지정글자 도면 3】



【지정글자 도면 4】



【지정글자 도면 5】

拾習乘勝承始市施是
 時示視試詩式植識食
 信新申神臣身辛失室
 實心深甚十氏兒我惡
 安案眼顏巖暗仰哀愛
 也夜野弱約若藥楊洋
 羊讓陽養於漁語魚億
 憶言巖業余如汝與餘
 亦易逆然煙研悅熱炎
 葉榮永英迎藝五午吾
 悟烏誤屋玉溫瓦臥完
 曰往王外要欲浴勇容

【지정글자 도면 7】

前展戰田錢節絕店
 接丁井停定庭情政正
 淨精貞靜頂帝弟祭第
 製諸除題兆助早朝祖
 調造鳥族足存尊卒鐘
 宗從種終坐左罪主住
 宙晝朱注走酒竹中衆
 重卽增曾證之只地志
 持指支枝止知紙至直
 盡眞辰進質執集且借
 次此着察參唱昌窓採
 菜冊責妻處尺千天川

【지정글자 도면 9】

好戶虎號湖或婚混紅
 化和火畫花華話貨患
 歡活皇黃回會孝效厚
 後訓休凶胸黑興喜希

【보기문장 도면】

天地之道一陰
 陽五行而已坤
 復之間爲太極
 而動靜之後爲
 陰陽

天地之道一陰陽五行而已坤復
 之間爲太極而動靜之後爲陰陽

【지정글자 도면 6】

用于又友右字尤憂牛
 遇雨云運雲雄元原圓
 園怨遠願月位偉危威
 爲唯幼有柔油猶由遊
 遺酉肉育恩銀乙吟陰
 音飲泣邑應依意矣義
 衣議醫二以己異移而
 耳益認人仁印因寅引
 忍一日壬入姉子字慈
 者自作昨場壯將章長
 哉在才材栽財再爭低
 著貯敵的赤適傳全典

【지정글자 도면 8】

泉淺鐵晴清聽請青體
 初招草寸村最推秋追
 丑祝春出充忠蟲取吹
 就治致齒則親七針快
 他打脫探太泰宅土統
 通退投特波破判八敗
 貝便片篇平閉布抱暴
 表品豐風彼皮匹必筆
 下何夏河賀學寒恨漢
 閑閑韓含恒亥害海解
 幸行鄉香向虛許革現
 賢血協兄刑形惠乎呼

【대표글자 도면】

王講示
 買道人
 永多武
 女明街

1 취지

글자체의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및 자본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독창적인 글자체가 창작된 경우 다른 창작물과 동일하게 디자인으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2004년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글자체를 포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글자체 디자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2 정의 및 성립요건

2.1 글자체의 정의

2.1.1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말한다.

2.2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

2.2.1 글자체디자인이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가) 글자체는 단순히 미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고,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나)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 창작된 서예나, 회사 또는 상품의 이름 등을 표상하기 위한 조립문자인 로고타입 등은 성립요건 위반으로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란 개개의 글자꼴이 지니는 형태, 규모, 색채, 질감 등이 서로 비슷하여 시각적으로 서로 닮아있거나 같은 그룹으로 보이는 형태로 글자들 간에도 통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주의]

☞ 잘못된 글자체의 예 : 글자체의 일부는 신명조체로, 나머지는 궁서체로 구성된 한글 글자체

(3) 한 별의 글자꼴일 것

(가) “한 별의 글자꼴”이란 개개의 글자꼴이 모인 그 전체로서의 조합을 의미하므로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란 글자꼴 하나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개 글자꼴들 간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한 별의 글자꼴을 말한다.

[주의]

☞ 글자체 디자인의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은 디자인의 성립요건(제2장, 2.1 디자인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참조한다.

2.2.2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란 글자꼴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개 글자꼴들 간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한 별의 글자꼴로서 개개의 글자꼴이 모인 그 전체로서의 조합을 의미한다. 또한 글자체의 부분은 디자인의 정의규정(법 제2조)에 포함되지 않아 글자체의 부분디자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글자체는 한 별의 디자인으로서 법 42조에 따른 부분디자인 출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물품류 구분 및 물품 명칭 기재방법

3.1 물품류의 구분

3.1.1 물품류 및 물품의 구분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에 근거하여 용도와 기능 등을 기준으로 특허청장이 고시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에 따르며, 활자 및 글자체는 18-03류에 해당한다.

3.1.2 다음의 경우는 물품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본다.

- (1) “한글 글자체”를 “한글”로 기재하는 등 명칭에 글자체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2) “안상수체”, “혜움체” 등 출원인의 이름이나 거래명을 기재한 경우
- (3) 도면은 영문 글자체로 도시하면서 물품명칭을 “한글 글자체”로 적은 경우

4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

4.1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한자 글자체, 라틴 글자체(라틴어 확장체를 포함한다), 덩벳 글자체 및 그 밖의 외국문자 글자체 등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각각 1개의 출원으로 한 별의 글자꼴을 구성한다.

4.1.1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예

모든 낱자의 변화 전·후 상태를 변화 전후의 도면 또는 디자인의 설명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동적 영문자 글자체”

✕ 예) 각조의 도면은 해당 알파벳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도면A 부터 도면Z는 각 알파벳의 변화 과정을 도시하였음



[도면A 1.1]



[도면A 1.2]



[도면A 1.3]



[도면A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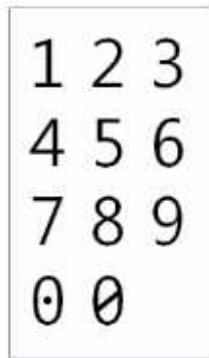
[도면A 1.5]



[도면A 1.6]

4.1.2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

(1) 낱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2개 이상으로 도시하는 경우



- (2) 한글 글자체와 영문자 글자체, 한글 글자체와 특수기호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와 숫자 글자체 등을 함께 도시한 경우



- (3) 자족(子族, 패밀리 글자체)을 1개의 출원에 함께 도시한 경우



5 공업상 이용가능성

5.1 글자체 디자인의 구체성 요건

5.1.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와 같이 글자체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1)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이 규칙 [별표 1](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 (2)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중 일부가 없는 경우

5.2 글자체별 구체성 판단

5.2.1 한글 글자체는 규칙 [별표1]에 따라 한글 지정글자 500자, 보기문장 30자, 대표글자 12자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나머지 잔여글자 (501-11,172자)를 참고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도면에서 글자 수가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다른 글자나 문장으로 표현되어 디자인을 파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

5.2.2 영문자 글자체의 지정글자는 영문자의 알파벳 대문자 및 소문자 전부, 보기문장은 70자, 대표글자는 대문자 및 소문자 각 3자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5.2.3 영어 이외의 기타 외국어를 글자체로 출원하기 위해서는 영어 글자체 도면에 준하여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즉, 지정글자 도면은 등록받고자 하는 해당 외국 문자의 알파벳 자모 전체, 보기문장 도면은 영문자의 대표문장을 해당 외국 문자로 번역하여 기재한다. 대표글자 도면은 영문자의 대표글자에 준하여 해당 외국문자의 낱글자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글자를 기재한다.

☞ 예) 아라비아문자 글자체 작성 예시

ر	ذ	د	خ	ح	ج	ث	ت	ب
ا	ف	غ	ع	ظ	ط	ض	ص	ش
س	ز	ء	ي	و	ه	ن	م	ل
ك	ق							

[지정글자 도면]

الكسول الكلب.
فوق يقفز
البنّي
الثعلب
السريع على
الكسول الكلب فوق يقفز البني
الثعلب، السريع على

[보기문장 도면]

- (1) 라틴어 계열의 글자체(라틴어 확장체 포함)의 도면은 [지정글자 도면 1], [지정글자 도면 2] ...순으로 식별항목을 기재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해당 글자체 알파벳 전체를 기재한다. 이때 [지정글자 도면 1]의 기재는 규칙

별표1의 “2. 영문자 글자체 도면”의 [지정글자 도면]을 따르고, [보기문장 도면]과 [대표문장 도면]은 영문자 글자체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2) 기타 외국어의 경우, [지정글자 도면 1]의 기재는 규칙 별표 1의2의 영문자 글자체 도면의 [지정글자 도면]을 따르고, [보기문장 도면]과 [대표문장 도면]은 영문자 글자체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단, 알파벳의 순서는 해당언어의 국제표준인 유니코드 기준표 (www.unicode.org/charts) 등 관련 자료와 주요 글자체 거래 사이트의 해당 글자체의 낱글자 도시 기준 등을 참조하여 인정할 수 있다.

5.2.4 숫자 글자체의 필수도면은 지정글자 및 보기문장 각 10자, 대표글자는 6자를 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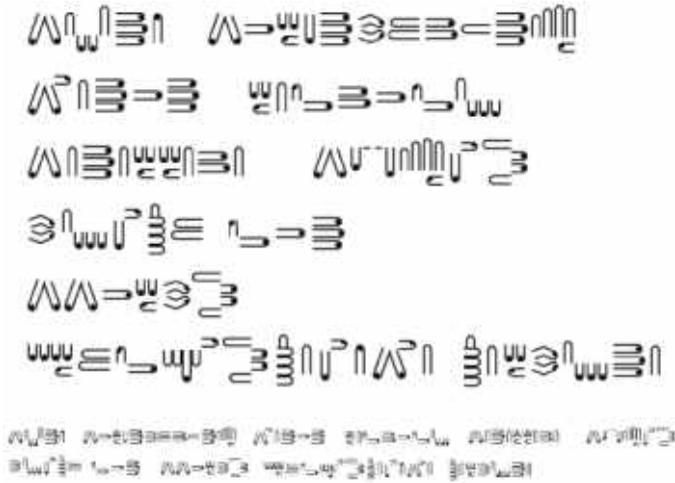
5.2.5 특수기호 글자체의 도면은 지정글자 16자, 보기문장 16, 대표글자 6자를 제출하며, 추가로 출원인이 출원을 희망하는 특수기호가 있는 경우는 지정글자 16자를 “지정글자 1”로 하고, “지정글자 2”, “지정글자 3”의 순서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5.2.6 한자 글자체의 한자 지정글자는 900자, 보기문장은 26자, 대표글자는 12자를 제출하며, 도면 심사는 한글 글자체와 동일하다.

5.2.7 그림 글자체(딩벳 글자체 또는 심볼 글자체)는 문자로서의 정보 전달력이 없는 그림을 서체 형식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지정글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도면은 해당 그림문자를 구성하기 위하여 기준으로 작성된 언어(한글 또는 영문자 글자체)에 따라 제출하며 이때 딩벳 글자체의 작성에 기준이 된 언어와 작성방법을 디자인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딩벳 글자체인지 여부의 판단은 보기문장을 해당 언어의 글자로 읽을 수 없을 때 딩벳 글자체로 판단한다.

※ 딩벳(Dingbat) : 그림문자만 구성한 폰트. 자판을 누르면 그림문자가 입력되며 일반적으로 a~z, A~Z, 0~9의 자리에 문자를 배정한다.

※ 예) 본원 디자인은 한글 개별글자에 각각의 그림을 배정하여 만든 그림 글자체이며, 한글 글자체 도면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음



[보기문장 도면]

6 유사여부 판단

6.1 글자체 간 유사여부 판단

6.1.1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8류 제3군의 “글자체”에서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라틴어계열), 한자 글자체, 그 밖의 외국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상호간은 유사한 글자체로 보지 않는다.

6.1.2 라틴어 확장체를 포함한 라틴어 계열의 글자체인 영문자 글자체, 덴마크어 글자체, 독일어 글자체 등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본다.

6.1.3 정적 글자체 디자인과 동적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1) 동적 글자체 디자인의 정지 상태의 모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미감이 지배적이고 동 변화에 특이성이 없으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 (2) 동적 글자체 디자인의 모양변화에 신규성·창작성이 있을 때에는 정적 글자체 디자인과 비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6.2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6.2.1 출원디자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글자체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글자체의 복사나 굵기의 변화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

(가) 기존 글자체 그대로인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존 글자체를 기초로 글자꼴이 굵거나 얇은 글자체인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

(2) 기존 글자체의 기계적 복제에 해당되는 경우

(가) 기존 글자체의 장체, 평체인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존 글자체를 그대로 기울인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

6.2.2 기존 글자체의 글자꼴들이 지니는 공통적인 특징(모양·색채 등)과 출원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되고 심미감이 유사한 경우에는 출원디자인을 기존 글자체디자인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6.2.3 동적 글자체 상호간에는 그 정지상태의 모양과 동적 변화를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6.2.4 글자체디자인의 경우, 다수의 글자체가 개발되었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유사의 폭을 좁게 보고 판단한다.

7 요지변경 판단

7.1 글자체디자인의 요지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지정글자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7.1.1 요지변경으로 되는 경우의 예

: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글자 도면을 보정함으로써 최초에 제출한 도면으로부터 상기되는 것과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경우

7.1.2 요지변경이 아닌 경우의 예

- (1)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지정글자 도면(지정글자 도면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도면이 이미 제출된 도면으로부터 상기될 수 있는 디자인과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보정된 경우

✖ 예) 소문자가 따로 없이 알파벳 대문자만으로 출원한 영문자 글자체의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 대문자의 크기만을 변화하여 소문자를 보정한 경우

디자인 설명란의 기재 : 본 영문자 글자체는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성되며, 소문자는 대문자 대비 크기에만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형태로 구현된 것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지정글자 도면]

- (2) 최초 제출된 도면을 기준으로 상거래 관행상 당 업계의 수준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지정글자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제3장

식품디자인의 심사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 (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4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 제2024-21호

류	군	물품의 범위
01 식품	01	빵, 비스킷, 페이스트리, 파스타, 그 밖의 가공곡물, 초콜릿, 과자류, 빙과류
	02	과일, 야채
	03	치즈, 버터 및 버터대용품, 그 밖의 유제품
	04	육류(돼지고기제품 포함), 생선
	05	두부 및 두부제품
	06	동물용 사료
	99	그 밖의 식품
		: 이하생략

1 취지

식품은 유연한 재료 또는 액상의 재료 등을 사용하여 먹기 쉽고 부드럽게 만들고 있으므로 식품의 형태를 동일하게 만들기가 어렵고 일부 식품은 용기에 담아야 하는 등 일반적인 공산품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2019년 1월부터 식품디자인에 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정의 및 성립요건

- 2.1 “식품디자인”이란 음식물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 2.2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식품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품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물품성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2.1 물품성이 인정되는 경우

: 형태가 일정 범위 내에서 고정되고 독립적인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식품

2.2.2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 액상, 분상(가루)물의 집합 등 일정한 형상이 없어 용기에 담지 않고서는 정형적인 형상 또는 배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식품



“분상·입상 음식”



“액상 음식”

- (2) 단일한 식품의 형상이 아니라 식품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전시·판매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형성하는 디자인의 경우



“전시·판매를 위한 서비스디자인”

[심사관 참고]

위 사례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통상의 아이스크림 과자 부분을 부채모양으로 배열한 것으로서 개별 과자를 기준으로 보면 물품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물품류 구분 및 명칭

3.1 물품류의 구분

3.1.1 물품류 및 물품의 구분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에 근거하여 용도와 기능 등을 기준으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에 따라 기재한다.

3.2 물품의 명칭

3.2.1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에서 하나의 물품을 지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3.2.2 물품의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경우

: “디저트”, “제빵류” 등 물품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4.1 디자인등록출원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1항에 위반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4.2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판단기준

4.2.1 “1디자인”이란 1물품에 1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식품과 식품을 구성하지 않는 다른 물품이 하나의 도면 내에 표현되어 있는 경우 1디자인 1출원 위반으로 판단한다.

4.2.2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식품에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있더라도 거래관행상 실시 전 과정(생산, 유통, 판매)에서 일체화된 물품인 경우

✘ 예) 음식부속물(예 : 과자용 막대, 꼬치, 식품장식 종이, 아이스크림콘·컵, 식용가능한 소시지 포장지 등)과 결합된 음식으로서 가공·제조된 식품을 직접 지지하거나 장식 등에 사용되어 음식과 결합된 하나의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장난감이 장식된 케이크”



“막대 사탕”



“페백육포”

(2) 식품 디자인의 형상·모양을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 보조적인 물품을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보조적인 물품이 적용된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 변화전후의 디자인으로 나타낸 “차잎”으로 「디자인의 설명」란에 “차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컵에 물과 함께 도시한 것으로 컵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부분임”이라 기재한 것



도면 A 1



도면 B 1

4.2.2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식품과 일체성을 인정할 수 없는 타 물품이 함께 도시된 경우

✕ 예)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위반인 사례



“테이블웨어가 포함된 경우”



“식품디자인의 부속물로 볼 수 없는 포장과 함께 도시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분리된 식품이 다수 표현되어 있는 경우”

5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식품디자인의 요건

5.1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식품을 양산할 수 있을 것

5.1.1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이 불가능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식품디자인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5.1.2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93후1247 판결 참고), 이는 식품의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방법(제조·가공)도 포함한다.

5.1.3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생산하는 것을 뜻하며(대법원 93후1247 판결 참고), 식품의 양산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한다.

5.1.4 “동일한 형태의 물품”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식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식품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같은 식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최종 판매단계까지 동일한 형상·모양·색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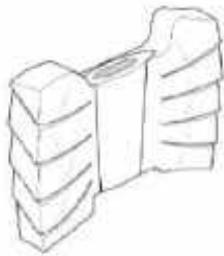
5.2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식품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 5.2.1 천연 자연물을 가공하여 자연물 고유의 형상과 모양이 변형되어, 통상적인 가공 과정에서 나오기 어려운 형상과 모양을 갖춘 경우
- 5.2.2 물품의 특성상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로 생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물품의 형상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복 재현이 가능한 경우
- 5.2.3 유통과정에 냉동·건조 등을 통하여 고정된 형태를 유지하여 일반 수요자의 시점에서 일정한 형상을 가진 제품으로 인식되는 경우

자연물을 반가공한 “꽃게다리 모양”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냉동을 통해 판매시점까지 형상이 유지됨

형틀을 통해 동일한 형상이 재현 가능

표면 디자인이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방법으로 반복 재생산 가능



“갈비”



“떡”



“마카롱”

5.3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식품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5.3.1 가공되지 않은 자연물을 원형 그대로 차용하였거나, 경미한 가공으로 원재료의 형상과 모양이 대부분 남아있어 동일성 범위내의 식품형상을 반복 생산할 수 없는 경우



“육포” (불인정)



“상추 햄버거” (불인정)

5.3.2 액상·분상·분절된 조각 등으로 구성되어 생산부터 판매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냉동 등의 방식으로 판매 시까지 동일 형상이 유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불인정 : 일정한 형상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인정 : 형상·모양·색채 유지가 가능한 경우



막대에 휘감은 “솜사탕”



“아이스크림”

[심사관 참고]

액상·분상 그 자체인 경우 물품성 결여로 판단하고, 여기에서의 형상유지 가능성은 “형상과 모양이 일정 범위 내에서 정형으로 고정되고 독립적인 단위로 판매가 가능하여 물품성이 인정” 된 식품이 최종 단계까지 동일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요건임

5.3.3 발효·가열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치며 자연적·우연적으로 형성된 형상·모양이 식품의 주된 심미감을 구성하는 경우

- (1) 재현 불가능한 빵의 갈라짐, 불에 탄 흔적, 토핑, 핫도그 표면의 불균일한 감자조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우연적 형상이라도 동일성 범위 내에서 반복생산 가능한 경우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식품디자인으로 인정된다.

불인정 : 단순한 자연물의 건조



“스넥과자”

불인정 : 유연적 형상의 토핑 배열/색상



“피자”

5.3.4 기계에 의한 생산·수공업적 생산(2차산업적 생산)방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이 아닌 경우로서 주방 등에서 조리(3차산업적 서비스)되어 제공되는 경우. 다만, 조리되어 판매되는 식품이라도 재생가능한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제조·가공되어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불인정 : 조리 후의 배열



“비빔밥”

불인정 : 식품의 단순 배열



“새우튀김”

인정 : 가공식품

불인정 : 조리식품

인정 : 가공식품

불인정 : 조리식품



“아이스크림”



“라면”



“스파게티”

[심사관 참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식품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 유형

- 조리식품

뜨겁게 제공되는 카푸치노 커피의 거품그림, 식당에서 조리·플레이팅되어 제공되는 음식, 주문 후 컵에 담아지는 비정형 아이스크림 등

- 조리와 가공(제조)이 동시에 되는 식품 : 가공/제조 식품의 경우만 인정

※ 인정가능 식품(예시)

건강보조식품, 제조식품, 축산가공식품(햄, 베이컨, 소세지, 훈제육, 소금절임 고기), 유제품(버터, 치즈), 가공수산물(어묵, 김, 다시마, 가공오징어), 가공농작물(두부, 곤약, 가공연근), 곡물가공식품(만두, 호빵), 빵, 쌀 식품(초밥, 김밥, 떡), 과자, 과자용 막대, 꼬치, 식품 장식종이 등, 아이스크림콘·컵 등

6 창작비용이성

6.1 창작비용이성의 판단기준

6.1.1 식품디자인에서의 주지의 형상·모양 등을 판단할 때에는 ① 널리 알려진 형상과 모양뿐만 아니라, ② 당해 식품의 통상적인 형태를 고려한다.

6.1.2 식품디자인에서의 공지디자인을 판단할 때에는 ① 국내외에 공지·공연 실시된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여부, ② 공지된 음식모양의 단순변형, 결합, 배열변경, 중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6.2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유형

6.2.1 공지디자인 등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1) 2이상의 공지디자인을 단순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 예) 단순결합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예시



“반반 피자”



“와플 아이스크림”

(2) 공지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배치 변경, 또는 구성단위 수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 예) 구성단위의 수를 달리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예시



“햄버거”

“아이스바”

(3) 공지디자인의 일부를 다른 통상의 식품으로 치환한 경우

✘ 예) 통상의 식품 치환에 해당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예시



“소시지 말이 어묵”

“맛살 말이 어묵”

6.2.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등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제2부 제4장의 “3.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유형”을 참조한다.

: 해당 식품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서 새로운 미감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예) 주지의 형상과 모양을 본 따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예시

불인정 : 원기둥·사면체·하트 등 주지의 기하 도형 형상 및 모양

불인정 : 주지의 식품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

불인정 : 국내에 널리 알려진 입체 형상을 그대로 나타냄



“하트 형상 빵, 초콜릿 등”



“무지개떡, 가래떡 등”



“초콜릿”

7 유사여부 판단

7.1 식품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대상

7.1.1 식품디자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에 대하여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7.2 식품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7.2.1 식품 종류별로 특징이 상이하므로, 해당 식품종류별 업계의 과거 디자인 개발의 형태적 흐름과 출원디자인의 창작적 특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를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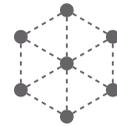
7.2.2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한 것으로 본다.

7.2.3 자연물의 본래적인 특징 또는 식품의 조리 시에 나타나는 통상적인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차이는 유사판단에 고려하지 않는다.

Design

디자인심사기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부 칙



[시행 2009. 5. 15.] [특허청예규 제48호, 2009. 5. 15., 일부개정]

부 칙 <제48호, 2009. 5. 15.>

이 기준은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2009. 8. 24.] [특허청예규 제52호, 2009. 8. 24., 일부개정]

부 칙 <제52호, 2009. 8. 24.>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2010. 1. 1.] [특허청예규 제55호, 2009. 12. 31., 일부개정]

부 칙 <제55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4항 나호 (3)(나)의 단서규정, 제15조제2호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 중 구성물품에 관한 내용은 이 예규 시행전에 출원된 것으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시행 2011. 5. 1.] [특허청예규 제58호, 2011. 4. 29., 일부개정]

부 칙 <제58호, 2011.4.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2012. 1. 1.] [특허청예규 제64호, 2011. 12. 30., 일부개정]

부 칙 <제64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2012. 8. 22.] [특허청예규 제67호, 2012. 8. 22., 일부개정]

부 칙 <제67호, 2012.8.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Part

부

칙

[시행 2013. 1. 1.] [특허청예규 제69호, 2013. 1. 1., 전부개정]

부 칙 <제69호, 2013. 1. 1>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행 2013. 11. 27.] [특허청예규 제71호, 2013. 11. 27., 일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행 2014. 7. 1.] [특허청예규 제75호, 2014. 6. 27., 전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3. 직권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부 제1장 2.의 직권보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전에 출원된 디자인 등록출원으로서 이 기준 시행 후에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는 때에도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시행 2015. 10. 1.] [특허청예규 제84호, 2015. 9. 30., 일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7. 1. 1.] [특허청예규 제96호, 2016. 12. 15., 일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8. 1. 1.] [특허청예규 제99호, 2017. 12. 19., 일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9. 1. 1.] [특허청예규 제107호, 2018. 12. 21., 일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9. 11. 15.] [특허청예규 제109호, 2019. 11. 15., 일부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면에 관한 적용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인(2019. 10. 1. 시행) 별표 2 및 별지 2~4호 서식, 별표 1 및 별지 5호 서식에 관한 부가도면의 폐지,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 간소화,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도면 관련 규정은 2019. 10. 1. 자 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0. 3. 1.] [특허청예규 제114호, 2020. 2. 25., 일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 10. 21.] [특허청예규 제122호, 2021. 10. 20., 전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0월 2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 10. 21.] [특허청예규 제122호, 2021. 10. 20., 전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0월 2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3. 1. 1.] [특허청예규 제129호, 2022. 12. 30., 일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3. 12. 21.] [특허청예규 제132호, 2023. 12. 21., 일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2월 2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 6.16.] [특허청예규 제141호, 2025. 6. 16., 일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6월 1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5 디자인심사기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발 행 처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발 행 일 : 2025년 6월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 전 화 : 042)481-8353
- 홈페이지 : www.kipo.go.kr

ISBN : 979-11-6884-285-4 13500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